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저 자

유해미, 문무경, 김문정, 장경희, 김송이

연구진

연구책임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장경희 (신성대학교 교수)

김송이 (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15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3-3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육비가 지원되고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녀 돌봄의 수요에는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백이 우려된다. 긴급돌봄 수요는 예견할 수가 없어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녀 돌봄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목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제도화가 요구되는 고유한 수요로서 긴급돌봄을 개념화하고, 그 사유 및 대상별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그간 대표적인 돌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틈새보육 즉, 이른 하원 등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긴급돌봄 수요와 구분하고 별도의 제도화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긴급돌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초등자녀(만 8세 이하)를 둔 총 1,565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를 파악하고자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과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녀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이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현장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내용 및 범위	17
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19
II. 연구의 배경	31
1. 선행연구 검토	33
2. 긴급돌봄 지원 관련 규정과 유관 사업 추진 현황	39
3.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72
4. 소결	92
III. 국내외 사례 분석	97
1.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99
2.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	124
3. 소결	139
IV.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수요자 조사	141
1. 자녀 돌봄의 실태와 수요 충족 여부	143
2. 긴급돌봄 사유와 어려움 정도	154
3.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165
4.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	170
5. 긴급돌봄 지원요구	174
6. 소결	188

V.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공급자 조사	191
1. 시간제보육서비스	193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201
3. 아이돌봄서비스	213
4. 다함께돌봄센터	222
5. 지역아동센터	229
6. 소결	234
 VI. 정책 제언	 237
1. 긴급돌봄의 개념화와 지원 원칙	239
2.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247
3.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서비스 지원 방안	251
 참고문헌	 265
Abstract	275
부록	277
부록 1. 설문조사표(부모용)	27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1(부모용)	293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2(현장전문가용)	301



표 목차

〈표 I-3-1〉 설문조사 항목	21
〈표 I-3-2〉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1: 인구학적 특성	22
〈표 I-3-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2: 근로특성 전반	23
〈표 I-3-4〉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3: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	24
〈표 I-3-5〉 심층면담 조사항목: 긴급돌봄 수요자	24
〈표 I-3-6〉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 긴급돌봄 수요자	26
〈표 I-3-7〉 심층면담 조사항목: 긴급돌봄 공급자	27
〈표 I-3-8〉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조사규모: 긴급돌봄 공급자	28
〈표 II-1-1〉 긴급 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2021)	34
〈표 II-1-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정도: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2019)	34
〈표 II-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2021) ..	35
〈표 II-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2021)	37
〈표 II-1-5〉 취약보육 유형별 필요 빈도(2021)	38
〈표 II-2-1〉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2023)	40
〈표 II-2-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2023)	45
〈표 II-2-3〉 0~2세 연장보육 필요사유 및 제출서류(2023)	47
〈표 II-2-4〉 어린이집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2023)	48
〈표 II-2-5〉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2023)	50
〈표 II-2-6〉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2023)	54
〈표 II-2-7〉 지역아동센터의 주간 운영일수/운영시간 현황(2021)	60
〈표 II-2-8〉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공휴일/야간보호 운영 현황(2017~2021) ..	61
〈표 II-3-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수/반수/이용아동수 및 비율 추이(2016~2022) ..	73
〈표 II-3-2〉 전국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공급 추이(2016~2022)	74
〈표 II-3-3〉 전국 시·도별 야간연장보육 현황(2022)	75
〈표 II-3-4〉 전국 시·도별 휴일보육 현황(2022)	76
〈표 II-3-5〉 전국 시·도별 24시간보육 현황(2022)	77
〈표 II-3-6〉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21~2022)	80
〈표 II-3-7〉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21~2022) ..	81
〈표 II-3-8〉 전국 시·도별 아이돌보미 규모 추이(2018~2022)	82

〈표 II-3-9〉 전국 시·도별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이용아동수 현황(2022)	83
〈표 II-3-10〉 지역아동센터 수와 이용아동수 추이(2017-2021)	84
〈표 II-3-11〉 지역아동센터 학년별 이용아동 수 추이(2017-2021)	84
〈표 II-3-12〉 전국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022.6/2023.5)	85
〈표 II-3-13〉 전국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2023.5)	86
〈표 II-3-14〉 전국 시·도별 영유아+초등자녀 긴급돌봄 인프라 공급 현황 (2022/2023)	87
〈표 II-3-15〉 전국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현황(2021-2022)	88
〈표 II-3-16〉 전국 지역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2022.8)	89
〈표 II-3-17〉 전국 시·도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현황 (방과후전담+방과후통합)(2022)	90
〈표 II-3-18〉 전국 시·도별 초등방과후돌봄 인프라 공급 현황(2022)	91
〈표 II-3-19〉 중앙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95
〈표 III-1-1〉 일본의 법정보육시설 종류 및 성격	101
〈표 III-1-2〉 일본의 인가 외 보육시설 수와 이용아동수(2021)	102
〈표 III-1-3〉 일본의 베이비호텔 운영시간	102
〈표 III-1-4〉 일본의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	103
〈표 III-1-5〉 일본의 방과후 돌봄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의2 제6항 ...	105
〈표 III-1-6〉 일본의 방과후돌봄 법적 근거: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59조 ...	105
〈표 III-1-7〉 일본의 일시보육시설 종류	108
〈표 III-1-8〉 일본의 질병아동보육 종류	110
〈표 III-1-9〉 질병아동 보육사업의 근거 규정: 「아동복지법」 제6조의3 제13항 ...	111
〈표 III-1-10〉 일본 지방정부의 질병아동보육 지원내용(2023)	112
〈표 III-1-11〉 일본 야간보육소(드림)의 보육 일과 예시: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115
〈표 III-1-12〉 일본의 연장보육 유형: 동경도 중앙구	116
〈표 III-1-13〉 일본의 휴일보육 종류 및 지원내용: 요코하마시	118
〈표 III-1-14〉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상호원조 활동의 세부내용	120
〈표 III-1-15〉 일본의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종류	121
〈표 III-2-1〉 서울시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주요 내용	126
〈표 III-2-2〉 광주시 긴급아이돌봄센터 주요 내용	127
〈표 III-2-3〉 포항시 '직장맘 SOS서비스' 주요 내용	128
〈표 III-2-4〉 서울 서초구 '서초 119 아이돌보미' 주요 내용	129

〈표 Ⅲ-2-5〉 서울 양천구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주요 내용	130
〈표 Ⅲ-2-6〉 서울시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131
〈표 Ⅲ-2-7〉 광주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132
〈표 Ⅲ-2-8〉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주요 내용	134
〈표 Ⅲ-2-9〉 경기 오산시/의왕시의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주요내용	135
〈표 Ⅳ-1-1〉 영유아 자녀의 낮 시간 주양육자	144
〈표 Ⅳ-1-2〉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	144
〈표 Ⅳ-1-3〉 평일 기준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145
〈표 Ⅳ-1-4〉 서비스 유형별 평일 기준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146
〈표 Ⅳ-1-5〉 평일 기준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147
〈표 Ⅳ-1-6〉 서비스 유형별 평일 기준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147
〈표 Ⅳ-1-7〉 (이용시간 불만족한 경우)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 ·	148
〈표 Ⅳ-1-8〉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인력(평일 기준): 초등학생 자녀(중복응답)	148
〈표 Ⅳ-1-9〉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작시각/종료시각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 (평일 기준)	150
〈표 Ⅳ-1-10〉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작시각/종료시각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 (평일 기준): 초등학생 자녀	150
〈표 Ⅳ-1-1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작시각/종료시각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 (평일 기준): 초등학생 자녀	150
〈표 Ⅳ-1-12〉 (이용시간 불만족한 경우) 희망하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	151
〈표 Ⅳ-1-13〉 자녀돌봄시간 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전체	152
〈표 Ⅳ-1-14〉 월평균 가구소득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비율	152
〈표 Ⅳ-1-15〉 맞벌이 가구 특성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비율 ·	153
〈표 Ⅳ-1-16〉 재택근무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가구특성별	153
〈표 Ⅳ-2-1〉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전체	154
〈표 Ⅳ-2-2〉 자녀돌봄의 어려움: 가구특성별(아동 연령/맞벌이 가구 근로특성) ·	158
〈표 Ⅳ-2-3〉 자녀돌봄의 어려움: 자녀구성별	159

〈표 IV-2-4〉 자녀돌봄의 어려움: 양육 특성 전반	159
〈표 IV-2-5〉 자녀돌봄의 어려움: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1	160
〈표 IV-2-6〉 자녀돌봄의 어려움: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2	161
〈표 IV-2-7〉 자녀돌봄의 어려움: 영유아 자녀의 낮 시간 주양육자별	162
〈표 IV-2-8〉 자녀돌봄의 어려움: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 유형별	163
〈표 IV-2-9〉 긴급 사유별 발생 빈도	164
〈표 IV-2-10〉 긴급 사유별 돌봄공백 시간대	165
〈표 IV-3-1〉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유무	166
〈표 IV-3-2〉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자녀특성별 ...	167
〈표 IV-3-3〉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가구특성별 ...	168
〈표 IV-3-4〉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169
〈표 IV-4-1〉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 시 돌봄인력 및 기관: 전체 ..	171
〈표 IV-4-2〉 긴급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의 이용 만족도: 전체	172
〈표 IV-5-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체	174
〈표 IV-5-2〉 긴급한 상황에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 1순위	176
〈표 IV-5-3〉 긴급한 상황에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 1+2순위	177
〈표 IV-5-4〉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전체	178
〈표 IV-5-5〉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가구특성별	178
〈표 IV-5-6〉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하는 긴급돌봄 관련 이외 지원 요구사항	179
〈표 IV-5-7〉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180
〈표 IV-5-8〉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아동 연령대별 필요도 인식	181
〈표 IV-5-9〉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 요약	186
〈표 V-1-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시간제보육시설	193
〈표 V-2-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201
〈표 V-3-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14
〈표 V-4-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다함께돌봄센터	222
〈표 V-5-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지역아동센터	229

〈표 VI-3-1〉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5호	252
〈표 VI-3-2〉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	261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29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29
[그림 II-1-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 5점 평균(2021)	36
[그림 II-2-1] 시간제보육 이용 절차 및 방법(2023)	41
[그림 II-2-2]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42
[그림 II-2-3]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2023)	43
[그림 II-2-4]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보육 개념	49
[그림 II-2-5]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 9시 → 8시 시범 조정 운영(안)	52
[그림 II-2-6] 늘봄학교 개념(안)	57
[그림 II-2-7]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59
[그림 II-2-8]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2023)	63
[그림 II-2-9]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64
[그림 II-2-10]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절차(2023)	66
[그림 II-2-11] 공동육아나눔터_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시설의 운영 형태 예시 ..	68
[그림 II-2-12]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운영 개요(2020)	68
[그림 II-2-13]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체계: 여성가족부	70
[그림 II-3-1]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추이(2016-2022)	73
[그림 II-3-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2)	78
[그림 III-1-1] 여성취업자 추이(2008-2012)	100
[그림 III-1-2] 연령별 여성노동자 인구 비율(2022)	100
[그림 III-1-3]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운영체계	119
[그림 IV-1-1]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의 돌봄 수요 총족 비율	146
[그림 IV-1-2]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총족 비율	149
[그림 IV-2-1]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5점 평균	155
[그림 IV-3-1] 긴급 상황의 자녀돌봄 자원인력 및 기관 유무: 전체	167
[그림 VI-1-1] 긴급돌봄의 유형별 대응 전략 및 제도화 수준	247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녀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는 점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목됨.
-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초등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가구에서 긴급돌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틈새보육과는 구분되는 긴급돌봄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현황과 제도적 근거 파악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본의 제도 및 정책과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영유아(만 5세 이하)와 초등자녀(만 6~8세 이하)를 둔 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긴급돌봄 수요 파악
-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 파악
- 긴급돌봄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긴급돌봄 제도화의 적용범위 및 원칙을 마련하고, 긴급돌봄의 상황 및 수요자 특성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 제안

□ 용어의 정의 및 연구범위

- 이 연구에서 ‘긴급돌봄’이란 예견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말함.
- 이 연구는 현행 기준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위주로 다루며, 정기적인 틈새보육과 코로나19등 재난 시 긴급돌봄,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등 부모의 직접돌봄 지원은 한정적으로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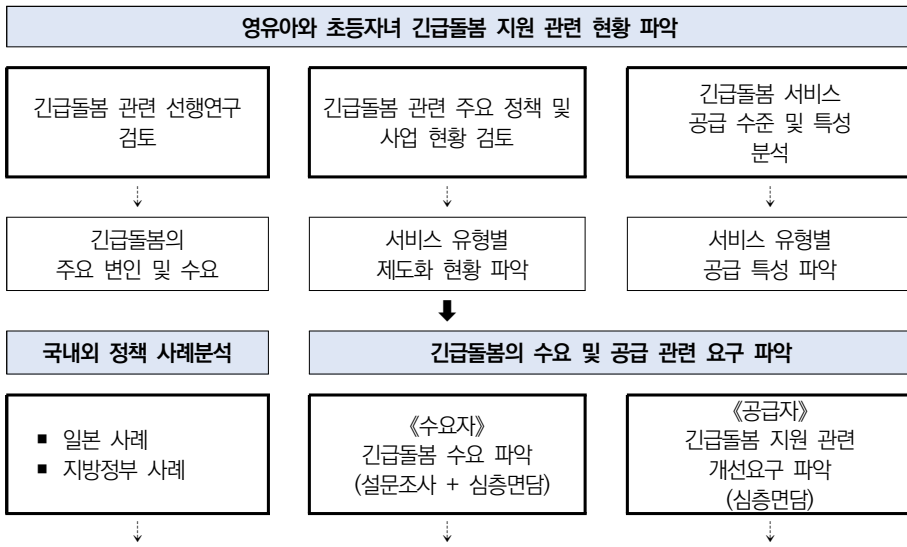
다.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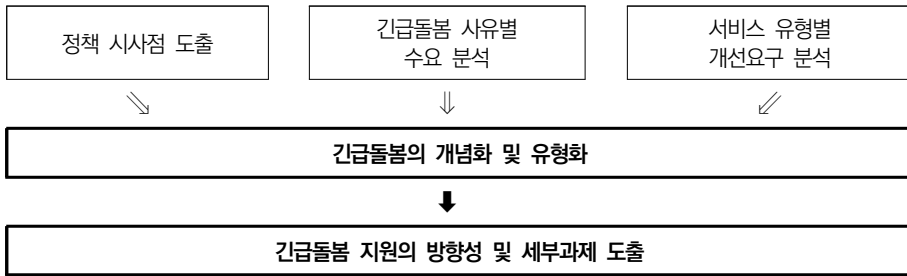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앙정부 정책 현황 및 관련 규정, 긴급돌봄 관련 서비스의 인프라 공급 현황 조사 등
- 사례분석: 일본과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정책 현황 조사
-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자녀(6~8세)를 둔 가구 총 1,565명을 대상으로 실시
-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총 6개 그룹(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총 23명을 대상으로 실시
- 공급자(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긴급돌봄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총 6개 그룹(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시간제보육기관/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및 실무자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

□ 연구절차 및 분석틀

[요약 그림 1] 연구절차 및 분석틀





2.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검토

- 긴급 상황 시 주양육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 돌봄의 공백 실태 및 빈도, 긴급돌봄 지원요구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검토함.

나. 긴급돌봄 지원 관련 규정과 유관 사업 추진 현황

- 시간제보육서비스(영아자녀, 6~35개월), 아이돌봄서비스(영유아 및 초등자녀), 기관돌봄서비스(영유아자녀), 초등방과후돌봄(초등자녀), 공동육아나눔터(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지원 관련 운영관리 사항을 검토함.

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24.3%였고, 시·도별로는 8.0~54.3%로 두드러진 격차를 보임.
- 2022년 기준 영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인프라의 공급률은 전국적으로는 0~8세 아동 1인당 0.011개소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 0.026개소, 광주 0.024개소, 전북 지역이 0.021개소로 높은 편이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지역은 0.008개소로 낮은 편임.
- 2022년 기준 6~8세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인프라 공급률은 전국 평균 1인당 1.17개소로 낮은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0.79~1.90개소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

3. 국내외 사례분석

가.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 2012년 제정된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에서 학동보육을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기존의 만10세까지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함.
- 일시보육은 전업주부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사고, 질병,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상의 돌발 상황, 파트타임 근로, 취미생활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육하는 형태로서, 보육소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함.
- 질병아동 보육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아동연령, 비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야간에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육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육하는 인가 야간보육소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75개소가 개설되어 있음.
- 자녀양육 단기지원 사업에서는 “보호자의 질병, 기타 사유로 가정양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경제적 이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모자(母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의 시설, 위탁가정 또는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고 시정촌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보호하도록 함.

나.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

- 광역 지자체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 서울시는 2022년부터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다양화하여 ‘틈새보육 SOS서비스’라는 정책 패키지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 추진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휴일보육어린이집 운영
 - 서울시는 초등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 광주시에서는 영유아 대상 별도의 긴급돌봄 기관인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 기초 지자체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 경북 포항시는 ‘직장맘 SOS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 실시
- 서울시 서초구는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서초 119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 서울 양천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2023년 3월부터 운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 서울시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에서 병상 돌봄을 지원하는 ‘거점형 키움센터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
- 광주시는 2019년 11월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원아동에 대해 병원 입원실에서 돌봄을 제공
- 경상북도는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2023년부터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지역 확대
- 서울 노원구는 2020년 10월에 아픈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센터’ 개소
- 경기도 오산시와 의왕시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의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운영

4.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수요자 조사

가. 자녀 돌봄의 실태와 수요 충족 여부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등원시각은 평균 8시 51분이고, 해당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0%로 조사됨.
 - 맞벌이 가구의 등원시각은 평균 8시 44분이고, 홑벌이 가구의 등원시각은 평균 9시 13분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하원시각은 평균 16시 47분이고, 해당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로 조사됨.

- 맞벌이 가구의 하원시각은 평균 17시 1분이고, 홀벌이가구의 하원시각은 평균 16시 8분으로 조사됨.
- 희망하는 등원시각은 8시 25분으로 현재 시각보다 26분이 빠르고,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18시 20분으로 현재 시각보다 1시간 33분이 늦게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희망 등원시각은 8시 20분이고, 희망 하원시각은 18시 28분으로 조사됨.
-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경우 시작시각은 초등돌봄교실이 14시 29분으로 가장 빠르고, 종료시각은 지역아동센터가 18시 20분으로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됨.
- 부모 직접돌봄 지원 제도를 ‘현재 이용하거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차출근제 27.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26%, 가족돌봄휴가 25.4%, 재택근무 15.1% 순으로 저조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현재 이용 및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수준인 반면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제도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 특성별로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현재 이용 및 이용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나. 긴급돌봄 사유와 어려움 정도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 걸쳐 보통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14점,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4.09점,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98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3.95점, 자녀를 출산한 경우 3.9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긴급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주일에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출근이 5.7%와 7.8%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한 달에 2~3회와 연간 3~4회 정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를 시작과 종료시각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바는 이른 출근 및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오전 7시 12분으로 가장 이르고, 갑작스러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19시 46분으로 가장 늦은 시각으로 나타남.

다.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7.3%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4.5%,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54.4%,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경우가 53.0% 순으로 나타나서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휴직 이후 복직 시기를 늦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시급하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인력이 68.8%인 반면, 돌봄서비스 기관은 25.6%에 불과함.

라.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

-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최근 1년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긴급 사유 전반에 걸쳐 부모의 직접돌봄이 40~50%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20~30%선으로 높게 나타남.
- 긴급한 경우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다함께돌봄센터 61.6%(3.77점, 5점 척도),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 57.9%(3.53점),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55.7%(3.53점), 지역아동센터 50.0%(3.4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마. 긴급돌봄 지원요구

-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 기준으로 ‘자녀가 아파서 등원 또는 등원하지 못한 경우’가 57.9%로 가장 높고,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7.6%, 갑작스러운 야간근로 23.0%,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6.9%,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근무해야 하는 경우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10.0% 순으로 조사됨.
- 긴급한 상황에서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이 30~50%선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혈연인력을 제외하면 아이돌보미가 4.5%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긴급돌봄 방식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용 중인 기관내 돌봄공간’이 평균 3.66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2.95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2.92점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냄.
-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한부모가족과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평균 3.92점과 3.88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 중인 기관에서 긴급돌봄 지원 3.80점, 어린 아동 우선지원 3.7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긴급돌봄의 지원범위에 대해 각 아동 연령별로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3~35개월까지 영아자녀가 4.1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자녀(만3~5세) 4.13점, 12개월까지 영아자녀 4.0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5.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공급자 조사

가. 시간제보육서비스

-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개선요구로는 보조인력 지원 강화, 시간제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개선, 서비스 이용자격 강화 등이 제기됨.

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 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의 개선요구로는 초과수당 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거점 어린이집 지정, 읍면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의무화 및 지원기준 마련, 긴급돌봄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제기됨.
- 유치원 긴급돌봄 지원의 개선요구로는 아동 출결 및 안전귀가를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온종일돌봄 유치원의 거점 지정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졸업생 대상 초등방과후 긴급돌봄 지원,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방식 차별화 등이 제기됨.

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요구로는 긴급돌봄 전담인력풀 구축, 민간 육아도우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개선,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기됨.

라.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요구로는 긴급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긴급돌봄 신청시스템 개선 및 통합정보 제공,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서비스 연계를 위한 차량지원 등이 제기됨.

마.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개선요구로는 긴급돌봄 별도 정원 배정,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 등이 제기됨.

6. 정책 제언

가.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화와 지원 원칙

□ 긴급돌봄 제도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긴급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자녀 출산과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긴급돌봄의 제도화는 합계출산율 제고와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화 및 지원 범위

- 부모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긴급돌봄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고 일시적이며 긴급하게 요구되나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들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가정내양육 가구를 포괄하되, 우선지원 및 비용 지원은 주양육자가 부재한 경우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긴급돌봄 지원아동의 연령은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포괄하되, 우선순위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 초등 고학년(4~6학년) 순으로 적용함.
-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긴급돌봄 어려움과 발생 빈도,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에 대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1) 자녀가 아픈 경우, 2)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3) 가정내 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로 유형화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방향 및 전략

- 서비스 지원방식 다양화: 기관돌봄 + 가정내돌봄
-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전략: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의 연계 활성화, 긴급돌봄 서비스 통합연령 운영, 지역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비용지원체계: 우선지원 대상 명문화, 선별적 비용지원

[요약 그림 2] 긴급돌봄의 유형별 대응 전략 및 제도화 수준

긴급돌봄 유형	대응 방향	긴급돌봄 제도화 수준
자녀가 아픈 경우 (재난시 긴급돌봄 제외)	돌봄 인프라 확충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긴급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신규 사업 운영기준 마련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관련 규정 개정
[기관이용 가구] 긴급한 근로 상황 등 (틈새보육 제외)	이용기관의 돌봄서비스 연장 및 거점기관 연계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의 긴급돌봄 지원기준 마련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관련 규정 개정
[가정내 양육가구] 주양육자 부재 시 (양육 공백 이외 일시보육 제외)	일시보육 자원요건 정교화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시간제보육서비스 긴급돌봄 우선지원 규정 개정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규정 마련

나.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 유관 서비스의 긴급돌봄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침 보완
- 유관 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 신청 절차 간소화: 긴급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긴급돌봄 정보 접근성 제고
- 긴급돌봄 아동의 안전관리 등 운영기준 일원화: 전자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등

다. 긴급돌봄의 유형 및 대상별 서비스 지원 방안

- ‘아픈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 질병아동 긴급돌봄의 지원방식 및 내용

- 재원 및 역할 분담
-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운영기준(안) 마련

□ 기관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긴급한 근로 상황’ 등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 야간·휴일 긴급돌봄 거점어린이집/거점유치원의 지정 및 요건 마련, 졸업생 대상 초등방과후 돌봄 지원 기관 지정 요건 마련, 유보통합 대응 긴급돌봄 지원기준 일원화 등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대응력 제고(긴급돌봄 정원 별도 관리, 신청 및 등록 절차의 간소화), 미취학 아동 대상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필수운영시간 확대, 긴급돌봄 거점 기관 지정 등
- (영유아 및 초등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긴급돌봄 특화 기관(가칭: 긴급돌봄 아동센터) 설치·운영: 유아 및 초등자녀

□ 가정내양육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주양육자 부재 등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기준 관련 개선: 우선 지원대상 규정 마련, 이용기간 제한 규정 마련
-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보조인력 지원기준 마련, 교사 대 아동 비율 세분화
- 시간제보육 운영 주체별 기능 분화: 가정어린이집 긴급돌봄 특화기관 지정, 야간·주말 거점 시간제보육기관 지정
-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I

서론

-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내용 및 범위
- 0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I.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자녀 돌봄의 공백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보편화 되고, 초등자녀의 방과 후돌봄 인프라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돌봄 인프라의 확충으로 과거에 비해 자녀를 맡길 데가 늘어나고, 서비스 이용비용 부담도 완화되었으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는 점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데,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 171-172).

그런데 이처럼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는 그 특성상 예견되지 않은 돌발적이고 시급한 상황에서 제기되므로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틈새보육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틈새로 지목되는 어린이집 등·하원시각과 출·퇴근시각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백은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부모의 보육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이후 시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초등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긴급한 돌봄 수요에 온전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는 신속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그 시급성에 대한 대응은 일상적인 틈새보육과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갑작스러운 야근, 새벽, 주말근로 시에 즉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기본보육에 등록한 아동이 긴급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탄력편성 기준을 두고 영아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e: 68), 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이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다양한 근로시간에 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 유치원의 종일제와 온종일돌봄서비스 등은 담당교사 채용의 어려움과 아동 수의 감소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는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구 이외에 가정내 양육가구의 긴급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올해 2월에 긴급한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일시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a: 8). 또한 가정내 양육가구를 위해서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되, 운영 모형을 다양화하여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시간제보육의 플랫폼 스마트화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2b: 20). 초등자녀의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을 내실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이 발표되어 방학 기간은 물론이고 아침과 저녁돌봄, 거점형 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b: 26). 이러한 중앙정부 계획에 더하여 아픈 아동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2023).

이처럼 긴급돌봄은 일상적인 틈새보육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이때 긴급한 사유는 물론이고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수요는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보다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임금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적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연령대인 30~40대의 비중이 약 28%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22: 25-26).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업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여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의 경우 근로시간

이 불규칙하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민순홍, 2023: 1-6).

한편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돌봄 인프라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지역에서도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연령의 통합적 접근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초등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가구에서 긴급돌봄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틈새보육과는 구분되는 긴급돌봄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긴급한 돌봄 수요를 정교화하고, 가구특성에 주목하여 지원 방안을 세분화하며, 이때 아동인구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연구에서 포함하는 긴급돌봄의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제도적 근거를 파악한다. 영아 대상의 시간제보육,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및 그밖의 연장보육, 유아 대상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영유아 및 초등자녀 대상의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자녀 대상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지원사업 중에서 긴급 또는 일시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¹⁾ 또한 이때 해당

1) 초등방과후돌봄시설 중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원대상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이므로 이 연구의 이 연구의 연령 범위인 만 8세를 초과하므로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_사업소개, <https://www.youth.go.kr/yaca/about/about.do>, 2023. 3. 3. 인출)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절차, 운영시간, 등록 및 출결관리, 비용지원 수준 및 중복 지원 금지, 서비스의 연계 및 부처 간 협력사항 등을 검토한다.

둘째, 긴급돌봄 지원관련 지방정부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돌봄의 사유별로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위한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시책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수준, 지원체계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시간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제약을 안고 있으나 다양한 근로시간 등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와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법제화 하는 등으로 유용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넷째, 영유아(만 5세 이하)와 초등자녀(만 6~8세 이하)를 둔 가구의 돌봄 공백의 실태와 긴급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가구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초등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로 한정된 것은 돌봄이 강조되는 연령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임을 반영하였다(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23. 3. 2. 인출).

다섯째,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긴급돌봄 지원 관련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제보육 등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와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긴급돌봄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섯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지원이 요구되는 긴급돌봄 사유를 규명하고, 해당 사유별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제도화가 요구되는 긴급돌봄을 개념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긴급돌봄의 유형별로 아동연령과 가구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관 서비스 연계 방안과 관련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나. 용어 정의와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긴급돌봄’이란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야기되는 돌봄의 틈새와는 달리 예견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에 발생하는 자녀 돌봄 수요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는 부모 등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의 긴급돌봄만을 다루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틈새보육과 코로나19등과 같이 재난 시 긴급돌봄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틈새보육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에 따른 수요로서 긴급돌봄 수요와는 구분된다. 또한 재난 시 긴급돌봄은 재난의 유형이나 기간, 발생 범위 즉, 세계적 수준인지 개별 국가의 수준인지 또는 개별 국가내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그 대응 전략이 상이 하므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상적인 긴급돌봄 수요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이 연구의 주요 방법과 추진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인터넷자료 조사

가) 선행연구 검토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1~3학년)의 긴급돌봄 수요와 개선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주요 결과를 다룬다.

나) 중앙정부 정책 현황 및 관련 규정 등 검토

영유아와 초등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계획 등), 유관 사업별 지침 등(보육사업 안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등)에서 긴급 또는 일시돌봄 관련 규정을 조사한다.

다) 긴급돌봄 관련 서비스 공급 현황 조사

긴급돌봄 관련 사업의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간 연계와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2) 사례분석

가) 일본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시간노동 등 양육이 용이한 노동환경의 조성이 미흡하여 돌봄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며, 일본의 보육소는 맞벌이 가구 위주로 이용하므로 가정내 양육가구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별도의 노력이 있으므로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관련 사업 현황 및 근거 법률 등을 조사하고, 긴급한 사유별로 사업내용, 대상 아동, 이용비용 및 기간, 실시 요건 등 지원내용 전반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등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 일시보육, 야간 연장, 휴일, 그리고 질병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에 관하여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나) 지방정부 사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 등을 위주로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광역지자체 사례로는 서울시와 광주시, 기초지자체로는 경북 포항시,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지역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현황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살펴보고,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은 구분하여 다루었다.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광주시, 경상북도 지역과 서울 노원구, 경북 구미시, 경기도 오산시와 의왕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유아와 초등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가구 중에서 긴급돌봄의 수요를 지닌 가구²⁾를 대상으로 돌봄의 공백 실태와 긴급돌봄 수요 및 지원요구 등을

파악하기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자녀 양육 실태, 긴급돌봄 상황별 어려움 및 빈도, 긴급돌봄 지원 관련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그리고 긴급돌봄 상황별 지원요구 등이다. 세부 조사항목은 이하 <표 I-3-1>과 같다.

<표 I-3-1>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자녀양육 실태	• 상시 돌봄 인력(혈연/비혈연) 유무 • 낮 시간 주양육자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기관 유형, 이용 서비스, 등·하원 시각 및 돌봄 충족 여부, 희망이용시간 • 하원·하고 이후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및 돌봄인력, 이용시간 및 돌봄 충족 여부, 희망이용시간 •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 가능 여부
긴급돌봄 사유 및 발생 빈도	• 긴급돌봄 상황별 자녀 돌봄의 어려움 정도/빈도/공백 시간 • 긴급돌봄 지원인력 또는 기관/이용 만족도/불만족 이유 •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 긴급돌봄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형태 변경/추가출산 포기 경험 여부 등 • 긴급상황 시 돌봄인력(혈연/비혈연) 및 기관 유무
긴급돌봄 지원 요구	• 긴급 상황별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 긴급돌봄 우선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 긴급돌봄 지원 자녀연령
응답가구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자녀수, 자녀연령대 •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 거주지역, 동거 형태 • 근로형태(맞벌이 가구 여부, 전일제 근로 여부), 고용상지위 • 재택근무 여부, 주말/휴일/야간/새벽/교대제 근로 실태

조사대상은 전문 조사기관이 구축한 패널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방식으로 선정하 되, 영아(0~2세)/유아(3~5세)/초등학생 자녀(1~3학년: 만 6~8세)를 고르게 배분 하고, 맞벌이 가구 최소 40%, 농어촌 지역(군 지역) 거주자를 각 연령그룹별 40명 씩³⁾ 고르게 할당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1,56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진행 하였다.

이상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은 이하 <표

2) 조사대상은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1회 이상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선정함.
3) 농어촌 지역의 아동 인구 비율(2023년 1월말 기준)

I-3-2)~<표 I-3-4>와 같다.

우선 응답자는 여성이 56.6%로 많고, 평균 연령은 38.4세이며, 총 자녀수는 평균 1.6명이다. 응답자녀 기준인 막내자녀의 연령은 영아(만 0~2세) 33.2%, 유아(만 3~5세) 32.6%, 초등학생 자녀(1~3학년) 34.2%로 나타나고, 읍면지역 거주자는 8.8%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1~600만원이 54.9%를 차지한다. 이외에 주말부부는 9.3%, 중고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7.2% 이다. 이들 가구의 근로특성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8.1%이고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가구는 각각 9.1%와 3.5%로 나타난다. 상기로 막내자녀를 돌보는 혈연과 비혈연인력이 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48.9%와 16.3%로 나타난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71.8%를 차지하며, 이들 중에서 둘다 전일제근로를 하는 가구는 79.8%, 부부 중 최소 1인 기준으로 주말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가구는 각각 78.9%와 74.0%, 교대제 근로를 하는 가구는 26.9%로 나타난다.

<표 I-3-2>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1: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주말부부 여부	
남성	43.4 (679)	주말부부	9.3 (145)
여성	56.6 (886)	주말부부 아님	90.7 (1,420)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29세 이하	3.5 (55)	200만원 이하	1.9 (29)
30~39세	53.8 (842)	201~300만원	8.3 (130)
40~49세	40.8 (639)	301~400만원	17.1 (267)
50세 이상	1.9 (29)	401~500만원	19.5 (305)
평균(세)	38.4세	501~600만원	18.3 (286)

구분	전체(만0~8세)	연령 구간별		
		만0~2세	만3~5세	만6~8세
전국(명)	3,070,614	781,816	996,838	1,291,960
군 지역(명)	204,619	52,532	67,229	84,858
군 지역 아동 비율(%)	6.66%	6.72%	6.74%	6.57%
500명 기준 표본수(명)	-	34	34	33

자료: 행정안전부_정책자료_통계_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index.jsp>, 2023. 2. 21. 인출)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총자녀수		601~700만원	13.5 (211)
1명	47.1 (737)	701~800만원	9.8 (153)
2명	44.0 (689)	801만원 이상	11.8 (184)
3명 이상	8.9 (139)	맞벌이 가구 여부	
평균(명)	1.6명	맞벌이 가구	71.8 (1,123)
막내 자녀연령(만)		홀벌이 가구	27.8 (435)
만0~2세	33.2 (519)	근로 안함	0.4 (7)
만3~5세	32.6 (510)	상시 돌봄인력(비혈연) 유무	
초등자녀	34.2 (536)	비혈연 돌봄인력 있음	16.3 (255)
중고생 이상 자녀 여부		비혈연 돌봄인력 없음	83.7 (1,310)
있음	7.2 (111)	상시 돌봄인력(혈연) 유무	
없음	92.8 (1,454)	혈연 돌봄인력 있음	48.9 (766)
거주지역 규모		혈연 돌봄인력 없음	51.1 (799)
대도시	61.3 (960)		
중소도시	29.9 (468)		
읍면지역	8.8 (137)		
계(수)		100.0(1,565)	

주: 주말부부는 주당 1~3일 동거, 주말부부 아님은 주당 4~7일 동거 기준임.
 자료: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3-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2: 근로특성 전반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비전형적 근로 여부		고용상 지위	
주말근로 가구	78.9 (886)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48.2 (754)
휴일근로 가구	56.9 (639)	임시근로 가구	9.1 (143)
야간근로 가구	74.0 (831)	일용직근로 가구	3.5 (55)
새벽근로 가구	36.2 (407)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가구	3.4 (53)
교대제 근로 가구	26.9 (3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구	8.1 (126)
이외 가구	9.4 (106)	기타 종사자 가구	6.1 (95)
		이외 가구	24.3 (380)
(수)	(1,123)	(수)	(1,558)

주: 1) 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기타 종사가 가구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하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둘다 근로안함(N=7) 제외한 수치임.
 2) 맞벌이 가구 중 비전형적 근로가구는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교대제 근로가구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연간 5회 이상 정도(3개월에 1회 정도) 일하는 경우이며, '이외 가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다 '해당없음'에 응답한 경우이며, 연간 해당 근로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3-4〉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3: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근로형태		재택근무 가능 여부	
돌다 전일제	79.8 (896)	재택근무 가능	25.8 (290)
전일제+시간제	19.6 (220)	재택근무 불가능	74.2 (833)
돌다 시간제	0.6 (7)		
계(수)		100.0(1,123)	

주: 1)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근로 형태로 기준임
 2) 전일제 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기준임.
 3)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현재 재택근로 중이거나, 필요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준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4) 심층면담

가) 수요자 대상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은 긴급돌봄의 사유별 지원요구와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개선요구, 긴급돌봄 지원요구 등이며, 세부항목은 이하 〈표 I-3-5〉와 같다.

〈표 I-3-5〉 심층면담 조사항목: 긴급돌봄 수요자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	• 평일 상시 이용 돌봄 인력/돌봄서비스 기관 • 긴급돌봄의 어려움 경험 상황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개선요구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이용 서비스 종류, 이용 사유, 신청·이용 방법,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불만족 시 불편사항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개선 요구사항: 서비스 신청·이용절차, 이용비용, 이용시간, 돌봄인력 자질·전문성, 돌봄환경, 지리적 접근성
긴급돌봄 지원 관련 지원요구	• 연령별 차별화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연령별 적합한 긴급돌봄 서비스 •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 긴급돌봄 서비스별 이용 의향 및 사유
일반적 배경	•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역 • 맞벌이 가구 여부, 부부 근로형태(정규직/일용직/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농·임·어업인), 부부동거형태 • 자녀 연령, 미취학아동 이용기관

주: 상세문항 부록 2 참고

조사대상은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총 6개 그룹(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3~4인을 선정하였으며,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2차는 서면응답결과를 토대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상 참여자의 가구 및 자녀특성은 이하 <표 1-3-6>과 같다.

1차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을 신청한 가구이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여 연장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2022년 7월 이후 3회 이상이고, 2차는 유치원 정규과정 이용 가구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방과후돌봄을 연장하여 이용한 경험이 2022년 7월 이후 3회 이상 있는 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자녀수는 1~2명, 응답자의 근로특성은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다양하고, 읍면지역의 맞벌이 가구로 참여하였다. 3차는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등록 아동은 아니지만 2023년에 3회 이상 해당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이며, 4차는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서 긴급한 사유로 인해 지정 어린이집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이,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이다. 5차는 야간이나 주말 등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앱(또는 PC)을 통해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이다. 6차는 (법정)감염병(수족구병 등)이나 유행성 질병(감기 등)으로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해 가정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이다. 5차와 6차 면담에 참여한 가구는 자녀연령은 영아, 유아, 초등자녀로 다양하고,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거주지역이 다양하다.

〈표 I-3-6〉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적 특징: 긴급돌봄 수요자

면담 차수	일자	면담 대상	연령 (만)	근로 특성	가구 특성	거주지역	자녀 특성 (기관이용)
1차 (어린이집 연장보육 간급 이용 가구)	8.8	1	41세	전업주부	홀벌이	서울 영등포구	만4세 (국공립 어린이집)
		2	38세	사무직	맞벌이	서울 구로구	만5세(국공립 유치원)/ 만3세(국공립 어린이집)
		3	38세	기타 (프리랜서·특수고용)	맞벌이	제주 함덕리 (읍면)	만4세 (국공립 어린이집)
		4	33세	기타 (프리랜서·특수고용)	맞벌이	경기 평택시	만3세(민간 어린이집)/ 만2세(민간 어린이집)
2차 (유치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간급 이용가구)	8.8	1	29세	사무직	맞벌이	경기 광주시 (읍면)	만6세(사립유치원)/ 만5세(사립유치원)
		2	39세	사무직	맞벌이	서울 송파구	만6세(국공립유치원)
		3	31세	전업주부	홀벌이	경기 수원시	만9세(초등)/ 만6세(사립 유치원)
		4	40세	전업주부 (파트타임)	홀벌이	경남 창원시	만9세(초등)/ 만6세(국공립유치원)
3차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간급 이용가구)	8.7	1	37세	전업주부	홀벌이	경기 시흥시	만8세(초등)/ 만6세(국공립 어린이집)
		2	44세	사무직	홀벌이	서울 영등포구	만6세(초등)
		3	39세	기타 (프리랜서·특수고용)	맞벌이	서울 송파구	만7세(초등) 쌍둥이
		4	46세	서비스·판매·자영업	맞벌이	강원 평창군 (읍면)	대학생/만8세(초등)
4차 (시간제 보육 이용가구)	8.10	1	35세	전업주부	홀벌이	인천 미추홀구	만4세(사립유치원)/ 10개월
		2	27세	전업주부 (파트타임)	홀벌이	서울 노원구	만6세(사립유치원)/ 9개월
		3	41세	서비스·판매·자영업	맞벌이	경기 김포시	24개월 (가정어린이집)
		4	38세	기타 (프리랜서·특수고용)	홀벌이 (한부모)	제주 조천읍 (읍면)	만4세(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만3세(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면담 차수	일자	면담 대상	연령 (만)	근로 특성	가구 특성	거주지역	자녀 특성 (기관이용)
5차 (일시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8.9	1	40세	생산직	맞벌이	경기 남양주시 (읍면)	만7세(초등)/ 만3세(민간어린이집)
		2	42세	기타 (프리랜서·특수고용)	맞벌이	서울 성동구	만5세 (민간어린이집)
		3	43세	서비스·판매·자영업	맞벌이	서울 관악구	만11세(초등)/ 만8세(초등)
		4	29세	전업주부 (파트타임)	홀벌이	충북 청주시	만3세(민간어린이집)/ 13개월(민간어린이집)
6차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	8.11	1	40세	사무직	맞벌이	서울 은평구	만2세 (국공립어린이집)
		2	42세	사무직	맞벌이	서울 동대문구	만8세(초등)
		3	35세	사무직	맞벌이	충북 청주시	만5세 (국공립유치원)

나) 현장전문가 대상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은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긴급돌봄 지원 시의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타 서비스 연계 현황 및 개선 요구,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요구 등이며, 세부 항목은 이하 <표 I-3-7>과 같다.

<표 I-3-7> 심층면담 조사항목: 긴급돌봄 공급자

조사 영역	세부 항목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 긴급돌봄 지원대상 및 사유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운영시간, 이용비용 산정 방식,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담당 돌봄인력, 서비스 내용, 운영관리 사항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및 개선요구	•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 긴급돌봄 지원 관련 개선과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이용비용 산정 및 지급체계, 운영시간, 돌봄인력 규모 및 자질, 지리적 접근성 제고, 부모대상 정보 제공 등
타 서비스 연계 현황 및 개선요구	• 타 기관 서비스 연계 현황: 연계 관련 규정, 연계 절차 및 방식, 연계 기관, 기타 운영사항 • 타 기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및 개선 과제

조사 영역	세부 항목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및 지원요구
기관 일반적 운영관리 현황	•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및 이용 아동수 • 등록/이용아동수 • 교사/교원/돌봄인력 수 및 상근여부 • 소재지역 규모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 현 기관 근무기간, 총 경력

주: 상세문항 부록 3 참고

조사대상은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총 6개 그룹(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시간제보육기관/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3~4인의 운영자 및 실무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1차와 4차는 각각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기관,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과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각각 포함하였다. 2차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시설을 운영자가 고르게 참여하였다. 3차는 지역아동센터장, 5차는 다함께돌봄센터장, 6차에는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팀장급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2차는 서면응답결과를 토대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실시 일정은 이하 <표 I-3-8>과 같다.

<표 I-3-8>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조사규모: 긴급돌봄 공급자

차수	서비스 유형	개최 일시	참여기관 유형(개원/개소)
1차	유치원	8.11. 10시	사립법인(1), 사립(1), 공립병설(2)
2차	시간제보육시설	8.11. 14시	육아종합지원센터(2), 가정어린이집(1), 가정어린이집(1)
3차	지역아동센터	8.17. 10시	지역아동센터(3)
4차	어린이집	8.18. 10시	국공립어린이집(1), 가정어린이집(1), 민간어린이집(4)
5차	다함께돌봄센터	8.18. 14시	우리동네키움센터(2), 다함께돌봄센터(1)
6차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8.24. 14시	가족센터(3),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1)

주: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징은 제5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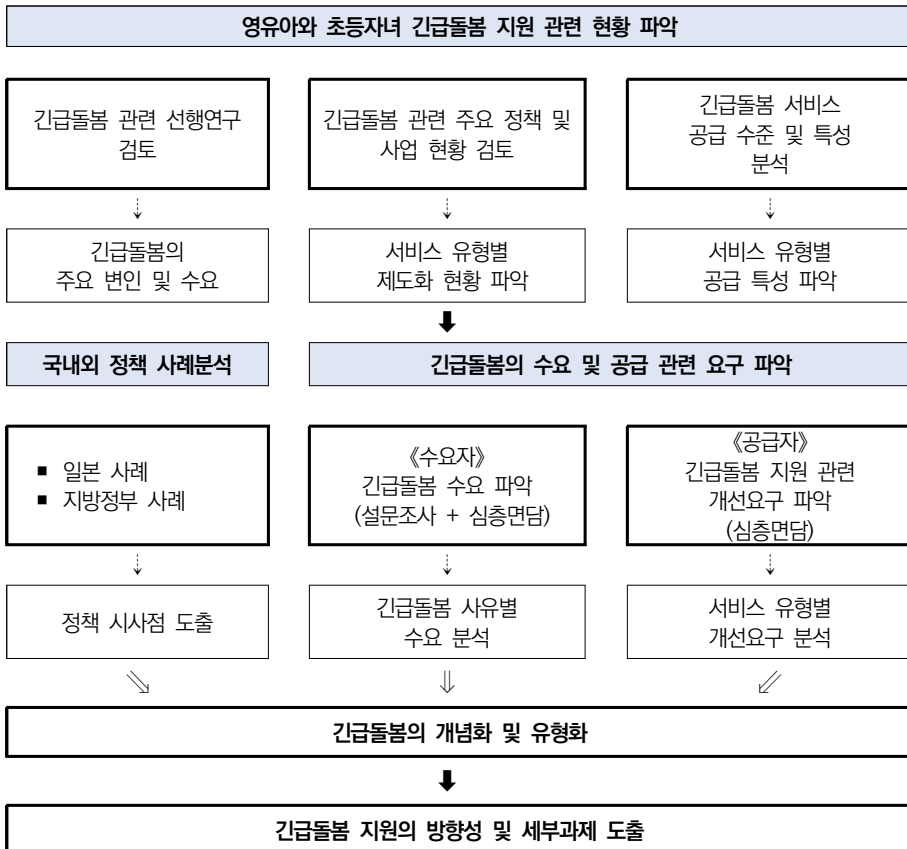
5)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간담회 및 자문회의는 유관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시간제보육 운영자 등) 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 강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연구 절차 및 분석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 절차 및 분석틀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그림 1-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II

연구의 배경

- 01 선행연구 검토
- 02 긴급돌봄 지원 관련 규정과 유관 사업 추진 현황
- 03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 04 소결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현행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돌봄 지원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살펴보았으며, 긴급돌봄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돌봄 인프라의 공급 특성을 분석 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상황의 실태 및 대응, 그리고 지원요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긴급 상황 시 주양육자

영유아 자녀의 긴급 상황 시의 돌봄에 대해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나 자녀가 아픈 경우에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주를 이루어 해당 비율은 각각 72.5%와 77.8%로 조사되었다(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 2021: 325-326). ‘부모’ 이외에는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며(긴급 상황 시 26.2%, 아이가 아플 때 21.1%), 이외 비혈연이나 ‘공공 아이돌보미’는 1% 이하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변인별로는 모의 취업 여부와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인 경우 부모 이외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긴급 상황 발생 시는 48.8%, 아이가 아플 때는 38.6%로 높게 나타나며, 어머니가 부재하는 가정에서 해당 응답률은 각각 51.7%와 51.2%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아자녀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비혈연이나 공공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얻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김은설 외, 2021: 326).

〈표 II-1-1〉 긴급 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2021)

단위: %(명)

구분	긴급 상황				자녀가 아플 때					계(수)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공공 아이 돌보미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 집	공공 아이 돌보미	
전체	72.5	26.2	0.8	0.5	77.8	21.1	0.7	-	0.4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76.9	21.9	0.6	0.6	81.6	17.3	0.6	-	0.5	100.0(1,679)
유아	68.8	29.8	0.9	0.5	74.7	24.2	0.7	0.1	0.3	100.0(1,792)
$\chi^2(df)$		37.9(3)***				27.7(4)***				
모취업여부										
취업	48.4	48.8	1.7	1.1	59.2	38.6	1.4	0.1	0.7	100.0(1,340)
휴직중	82.5	17.3	0.2	-	85.3	14.5	0.2	-	-	100.0(430)
미취업	91.8	7.9	0.1	0.2	93.0	6.7	0.1	-	0.2	100.0(1,670)
부재 등	48.3	51.7	-	-	48.8	51.2	-	-	-	100.0(31)
$\chi^2(df)$		704.0(9)***				546.5(12)***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26-327 〈표 VI-6-15〉

*** $p < .001$.

한편 긴급 상황 시의 어려움 정도는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조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긴급 시에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2019: 195-196).

〈표 II-1-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정도: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2019)

단위: %(명), 점

구분	긴급 시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돌봄지원 정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않음	도움 받지 못함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16.7	19.8	26.1	27.6	9.8	100.0	(1,606)	2.9(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6.0	19.5	31.2	19.5	3.9	100.0	(77)	2.6(1.2)
101~150만원	20.0	14.1	34.1	21.2	10.6	100.0	(85)	2.9(1.3)
151~200만원	16.7	21.7	27.9	26.7	7.0	100.0	(641)	2.9(1.2)
201~250만원	16.5	22.0	22.8	31.5	7.1	100.0	(127)	2.9(1.2)
251~300만원	20.0	22.0	28.0	23.0	7.0	100.0	(100)	2.8(1.2)

구분	긴급 시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돌봄지원 정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301~350만원	19.7	20.5	25.4	24.6	9.8	100.0 (122)	2.8(1.3)
351~400만원	12.7	26.4	29.1	24.5	7.3	100.0 (110)	2.9(1.1)
401~500만원	17.1	12.1	20.0	35.7	15.0	100.0 (140)	3.2(1.3)
501~600만원	16.5	18.6	18.6	30.9	15.5	100.0 (97)	3.1(1.3)
601~700만원	6.7	13.3	22.2	42.2	15.6	100.0 (45)	3.5(1.1)
701~800만원	9.1	13.6	13.6	36.4	27.3	100.0 (22)	3.6(1.3)
801만원 이상	2.5	10.0	20.0	30.0	37.5	100.0 (40)	3.9(1.1)
$\chi^2(df)/F$	109.833(44)***						5.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함' 1점~'매우 도움을 받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 외(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195-196 <표 V-1-25> 재구성

*** $p < .001$.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의 공백 실태 및 빈도

2021년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할 때' 39.2%, '부모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 36.0% 순으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21: 173-174) 그 밖에도 '기관이 문을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24.2%)와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24.0%) 등이 지목되었다. 또한 자녀가 아픈 경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셋째 자녀에서 보다 심각하여 해당 응답률이 61.5%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2021)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 운영전 출근해야 할 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 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이용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0.5	47.8	28.6	26.3	43.2	27.7	5.5	0.7	(1,092)
홀벌이 가구	40.2	22.4	15.6	19.8	40.0	52.9	4.4	0.8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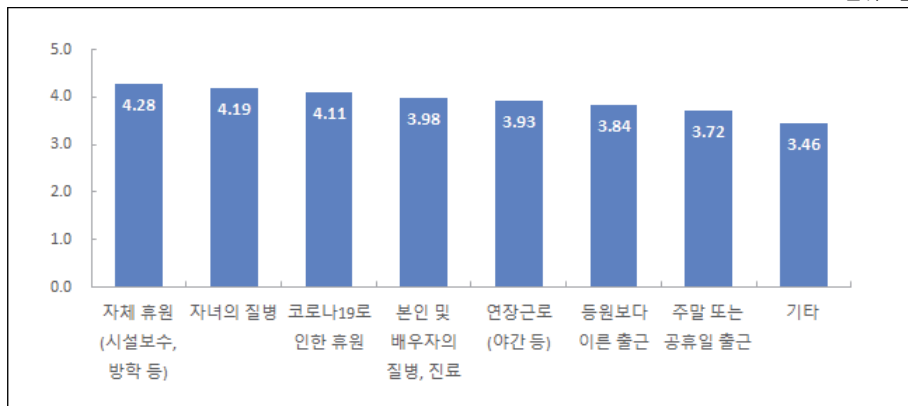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연장 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 운영전 출근 해야 할때	주말 또는 공휴일 에 출근 해야 할때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 휴원	본인 또는 배우자 가 아픈 경우	이용 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모두 근로 안함 $\chi^2(df)$	26.9	7.7	7.7	11.5	11.5	61.5	0.0	3.8	(26)
					288.565(16)***				
출생순위									
첫째	43.2	40.5	25.3	26.6	37.2	34.8	4.3	0.8	(775)
둘째	48.6	38.0	23.1	22.5	46.1	37.2	6.1	0.8	(739)
셋째 이상	61.5	38.5	23.9	16.5	44.0	36.7	3.7	0.9	(109)
$\chi^2(df)$					40.324(16)**				

자료: 유해미 외(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73~174.
〈표 IV-1-39〉 재구성

** $p < .01$, *** $p < .001$

[그림 II-1-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 5점 평균(2021)

단위: 점



주: 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 육아로 바쁠 때', '배우자의 휴가', '아이의 하원이 빠른 경우' 등임.

자료: 유해미 외(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5
[그림 IV-3-1]

또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이용 중인 기관의 휴원이나 자녀가 아픈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픈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1: 205, 그림 IV-3-1 참고).

한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은 맞벌이 가

구에서 더욱 빈번하여 두 달에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85.7%에 달하였다(유해미 외, 2021: 170-171).

〈표 II-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보육 발생 빈도(2021)

단위: %(명)

구분	연 3회 이하	두 달에 1회 이하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3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계(수)
전체	16.8	22.5	28.6	24.9	7.3	100.0 (9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4.4	21.9	29.6	26.5	7.7	100.0 (717)
홀벌이 가구	24.1	24.6	26.3	19.4	5.6	100.0 (232)
모두 근로 안함	16.7	16.7	16.7	33.3	16.7	100.0 (12)
$\chi^2(df)$	18.397(8)*					

자료: 유해미 외(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70-171.

〈표 IV-1-36〉 재구성

* $p < .05$.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 중에서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연간 횟수는 평균 5.52회 이고, 연간 5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48.1%로 조사되었다(유해미·이민희, 2017: 61). 또한 해당 횟수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0세아는 평균 7.8회, 1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높고, 영아의 평균 횟수는 5.84회로 유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 긴급돌봄 지원요구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요구를 자녀가 아픈 경우와 부모의 근로특성에 따라 수요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픈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이를 제외하면, 전문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순으로 선호도를 보인다. 2017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직접돌봄에 대한 수요는 자녀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반의 수요라고 인식된다(유해미·이민희, 2017: 62-63). 부모의 직접돌봄을 제

외하고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는 의료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29.0%)로 나타난다(유해미·이민희, 2017: 64).

이는 2021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응답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즉, 아픈 자녀의 돌봄에 대해서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 의료기관내 보육시설이나 아픈 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은 각각 17.9%와 14.2%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21: 220-221). 같은 연구에서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비율은 기관보다 낮게 나타난다. 해당 사유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힘들 거 같아서’, ‘자녀가 낯선 아이돌보미에게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1순위와 2순위 응답률을 합하여 각각 57.9%와 51.4%,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와 ‘기관이 긴급 상황에 더 전문적이고 신뢰가 되어서’가 약 20% 선으로 나타난다(유해미 외, 2021: 221).

다음으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 어린이집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21: 317-318).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나타났으며, 해당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눈치가 보여서’가 54.4%, ‘아동의 적응관련 어려움’(23.9%), ‘담임의 하원지도 부재’ 10.8%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21: 318-319).

〈표 II-1-5〉 취약보육 유형별 필요 빈도(2021)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야간연장보육	2.4	3.0	2.9	2.5	89.2	100.0(3,471)
야간12시간보육	1.6	2.0	2.1	1.9	92.5	100.0(3,471)
24시간보육	0.5	0.6	1.1	1.6	96.2	100.0(3,471)
휴일보육	1.0	0.9	3.0	3.0	92.1	100.0(3,471)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22 〈표 VI-6-12〉

같은 조사에서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야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이 각각 10.8%와 7.9%였으며, 해당 빈도는 1주일에 1~2번 또는 한 달에 1~2번인 경우가 최대 3%선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21: 322).

한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 중에서 ‘야간 및 주말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해당 의향은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비정기적으로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76.9%로, 매주(의향 있음 비율: 75.5%) 또는 정기적으로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의향 있음 비율: 74.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유해미 외, 2021: 230).

2. 긴급돌봄 지원 관련 규정과 유관 사업 추진 현황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지원대상 및 요건, 서비스 이용 절차 및 방법, 타 서비스 연계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때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 내 양육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공동체, 시설 및 학교 기반의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그 밖에도 긴급한 경우 부모가 직접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아 자녀(6~35개월)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00).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00). 단,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23e: 309).

2) 서비스 운영시간 및 이용비용

서비스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간제보육반의 정원은 1개반 기준(6개월~36개월 미만) 3명이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은 1대 3으로 탄력편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e: 309).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 이며, 부모 부담금은 시간당 1천원 이다(보건복지부, 2023e: 308).

〈표 II-2-1〉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2023)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주: 1)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2)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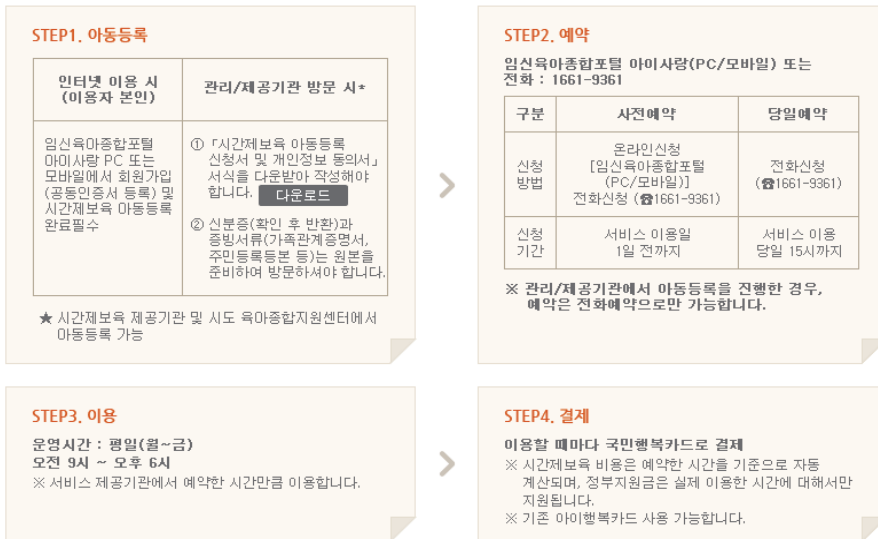
3) (외국인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3e).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308.

3)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시간제 보육은 사전 예약 및 당일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시간제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23e: 309).

[그림 II-2-1] 시간제보육 이용 절차 및 방법(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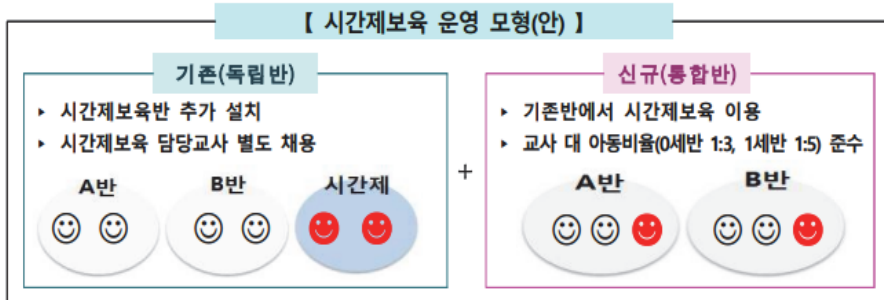


자료: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_어린이집_시간제보육사업, <https://www.childcare.go.kr/?menuuno=200r>
(2023. 6. 7. 인출)

시간제보육 이용 시는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은 개별로 준비해야 하며,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으나 제공기관과 협의하면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시간당 4,000원 기준으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시간제보육의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독립형과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24년부터는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수요와 지역별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보육의 인프라를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2b: 20).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22a: 2).

[그림 II-2-2]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자료: 보건복지부(2022b).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 p. 20.

나.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및 초등자녀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어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대응해 왔다(여성가족부, 2023c: 8).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춤춤한 아동돌봄체계 마련’(국정과제 46)의 일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87)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23c: 8).

특히 올해 발표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는 전반적인 지원 확대 이외에도 긴급 또는 단시간 이용 수요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관계부처합동, 2023a: 2)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a: 8). 즉,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자동매칭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돌봄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23a: 5). 그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23f: 1).

이하에서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 서비스와 질병감염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 지원아동서비스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1) 일시연계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48).

가) 신청 자격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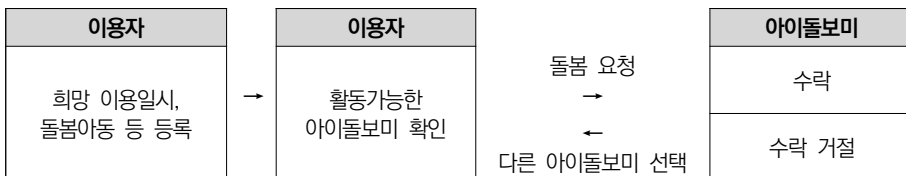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 공백 기준은 맞벌이 가구 등 일상적인 틈새돌봄 이외에 일시적인 수요로서 다음의 6가지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즉, 1) 부 또는 모의 질병, 2)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3)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4)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 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6)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그것이다(여성가족부, 2023c: 30).

나) 신청 및 이용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웹회원” 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등급으로 승인 후 정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44).

일시연계 서비스는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이용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야간, 주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시연계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II-2-3]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2023)



자료: 여성가족부(2023d).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49.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작 5일전 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

시적으로 제한된다(여성가족부, 2023d: 48).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3시간이며,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48).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치금을 확인 또는 충전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카드 결제(다음날 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돌봄페이 결제(당일 충전)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 이용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예치금은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요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d: 48). 단, 서비스 취소를 원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하며, 신청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10).

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⁴⁾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57).

가) 서비스 신청

일반 신청은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하다. ‘가~나’형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긴급하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후, 추후 미비 요건을 보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58).

나) 서비스 제공 방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주말 및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58). 구체적으로 질병 아동의 병

4)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나, 단,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여성가족부, 2023d: 58). 아이돌보미는 돌봄 아동의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다) 서비스 이용요금 및 지원방법

시간당 기본요금은 13,290원이고,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으며(여성가족부, 2023d: 58), <표 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다르다. 또한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이 된다(여성가족부, 2023d: 10).

<표 II-2-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2023)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290원)			
		A형(2016.1.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1,297원 (85%)	1,993원 (15%)	9,968원 (75%)	3,322원 (25%)
나 형	120% 이하	7,974원 (60%)	5,316원 (40%)	6,645원 (50%)	6,645원 (50%)
다 형	150% 이하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라 형	150% 초과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자료: 여성가족부(2023d).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p. 59.

한편 이상의 시간제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유치원 이용아동의 경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여성가족부, 2023d: 31). 단,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방학 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 기간(자율등원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위

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 기간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d: 32).

다. 기관돌봄서비스: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운영 시간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시간 이후에도 야간연장보육 등 그 밖의 연장보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202년 3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오후 4시 까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이후로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9: 1).

가) 지원대상 및 요건

연장보육은 유아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2). 0~2세아를 둔 가구에서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e: 333-334).

이들 연장보육의 필요 사유는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이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및 유산, 아동의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입원이나 간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47).

〈표 II-2-3〉 0~2세 연장보육 필요사유 및 제출서류(2023)

연장보육 필요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두 자녀 이상 가구)
	임신·유산		임신진단서 등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필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입원 /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조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학업	재학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인정 가능)* 휴학기간 불인정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주: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직급여수급자격, 장애인등록증, 산정특례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자료: 보건복지부(2023e).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33-334 일부내용 발췌하여 작성함

한편 이상의 연장보육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탄력편성 기준에 따라 연장반을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면 된다(보건복지부, 2023e: 67-68).⁵⁾

5) 연장보육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반이 편성되고, 연령 혼합 반 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별 정원은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이 기준이 된다(보건복지부, 2023e: 67).

〈표 II-2-4〉 어린이집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2023)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만0세반	만0세반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자료: 보건복지부(2023e).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 68.

나) 서비스 이용비용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3e: 404). 따라서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17시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는 탄력편성 정원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연장반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0세아는 3,000원, 1~2세는 2,000원, 3~5세는 1,000원이 지원된다. 긴급한 상황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할 시에 급·간식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 2023e: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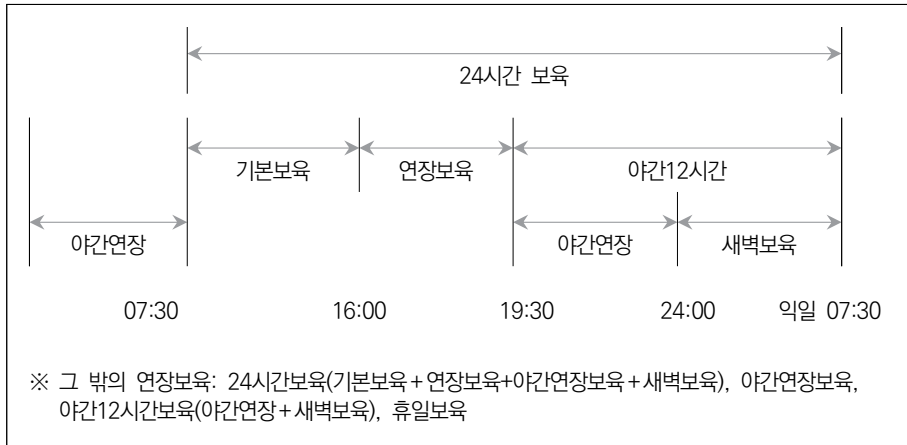
어린이집 연장보육 운영 여부는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장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수,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e: 79).

2) 어린이집 그밖의 연장보육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그 밖의 연장보육은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서비스는 정규 보육시간 이외에 추가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용 절차 이외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e: 363).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e: 363). 야간12시간보육료와 24시간보육료는 24시간 지

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그 밖의 연장형보육을 지원할 시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e: 363).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II-2-4]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보육 개념



자료: 보건복지부(2023e).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 407.

가) 야간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은 기준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23e: 407).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e: 407).

(1) 운영시간 및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은 19시30분부터 24시이며,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7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한다. 토요일에는 15시 30분부터 24시 까지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63).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407).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

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 411). 시설 내 여유 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는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시 30분)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는 19시 30분부터 산정된다(보건복지부, 2023e: 411).

야간연장보육료는 최대 월 60시간 까지 지원되며, 이용시간 계산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단,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시 30분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한 경우 19시 30분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64).

야간 연장보육료 지원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일반아동은 4천원, 장애아동은 5천원이고, 일반아동은 최대 240천원, 장애아동은 최대 300천원 까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3e: 363).

〈표 II-2-5〉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2023)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자료: 보건복지부(2023e).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363.

(2) 이용 신청 및 절차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64).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한다. 원장은 신청서를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해야하며, 보호자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는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반

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야간12시간보육

야간12시간보육 이용시간은 19시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이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학 아동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e: 364).

다) 24시간보육

24시간보육은 7시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 운영된다. 주간보육(07시30분~19시30분)과 야간12시간보육(19시30분~익일 7시30분)과 함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65).

지원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 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미취학 영유아로서, 야간 12시간 및 24시간보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365).

24시간보육료는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412).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e: 365). 연장보육과는 다르게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이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23e: 93).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휴일보육료는 수납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23e: 414).

라) 휴일보육

휴일보육 이용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23e: 365). 지원 금액은 월 기준으로(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 일수/해당 월 보육가능 일수) 계산된다.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 금액(월 기준)의 15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e: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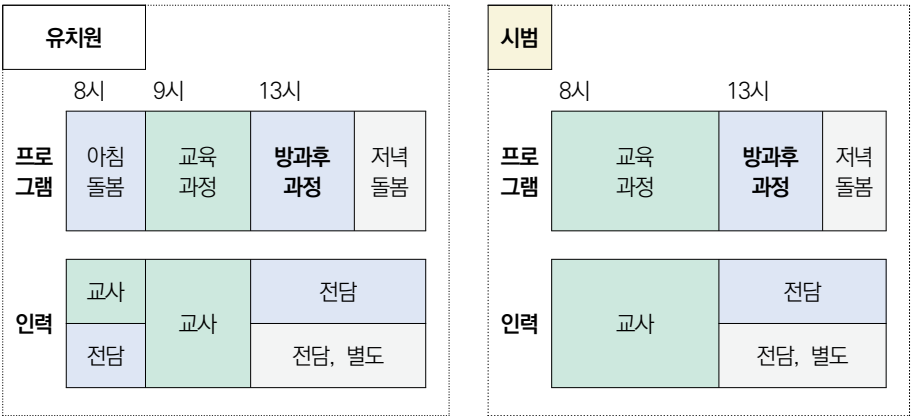
휴일어린이집 인건비는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을 지원한다.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채용 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416).

휴일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대 7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단,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는 시설 당 휴일반 2개반을 초과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23e: 417).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유아 중심의 개편이 이루어졌다(교육부, 2018: 20). 방과후과정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고 저소득가정의 유아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의 99.8%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전체 유아의 89.1%가 참여하여 이용하기에 이르렀다(관계부처합동, 2023b: 8). 따라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이용 중인 유치원에서 추가로 돌봄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II-2-5]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 9시 → 8시 시범 조정 운영(안)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b).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 20.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의하면, 202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참여대상을 희망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인상하며,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을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3).

가) 방과후과정 지원대상 및 요건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유아가 방과후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유치원 실정이나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8). 유치원별로 증빙서류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 대상을 선별한다(경기도교육청, 2021: 5).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지원대상은 이와 같이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우선이나, 2022년에는 9개 시·도에서 희망하는 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이어(관계부처합동, 2023b: 5), 202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3).

나) 운영시간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한다. 방과후과정의 최소 보장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부산 대전, 울산, 경북, 제주 지역은 18시, 대구, 인천, 광주지역은 19시, 서울시는 20시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관계부처합동, 2023b: 23).

가장 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교육시간에 따라 종일제, 에듀케어, 온종일돌봄교실로 구분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3). 먼저, 종일제(사립)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데,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방학은 학부모의 요구와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9). 에듀케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3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운영하며,

별도의 방학 기간을 두지 않는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13-21). 온종일돌봄교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하며,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토요일 운영 여부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6).

한편 이상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은 유아교육 지원체계의 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0). 현재는 교육과정을 4~5시간 동안 운영하고,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당겨 교육과정은 1일 5시간,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종료 이후 1일 4~5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0).

이처럼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한 실정이므로 이용 중인 유치원에서 긴급한 돌봄의 수요에 충족하는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지역별 또는 기관유형별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 이용시간과 비용지원

방과후과정비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1일 8시간 이상(교육과정 포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 지원된다(교육부, 2023a: 8). 1일 기준 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시에는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학 기간, 졸업 이후 등 교육과정 시간(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비가 지원된다(교육부, 2023a: 8).

〈표 II-2-6〉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2023)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2.29.			
방과후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자료: 교육부(2023a).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

방과후과정 이용시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1시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교육부, 2023a: 8). 방과후과정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하며, 지원수준은 인건비, 교재 및 교구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방과후과정 지원비는 2024년에는 5세, 2025년에는 4세, 2026년에는 3세로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3).

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확정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를 지원 받으려면 방과후과정의 참여 신청서를 비롯하여 출석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9).

유아학비는 학부모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교육부, 2023a: 7).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유치원 입학 지원 단계부터 부모의 돌봄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2025년 이후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23).

다른 한편 인구 변화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b: 14). 즉, 농촌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1~2학급 도서형,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3학급 거점형, 4학급 이상 준단설형 등 인구 밀집 및 도서지역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규모 유치원 지원 모델의 개발을 모색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23b: 14). 또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의 확산도 추진된다. 방학 중 방과후과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어촌 등 소규모 유치원과 지역내 다양한 기관간의 방과후 연계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3b: 15). 즉, 지역사회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거점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23b: 15).

라. 학교 및 마을돌봄: 초등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지역사회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방과후보육을 들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운영시간 등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 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확정한 ‘초등 전일제교육’⁶⁾에 따라 올해 1월에 늘봄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그간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들 중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교육부, 2023b: 3).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한계점으로 운영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의 비율이 30%에 그치는 점을 들었다(교육부, 2023b: 6). 이외에 단위 학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교원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교육부, 2023b: 7). 이에 따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할 예정이다(교육부, 2023b: 8).

가) 지원대상 및 요건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은 오후돌봄,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22: 17). 2022년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오후돌봄교실의 지원대상을 전(全)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 학년은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담임 추천학생 등을 중심으로

6)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의하면,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정책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3b: 8).

운영한다(교육부, 202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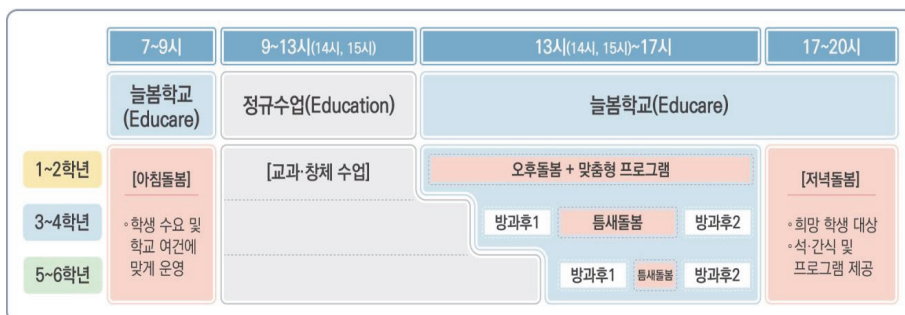
저녁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22: 59). 방학 중 돌봄교실은 학기중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22: 62).

나) 운영시간

오후돌봄교실은 돌봄 수요와 해당 시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 부터 17~19 시까지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저녁돌봄교실은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22시까지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저녁식사 후에 바로 귀가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저녁돌봄보다 오후돌봄의 연장운영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22: 59). 방학 중 돌봄교실은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정부에서는 오전부터 학기중 돌봄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22: 62).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에서는 운영시간을 오후 8시 까지 연장하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도 주목하여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b: 14). 늘봄학교에서는 아침과 저녁, 방학 돌봄, 방과후 연계 돌봄 이외에도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17시 이후 돌봄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일시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교의 돌봄교실 대기자와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를 우선으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교육부, 2023b: 14).

[그림 II-2-6] 늘봄학교 개념(안)



자료: 교육부(2023b).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p. 8.

다) 비용지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편성과 집행은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 41). 프로그램비, 급간식비는 필요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하며,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 자체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역별 규정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은 학교별 지침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오프라인)하거나,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 또는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교육부, 2022: 90).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의하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 만족도 조사, 수강 현황 조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b: 19).

마) 타 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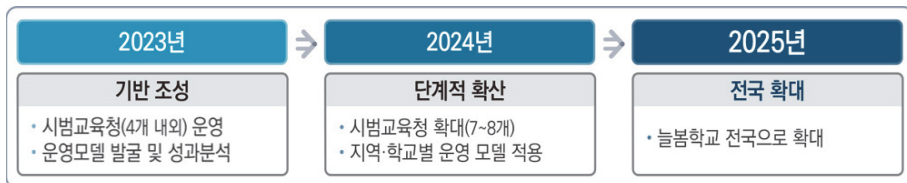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은 지역 내 돌봄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83). 예를 들어 시청-교육청 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돌봄교실의 대기 학생이 많은 자치구 내 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활용 가능한 교실을 돌봄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본교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교육부, 2022: 83). 그 밖에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84).

한편 현 정부에서는 지역 중심의 돌봄을 위해 교육청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를 갖추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중앙과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b: 18). 구체적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인력 프로그램 재정 등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별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시에 방과후돌봄을 위한

복합공간을 확충하며,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방과후돌봄을 위해 중앙-지역 단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를 추구한다(교육부, 2023b: 20).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고용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기존의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부-지자체 공동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연계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23b: 20).

특히 과밀지역 등 도시 지역에서는 돌봄 대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을 확산하고, 이들 기관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23년 100억원), 민간 기부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b: 17).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자치구 조례를 재개정하여 교육청과 자치구 간의 협력 방안 및 기관별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교육부, 2023b: 24),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그림 II-2-기]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자료: 교육부(2023b).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p. 8.

2) 지역아동센터

가) 지원대상 및 요건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3c: 41).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 이더라도 형제·자매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간대를 달리 하여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1).

‘우선돌봄아동’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이다.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1-42).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아동의 등록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하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0시까지, 방학(단기 방학 포함)중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의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c: 49).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이므로 교사의 휴가 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은 불가하며, 매 학기 시작을 전후로 각 센터는 수요 시간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에 필수 운영시간을 14시~17시로 조정할 수 있다.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운영은 센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운영 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주간 운영일수를 살펴보면, 1주일에 5일을 운영하는 비율이 전체의 79.1%로 다수를 차지하며, 토요일에 운영하여 1주일에 6일을 운영하는 비율이 20.4%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2c: 21). 또한 하루 운영시간은 9시간 이상부터 1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은 29.1%이고, 특히 12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367개소이고,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표 II-2-7〉 지역아동센터의 주간 운영일수/운영시간 현황(2021)

단위: 개소, %

구분		지역아동센터 수	비율
주간 운영일수 (일/주)	전체	4,057	100.0
	5일 운영	3,211	79.1
	6일 운영	828	20.4
	7일 운영	18	0.4

구분		지역아동센터 수	비율
하루 운영시간	전체	4,057	100.0
	9시간 미만	44	1.1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833	69.8
	10시간 이상~11시간 미만	506	12.5
	11시간 이상~12시간 미만	307	7.6
	12시간 이상	367	9.0

주: 2021년 12월말 기준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 21.

토요일에는 행사 시에만 운영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이며, 매주 운영하는 비율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17년에는 30.3%였으나, 2021년에는 19.7%에 그친다(보건복지부, 2022c: 23). 공휴일에는 행사시에만 운영하는 비율이 60%선으로 주를 이루며,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6%였으나, 2021년에는 44.9%로 나타난다. 20시 이후 야간에 운영하는 비율은 토요일 및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41.4%였으나, 2021년에는 21.5%에 그친다.

〈표 II-2-8〉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공휴일/야간보호 운영 현황(2017~2021)

단위: 개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토요일 운영 여부	전체	4,136	100.0	4,138	100.0	4,081	100.0	4,008	100.0	4,057	100.0
	매주운영	1,253	30.3	1,112	26.9	1,024	25.1	884	22.1	801	19.7
	격주운영	95	2.3	77	1.9	48	1.2	48	1.2	33	0.8
	행사시	2,061	49.8	2,192	53.0	2,145	52.6	2,103	52.5	2,181	53.8
	월 1회	95	2.3	85	2.0	41	1.0	25	0.6	16	0.4
	운영안함	632	15.3	672	16.2	823	20.2	948	23.7	1,026	25.3
공휴일 운영 여부	전체	4,136	100.0	4,138	100.0	4,081	100.0	4,008	100.0	4,057	100.0
	운영함	51	1.2	41	1.0	24	0.6	16	0.4	20	0.5
	행사시	2,479	60.0	2,501	60.4	2,347	57.5	2,215	55.3	2,206	54.4
	월 1회	9	0.2	3	0.1	4	0.1	2	0.0	8	0.2
	운영안함	1,597	38.6	1,593	38.5	1,706	41.8	1,775	44.3	1,823	44.9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센터 수	비율
20시 이후 (야간 보호) 운영 여부	전체	4,136	100.0	4,138	100.0	4,081	100.0	4,008	100.0	4,057	100.0
	운영함	1,712	41.4	1,174	28.4	1,589	38.9	909	22.7	871	21.5
	운영안함	2,424	58.6	2,964	71.6	2,492	61.1	3,099	77.3	3,186	78.5

주: 2021년 12월말 기준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 23.

다) 비용지원 수준 및 중복지원 금지 관련 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센터의 정원, 지역별 특성,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되며, 정원이 10인 미만의 시설은 1,060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보건복지부, 2023c: 115). 이와 별도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자체 포함) 소속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중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23c: 43).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취학전 졸업반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초등돌봄교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c: 43-44).

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서비스 전달체계

지역아동센터 이용(돌봄서비스) 신청은 보호자나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희망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확인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c: 37).

돌봄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는 처리기한인 7일 이내에 서류 검토와

상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결정한다. 보호자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센터 이용을 결정하고, 희망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타 지역아동센터 등을 안내하는 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23c: 40). 이후 돌봄서비스 결정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배치한다(보건복지부, 2023c: 40).

[그림 II-2-8]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2023)



자료: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37.

마) 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시·도청에서는 광역돌봄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도 방과후돌봄서비스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고, 기초돌봄협의회 등을 통해 시·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23c: 6).

한편 관련 지침에는 우선적으로 돌보는 아동으로 저소득층 가구 이외에도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특례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2). 즉,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0). 돌봄서비스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녁돌봄 연계 시간대에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을 충원하고, 지역사회돌봄협의체를 통해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c: 44).

[그림 II-2-9]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연계 사항

▶ 돌봄서비스 연계
○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돌봄 연계시간대(16~19시 등)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총원
○ 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

자료: 보건복지부(2023c).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 44.

3)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정기·일시돌봄과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b: 4). 따라서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영유아와 초등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가) 지원대상 및 요건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이며, 입학 전인 만 6세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4).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초등학교 저학년 등)를 정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 아동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정원(정기돌봄)은 면적 기준(아동 1인당 3.3㎡ 이상)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정원 중, 일부를 일시돌봄 인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5). 단, 동 시간대 최대 이용아동수는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을 포함하여 돌봄선생님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우선순위, 이용의 종결 기준, 이용 제한 기준 및 절차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7). 특히 일시돌봄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당일 등록 및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하나, 일시돌봄 사유(보호자의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에 따라 5일 이내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일시돌봄 관련 서류를 기간에 따라 1회만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보건복지부, 2023b: 57). 일시돌봄 이용아동은 정기돌봄 이용아동과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해야 하고, 동시간대에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운영시간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 8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초등학교 학기나 방학 중에는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5).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 중의 경우 14시부터 20시까지, 방학(단기방학 포함)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다(보건복지부, 2023b: 56).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 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대체인력 활용 등의 사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b: 55)

서비스 유형은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되며, 이때 일시돌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으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b: 55) 일시돌봄 수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매 학기 시작(3월, 9월)을 전후로 하여 센터는 돌봄 수요를 파악해야 하며, 만일 19시 이후 수요가 없을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 보고 후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14시~19시로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6).

다) 비용지원 수준 및 중복지원 금지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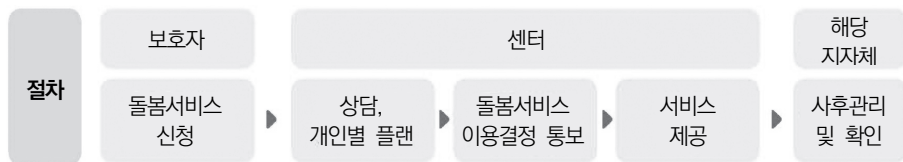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5). 단, 보호자가 직접 업체 등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거쳐 수납하도록 해야 하며, 수납한도액인 월 10만원(아동 1인당) 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일시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일 단위(또는 시간 단위)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7).

라)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서비스 전달체계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은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에 돌봄서비스를 신청(전화, 온라인 등)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23b: 50).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하고, 이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일, 보호자가 희망하는 센터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지역아동센터 등) 및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II-2-10]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절차(2023)



자료: 보건복지부(2023b).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 50

마) 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b: 58). 예를 들어 2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각 서비스 간의 틈새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4) 방과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의 돌봄을 제공하며, 1일 기준으로 4시간 이상 19시 30분 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3e: 418). 즉,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 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고,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으므로 초등자녀의 긴급돌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 중인 국공립, 법인·단체 등어린이집 이며, 신규로 지원하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23e: 418).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하며, 보육교사 인건비는 방과후 아동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시에 지원된다.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 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영유아 최소 인원(5명)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e: 419).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때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e: 419).

마. 공동육아 및 돌봄공동체: 영유아 및 초등자녀

1)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품앗이와 부모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1). 구체적으로는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3a: 6).

가) 지원대상 및 요건

공동육아나눔터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른 돌봄서비스들에 비해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이라면 공동육아나눔

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_정책정보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2023. 4. 1. 인출).

[그림 II-2-11] 공동육아나눔터_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시설의 운영 형태 예시

〈운영 형태 예시〉

- 1) 오후~저녁 종일 돌봄 :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고, 돌봄인력 자원이 충분한 경우
- 2) 오전 개방, 오후 돌봄 : 오전에는 시설을 외부에 개방
- 3) 혼합형 : 공간 규모가 크고 인력이 충분하여 동시간대에 일부 공간을 외부에 개방

자료: 여성가족부(2023a). 2023년 가족사업안내. 2권. p. 17.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시설은 맞벌이 가구 자녀를 우선 모집(70% 까지)하고,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 신청이 정원 대비 70% 미달 시 다른 아동 포함할 수 있으며, 일시돌봄 또는 긴급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원에 여유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a: 14). 또한 맞벌이 가구 자녀의 돌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특히 운영 형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그림 II-2-11]과 같이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a: 17).

나) 운영시간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이상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_정책정보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2023. 4. 1. 인출).

[그림 II-2-12]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운영 개요(2020)

- (운영 시설) 건가센터 위탁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 (돌봄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2세~12세 이하)
- (운영 일시) 3.9.~4.3. 08:00~19:00 (주말 제외, 지역 여건 및 수요 고려)
- (돌봄 인원) 개소당 10명 내외 (공간 여건 등 고려, 신축적 운영)
- (돌봄 인력) 아이돌보미, 품앗이 부모, 자원봉사자 등(돌봄 인력당 3명 이내 돌봄)
- (급식 지원) 간식·도시락 등 지원 (자비 부담 원칙, 취약계층 무료 제공)

자료: 여성가족부(2020). 보도자료(2020. 3. 24): 공동육아나눔터 찾아 긴급돌봄 현장 점검. p. 3.

2018년에는 이용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였다. 야간 및 주말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중 10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 운영하도록 규정한 운영시간을 2018년에 야간 및 주말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5).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공백 시에는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시설로도 전환하여 활용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개원 및 개학이 연기되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였다. 일시적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 해당 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표전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에 신청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1).

다) 이용요금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a: 16). 예를 들면 간식 제공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기존예산으로 제공이 어려운 항목에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라) 공동육아나눔터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서비스 전달체계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 신청은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_정책정보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2023. 4.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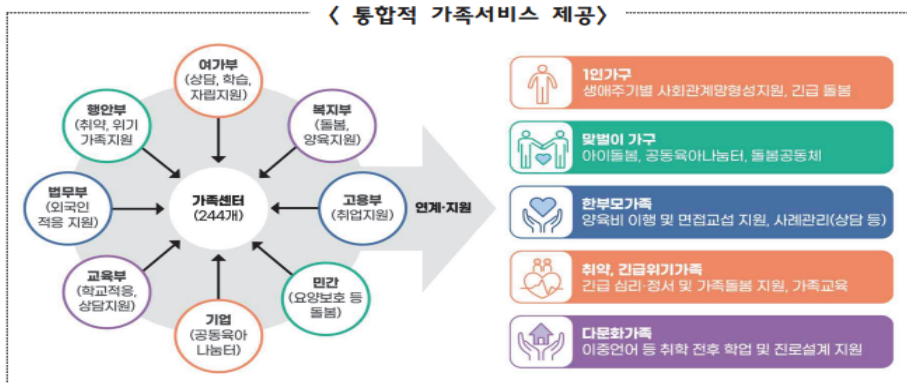
2) 돌봄공동체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돌봄공동체지원사업은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형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추진되어(여성가족부, 2023b: 4),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돌봄의 틈새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활동내용에는 일상돌봄 이외에도 긴급돌봄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3b: 3). 여기서 '긴급돌봄'이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양육자 아동 방역 등의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공되는 돌봄으로 정의된다(여성가족부, 2023b: 3). 즉, 돌봄공동체는 아동을 위한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활동을 실시하되, 구성원은 돌봄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b: 4).

한편 이상의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돌봄지원 사업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하 [그림 II-2-13]에서와 같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서비스 간의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3c: 12).

[그림 II-2-13]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체계: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p. 12.

바. 부모 직접돌봄 지원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자녀돌봄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시간외 근로 금지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임신출산육아기 지원_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2023. 6. 8. 인출).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이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단, 감염병의 확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령상 휴가기간에 대한 유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 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간은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임신출산육아기 지원_근로시간단축 등,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2023. 6. 8. 인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 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도록 규정된다.

3) 시간외 근로 금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임신출산육아기 지원_근로시간단축 등,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2023. 6. 8. 인출).

4)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2023. 6. 8. 인출).

3.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공급 현황

이하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긴급 또는 일시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공급 수준을 분석하였다. 즉, 긴급돌봄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 연령별로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공급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 영아 대상 돌봄 인프라: 시간제보육 현황

2016~2022년 동안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반수, 이용아동 수를 살펴보면 제공기관 수와 반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아동수도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3-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수/반수/이용아동수 및 비율 추이(2016~2022)

단위: 개소, 개반, 명, %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기관 반수	이용아동 수	0~2세 주민등록인구수	0~2세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 비율
2016	347	382	13,377	1,274,601	1.05
2017	382	437	18,115	1,198,543	1.51
2018	370	437	18,437	1,090,535	1.69
2019	402	490	20,388	989,002	2.06
2020	578	681	10,187	901,344	1.13
2021	740	857	10,434	834,699	1.25
2022	796	946	19,702	786,567	2.50

주: 1) 2020,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 시간제보육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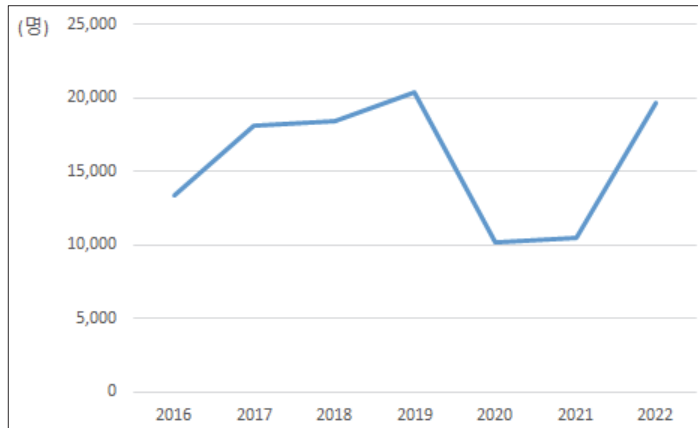
2) 2022.12.31. 기준 자료임.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23). 내부자료

2)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3. 6. 19. 인출)

[그림 II-3-1]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추이(2016~2022)

단위: 명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3). 내부자료.

2022년 제공기관 수는 2016년 대비 약 2.3배로 증가하였고, 제공기관 반수는 약 2.5배로 증가하였다. 0~2세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이용아동의 비율은, 2016년 1.05%에서 2019년 2.06%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2021년간은 1.13~1.25%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2.5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16~2022년 동안의 시간제보육 반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경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대비 증가율로는 광주가 4.7배, 세종이 4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0~2세 인구수 대비 시간제보육반 수는 전국 평균 0.734개로 매우 적었고, 17개 시·도별로는 0.057~0.261개로 차이가 있었으며 대전과 제주가 각각 0.251개, 0.261개로 가장 많은 편이었다.

〈표 II-3-2〉 전국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공급 추이(2016~2022)

단위: 개반, 명

시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년 0~2세 주민등록인구수	2022년 인구수 대비 반수
서울	80	91	99	111	125	134	140	128,869	0.109
부산	38	39	42	49	76	102	100	44,234	0.226
대구	29	32	32	29	40	44	51	32,675	0.156
인천	16	18	17	23	30	39	35	47,004	0.074
광주	10	12	12	15	32	37	47	23,412	0.201
대전	21	23	19	18	25	62	59	23,497	0.251
울산	12	20	20	19	26	25	34	17,779	0.191
세종	3	5	6	10	13	13	12	10,366	0.116
경기	52	62	62	72	91	99	134	236,010	0.057
강원	12	12	12	13	23	30	35	23,072	0.152
충북	13	14	15	17	31	41	40	24,338	0.164
충남	11	16	18	17	23	28	38	33,485	0.113
전북	18	18	18	19	25	24	25	22,798	0.110
전남	17	19	20	26	39	56	58	25,504	0.227
경북	19	20	17	20	27	46	62	35,920	0.173
경남	16	17	13	18	40	52	46	46,123	0.100
제주	15	19	15	14	15	25	30	11,481	0.261
계	382	437	437	490	681	857	946	128,869	0.734

주: 2022.12.31. 기준 자료임.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23). 내부자료

2)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 (2023. 6. 19. 인출)

한편 부모급여의 도입 등에 따라 가정내 양육가구의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의 충족이 보다 강조됨에 따라 시간제보육시설은 2023년에는 1,034개반, 2024년에는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3d: 12).

나. 영유아 돌봄 인프라: 어린이집

1)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황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은 ‘보육통계’에서 17개 시·도별로 보고된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어린이집 대비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보육현원 대비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수의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비율은 전국 평균이 24.3%였고, 시·도별로 8.0~54.3%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제주 54.3%, 서울 42.4%, 대전 31.6%로 높은 편이었고, 세종은 8.0%로 가장 낮았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전체 현원 대비 야간연장 이용 아동 비율은 전국 6.2%였고, 시·도별로 1.9~10.0%로 차이가 있었다. 전북 10.0%, 경남 8.8%, 경기 8.7%, 충남 8.4%, 경북 7.9%, 충북/대전 7.6%로 높았고, 세종 1.9%, 제주 2.3%, 서울 3.3%로 낮았다. 서울과 제주는 운영 비율은 높았으나 이용 비율은 낮았고, 세종시는 운영 비율과 이용 비율 모두 낮았다.

〈표 II-3-3〉 전국 시·도별 야간연장보육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

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			야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현황		
	야간연장 어린이집수	전체 어린이집수	운영 비율 (%)	야간연장 어린이집 전체 현원	야간연장 현원	이용 비율 (%)
서울	1,998	4,712	42.4	85,735	2,828	3.3
부산	309	1,547	20.0	11,564	518	4.5
대구	212	1,139	18.6	8,319	491	5.9
인천	295	1,697	17.4	13,288	851	6.4
광주	274	940	29.2	9,215	612	6.6
대전	320	1,013	31.6	12,161	923	7.6
울산	98	656	14.9	3,901	172	4.4
세종	26	327	8.0	2,596	48	1.9
경기	1,854	9,438	19.6	76,638	6,677	8.7
강원	110	906	12.1	5,340	332	6.2
충북	235	972	24.2	10,147	772	7.6
충남	255	1,516	16.8	8,622	725	8.4
전북	305	1,024	29.8	10,183	1,021	10.0
전남	241	999	24.1	10,251	609	5.9
경북	237	1,463	16.2	10,084	794	7.9
경남	485	2,123	22.9	15,993	1,409	8.8
제주	245	451	54.3	12,551	289	2.3
계	7,499	30,923	24.3	306,588	19,071	6.2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2) 기본보육을 이용하면서 야간연장보육을 할 수도 있으므로 현원과 야간연장 현원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p. 160-162.

2) 휴일보육 어린이집 현황

전체 어린이집 중 휴일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율은 0.9%로 매우 적었고, 시·도별로는 0~16.4%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제주가 16.4%로 다른 시·도(0~5.0%)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대구, 인천, 세종시에는 운영하는 곳이 없었다.

휴일어린이집의 전체 현원 대비 휴일보육 이용아동 비율도 전국 0.8%로 매우 낮았고, 시·도별로는 0~11.5%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11.5%로 다른 시도(0~6.2%)에 비하여 높았다. 6개 시·도(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경남)에서는 휴일보육을 운영하나 이용아동이 없었다. 제주는 운영 비율은 높았으나 이용률은 0.3%로 낮은 반면, 충남 지역의 운영 비율은 0.3%로 낮았으나 이용률은 높았다.

〈표 II-3-4〉 전국 시·도별 휴일보육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

시도	휴일어린이집 운영 현황				휴일보육 이용 아동 현황		
	휴일보육 어린이집수	전체 어린이집수	운영 비율 (%)	휴일 반수	휴일보육 어린이집 전체 현원	휴일보육 현원	이용 비율 (%)
서울	55	4,712	1.2	14	2,927	11	0.4
부산	4	1,547	0.3	4	330	5	1.5
대구	0	1,139	0.0	0	-	-	-
인천	0	1,697	0.0	0	-	-	-
광주	4	940	0.4	0	177	0	0.0
대전	2	1,013	0.2	0	142	0	0.0
울산	33	656	5.0	0	1,761	0	0.0
세종	0	327	0.0	0	-	-	-
경기	57	9,438	0.6	15	3,095	25	0.8
강원	7	906	0.8	7	451	28	6.2
충북	2	972	0.2	0	84	0	0.0
충남	5	1,516	0.3	6	174	20	11.5
전북	4	1,024	0.4	8	307	2	0.7
전남	11	999	1.1	6	687	10	1.5
경북	3	1,463	0.2	0	288	0	0.0
경남	18	2,123	0.9	0	907	0	0.0
제주	74	451	16.4	15	3,336	10	0.3
계	279	30,923	0.9	75	14,666	111	0.8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2) 기본보육을 이용하면서 휴일보육을 할 수도 있으므로 현원과 휴일 현원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p.163~165.

3) 24시간보육 어린이집 현황

24시간보육 어린이집은 전국에 0.4%로 보고되어 매우 적었고, 시·도별로는 0~1.1%로 유사했다. 울산이 1.1%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세종은 운영하는 곳이 없었다. 24시간보육 어린이집의 전체 현원 대비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비율은 전국 6.9%였고, 시·도별로는 0~12.7%로 차이가 있었다. 대구와 충북이 각각 13.0%, 12.7%로 높은 편이었고, 충남 2.3%, 경북 2.4%, 부산 3.4%, 제주 3.9%로 낮았다. 강원과 전북은 이용아동이 없었다.

〈표 II-3-5〉 전국 시·도별 24시간보육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

시도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현황		
	24시간보육 어린이집수	전체 어린이집수	운영 비율 (%)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전체 현원	24시간보육 현원	이용 비율 (%)
서울	23	4,712	0.5	797	59	7.4
부산	10	1,547	0.7	412	14	3.4
대구	3	1,139	0.3	100	13	13.0
인천	13	1,697	0.8	555	50	9.0
광주	7	940	0.7	305	23	7.5
대전	2	1,013	0.2	99	5	5.1
울산	7	656	1.1	270	14	5.2
세종	0	327	0.0	-	-	-
경기	34	9,438	0.4	1,301	111	8.5
강원	1	906	0.1	95	0	0.0
충북	5	972	0.5	236	30	12.7
충남	3	1,516	0.2	177	4	2.3
전북	3	1,024	0.3	153	0	0.0
전남	4	999	0.4	204	11	5.4
경북	4	1,463	0.3	169	4	2.4
경남	14	2,123	0.7	380	26	6.8
제주	2	451	0.4	103	4	3.9
계	135	30,923	0.4	5,356	368	6.9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p. 166-168.

다. 영유아 및 초등자녀 방과후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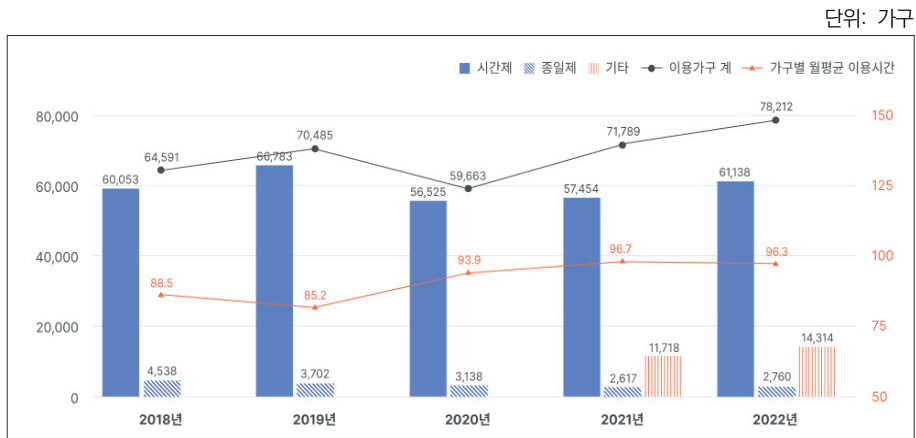
1)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서비스

가) 이용 아동수 현황

2018~2022년 동안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시간제, 종일제, 기타),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전체 이용 가구 수는 2020년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가구별 월 이용시간은 2018년 88.5시간에서 2019년 85.2시간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93.9시간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_사업 현황_이용자 현황, <https://care.idolbom.go.kr/dolbomi/CMM/commonGoFront.do>, 2023. 4. 12.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가구는 2020년까지는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구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이었으며 2021년 이후 일시연계/기관연계/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이 추가되면서 기타 유형이 약 16~18%를 차지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_사업 현황_이용자 현황, <https://care.idolbom.go.kr/dolbomi/CMM/commonGoFront.do>, 2023. 4. 12. 인출).

[그림 II-3-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8~2022)



주: 기타에는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이 포함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_사업 현황(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2023. 4. 12. 인출)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월별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은 연말로 갈수록 신청가구가 증가하고 연간 전체 신청가구 수는 166,167가구로 2021년 99,749가구에 비하여 60% 증가하였다. 신청가구 대비 연계가구 비율은 전체 24.5%로 2021년에 20.0%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월별로는 23.6~31.0%로 1~5월의 연계 비율이 25.4~31.0%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소득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가구 중 ‘가’형이 43.0%로 가장 많았고, ‘라’형 28.8%, ‘나’형 23.1%, ‘다’형 5.1% 순이었다. 2021년에 비하여 ‘라’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 연계 비율은 ‘가’형 33.2%, ‘나’형 23.3%, ‘다’형 21.9%, ‘라’형 12.9%순이었고 2021년 대비 모든 유형에서 상승하였다.

〈표 II-3-6〉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21-2022)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단위: 명, %

구분	신청가구(취소 포함)				연계가구				신청대비 연계가구 비율			
	계	가형	나형	다형	리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리형	계	가형
1월	4,053	2,098	892	208	855	1,258	805	241	47	165	31.0	38.4
2월	6,465	3,026	1,486	330	1,623	1,773	1,093	364	76	240	27.4	36.1
3월	8,423	3,830	1,937	420	2,236	2,197	1,342	447	98	310	26.1	35.0
4월	10,061	4,528	2,334	503	2,696	2,598	1,561	544	114	379	25.8	34.5
5월	11,551	5,125	2,652	580	3,194	2,932	1,748	618	130	436	25.4	34.1
6월	13,172	5,760	3,039	663	3,710	3,236	1,919	689	143	485	24.6	33.3
7월	14,812	6,363	3,458	754	4,237	3,561	2,094	778	157	532	24.0	32.9
8월	16,498	7,017	3,822	842	4,817	3,921	2,286	860	180	595	23.8	32.6
9월	18,023	7,540	4,156	923	5,404	4,273	2,454	958	197	664	23.7	32.5
10월	19,600	8,206	4,525	993	5,876	4,663	2,657	1,054	217	735	23.8	32.4
11월	20,995	8,701	4,890	1,059	6,345	4,971	2,799	1,150	233	789	23.7	32.2
12월	22,514	9,228	5,245	1,149	6,892	5,307	2,964	1,244	254	845	23.6	32.1
2022년(계)	166,167 (100.0)	71,422 (43.0)	38,436 (23.1)	8,424 (5.1)	47,885 (28.8)	40,690 (100.0)	23,722 (58.3)	8,947 (22.0)	1,846 (4.5)	6,175 (15.2)	24.5	33.2
2021년(계)	99,749 (100.0)	40,094 (40.2)	21,860 (21.9)	4,664 (4.7)	33,131 (33.2)	19,902 (100.0)	10,953 (55.0)	4,564 (22.9)	875 (4.4)	3,510 (17.6)	20.0	27.3
											-	-
											-	-

자료: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

2021~2022년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이용아동이 24,123명으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가 비율은 월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여성가족부, 2023e).

소득기준 유형별로는 2022년에는 ‘가’형 48.3%, ‘나’형 26.0%, ‘라’형 19.4%, ‘다’형 6.3% 순이었고, 2021년과 비교하여 ‘가’형과 ‘나’형의 이용 비중은 증가하였고, ‘다’형과 ‘라’형은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23e).

〈표 II-3-7〉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21-2022)

단위: %, 명

구분	전년 동기대비 증가비율 (A-B)/B	2022년					2021년				
		계(A)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B)	가형	나형	다형	라형
1월	443.5	500	220	136	33	111	92	43	25	7	17
2월	261.5	694	315	194	42	143	192	89	48	18	37
3월	85.1	796	355	221	54	166	430	192	104	36	98
4월	33.3	896	410	248	58	180	672	303	161	50	158
5월	31.0	1,085	504	304	73	204	828	370	196	58	204
6월	31.5	1,329	629	356	94	250	1,011	438	235	77	261
7월	53.4	1,697	816	445	113	323	1,106	477	260	82	287
8월	104.2	2,440	1,171	628	154	487	1,195	519	280	90	306
9월	129.7	3,120	1,522	802	194	602	1,358	590	307	113	348
10월	101.2	3,547	1,744	901	215	687	1,763	787	393	143	440
11월	81.6	3,849	1,902	974	235	738	2,119	931	473	166	549
12월	82.6	4,170	2,060	1,056	261	793	2,284	1,011	506	179	588

주: 월별 누적 수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

나) 아이돌보미 현황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간 아이돌보미 수는 2020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로 2018년 23,675명 대비 12.7% 증가하여 2022년에는 26,675명이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2018년 대비 2022년 모두 증가하였다. 2022년 0~8세 아동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아동 1명당 0.86명이고 시·도별로는 0.74~1.49명으로 2배 차이가 있었다. 경북과 강원이 각각 1.49명, 1.36명으로 높고, 인천과 제주는 0.74명으로 낮은 공급률을 보였다.

〈표 II-3-8〉 전국 시·도별 아이돌보미 규모 추이(2018~2022)

단위: 명, %

시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년 0-8세 주민등록 인구수	공급 수준 (명)
서울	3,531	3,737	3,616	3,891	3,946	478,497	0.82
부산	1,957	1,879	1,887	1,959	2,073	180,509	1.15
대구	1,087	1,150	1,124	1,163	1,257	137,727	0.91
인천	1,182	1,246	1,227	1,296	1,359	183,135	0.74
광주	913	1,077	957	1,040	1,100	93,226	1.18
대전	615	608	596	628	682	89,395	0.76
울산	925	908	849	901	937	74,172	1.26
세종	272	324	329	377	335	40,515	0.83
경기	4,848	5,121	5,065	5,508	5,521	913,600	0.60
강원	1,014	1,081	1,054	1,094	1,147	84,312	1.36
충북	743	717	718	736	739	95,693	0.77
충남	1,033	1,010	1,046	1,046	1,103	133,209	0.83
전북	1,193	1,124	1,096	1,123	1,154	95,546	1.21
전남	1,025	1,067	1,074	1,159	1,167	100,014	1.17
경북	1,660	1,811	1,946	2,044	2,148	143,959	1.49
경남	1,384	1,481	1,548	1,597	1,654	199,585	0.83
제주	293	336	337	355	353	47,743	0.74
계	23,675	24,677	24,469	25,917	26,675	3,090,837	0.86

주: 공급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만 0~8세 이하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자료: 1)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

2)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2 (2023. 6. 13. 인출)

2) 기관돌봄 인프라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수와 이용인원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센터 수는 13개~815개, 이용인원은 357명~25,314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경기, 서울, 전남이 센터는 400개 이상, 이용인원은 10,000명 이상으로 많았다. 센터당 이용인원은 전국 평균 28.7명이었고 17개 시·도별로는 24.1~31.1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3-9〉 전국 시·도별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이용아동수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시도	센터수	이용인원	센터당 이용인원
서울	467	14,283	30.6
부산	209	5,587	26.7
대구	203	5,692	28.0
인천	179	4,828	27.0
광주	310	8,359	27.0
대전	141	4,042	28.7
울산	57	1,376	24.1
세종	13	357	27.5
경기	815	25,314	31.1
강원	175	5,017	28.7
충북	182	5,212	28.6
충남	238	6,969	29.3
전북	302	8,278	27.4
전남	411	11,553	28.1
경북	271	7,592	28.0
경남	270	7,549	28.0
제주	68	1,922	28.3
계	4,311	123,930	28.7

주: 2022년 6월 기준 현황임.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_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2017~2021년 기간 동안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수와 이용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센터수와 신고정원은 감소하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였다. 이용아동 수는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20년까지 다시 감소하고 2021년 다시 증가하였고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 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2021년 26.3명이었다.

〈표 II-3-10〉 지역아동센터 수와 이용아동수 추이(2017~2021)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센터수(개소)		4,189	4,138	4,081	4,008	4,057
신고정원(명)		120,883	118,192	116,773	114,668	115,645
이용아동수 (명)	전체	108,578	109,610	108,971	106,510	106,746
	센터당 평균	25.9	26.5	26.7	26.6	26.3

주: 2021년 12월말 기준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 41.

2017~202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약 78%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그 중 초등저학년의 비율은 2017년 38.7%에서 2019년 40.5%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에는 36.0%로 보고되었다. 한편 미취학 영유아의 비율은 매우 적으나 2017년 1.0%에서 2019년 2.0%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8%로 감소하다가 2021년 1.9%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3-11〉 지역아동센터 학년별 이용아동 수 추이(2017~2021)

단위: 개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108,578	109,610	108,971	106,510	106,746
미취학		1,111 (1.0)	1,798 (1.6)	2,146 (2.0)	1,900 (1.8)	2,067 (1.9)
초등 학생	소계	84,706	87,501	87,775	83,691	82,731
	저학년	41,970 (38.7)	43,438 (39.6)	44,094 (40.5)	40,199 (37.7)	38,471 (36.0)
	고학년	42,736	44,063	43,681	43,492	44,260
중학생		17,563	16,321	15,531	17,207	18,064
고등학생		4,185	3,902	3,443	3,578	3,800
학교밖		117	88	76	134	84
기타		896	-	-	-	-

주: 1) 2021년 12월말 기준 현황임.

2) 분석 불가능 시설 238개소 제외됨.

3) (비율)은 전체 이용아동수 대비 미취학아동과 저학년아동의 비율을 산출함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 42.

나) 다함께돌봄센터

2023년 5월 기준 전국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7개 시·도별로는 6개소~245개소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 세종, 제주는 6~7개소로 매우 적었고,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41개소, 245개소로 월등히 많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22~55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2022년 6월 기준 이용 인원은 총 19,018명이었고, 40명~5,799명으로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40명으로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대구와 세종이 적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이용 인원은 각각 5,799명, 5,157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표 II-3-12〉 전국 시·도별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022.6/2023.5)

단위: 개소

시도	센터 수(2023. 5)	이용인원(2022. 6)
서울	241	5,799
부산	54	977
대구	7	99
인천	27	533
광주	22	419
대전	23	338
울산	27	485
세종	6	140
경기	245	5,157
강원	34	851
충북	33	536
충남	42	772
전북	45	871
전남	30	608
경북	55	946
경남	26	447
제주	6	40
계	923	19,018

주: 센터수는 2023년 5월 기준이고, 이용 인원은 2022년 6월 기준 현황임.

자료: 1) 이용인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_다함께돌봄센터 현황. <https://dadol.or.kr/board/center> (2023. 5. 6. 인출)

2) 센터수: 교육부. 홈페이지_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_다함께돌봄센터,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3) 공동육아나눔터

2023년 5월 기준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에 총 37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7개 시·도별로는 4개~45개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 4개, 대전 6개, 광주와 울산 9개씩으로 적었고, 인천 45개, 경기 44개, 서울과 경남 34개, 충남 33개로 많았다.

〈표 II-3-13〉 전국 시·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2023.5)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센터 수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2), 강서구, 관악구(2), 구로구(2),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4), 동대문구(2),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2),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2),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2), 종로구, 중구, 중랑구	34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건가센터), 부산북구(3), 부산서구, 사상구, 사하구(6),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15
대구	달서구(3), 달성군(2), 대구남구(2), 대구동구, 대구북구(2), 대구서구, 수성구(4), 대구중구	16
인천	강화군, 계양구(5), 남동구(14), 동구(2), 미추홀구(8), 부평구(2), 서구(5), 연수구(3), 중구(5)	45
광주	광산구(2), 광주남구(2), 광주동구(2), 광주북구(2), 광주서구	9
대전	유성구(2), 대전동구, 대전서구, 대전중구, 대덕구	6
울산	울산남구(2), 울산동구, 울산북구(4), 울산중구, 울주군	9
세종	세종시(15)	15
경기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2), 김포시, 남양주시, 안양시, 부천시(2), 성남시(2), 수원시, 시흥시(8), 안성시, 양주시(2), 양평군, 여주시(2), 용인시, 의왕시(2),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2), 하남시(3), 화성시(7)	44
강원	강릉시(3), 동해시(2), 삼척시, 속초시(2), 영월군, 원주시(3), 정선군(2),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2)	19
충북	괴산군, 음성군(2), 제천시(2), 증평군, 영동군, 진천군, 청주시(5), 충주시(6)	19
충남	공주시(3), 금산군, 당진시(7), 보령시, 부여군(2), 서산시(5), 아산시(2), 천안시(7), 태안군, 홍성군(4)	33
전북	고창군, 군산시(2), 김제시, 남원시(5), 무주군, 완주군(2), 익산시(2), 장수군, 전주시(4), 정읍시	20
전남	강진군, 고흥군(2), 광양시(10), 나주시(2),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24
경북	경산시(2), 경주시(7), 구미시(5),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2), 안동시(2),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2),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포항시(2)	30
경남	거제시(3),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2), 김해시(3), 남해군(2), 밀양시(2), 사천시(2), 산청군, 양산시(2), 의령군, 진주시(2), 창녕군(2), 창원시(5), 통영시, 하동군(2), 함안군(2)	34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3)	4
계	-	376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_가족서비스 지원_돌봄서비스 지역기반 강화_공동육아나눔터, <https://www.kihf.or.kr/web/lay1/S1T88C158/contents.do> (2023. 6. 7. 인출).

4) 종합

2022년과 2023년 기준 영유아와 초등자녀 대상 긴급돌봄 인프라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0~8세 아동 1인당 0.011개소이었으며, 17대 시·도별로는 전남 0.026개소, 광주 0.024개소, 전북이 0.021개소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는 0.008개소로 낮은 편이었다.

〈표 II-3-14〉 전국 시·도별 영유아+초등자녀 긴급돌봄 인프라 공급 현황(2022/2023)

단위: 개소, 명

시도	돌봄 인프라 공급 수준				0~8세 주민등록인구수	아동수 대비 공급(개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계		
서울	467	241	34	742	9,428,372	0.008
부산	209	54	15	278	3,317,812	0.008
대구	203	7	16	226	2,363,691	0.010
인천	179	27	45	251	2,967,314	0.008
광주	310	22	9	341	1,431,050	0.024
대전	141	23	6	170	1,446,072	0.012
울산	57	27	9	93	1,110,663	0.008
세종	13	6	15	34	383,591	0.009
경기	815	245	44	1,104	13,589,432	0.008
강원	175	34	19	228	1,536,498	0.015
충북	182	33	19	234	1,595,058	0.015
충남	238	42	33	313	2,123,037	0.015
전북	302	45	20	367	1,769,607	0.021
전남	411	30	24	465	1,817,697	0.026
경북	271	55	30	356	2,600,492	0.014
경남	270	26	34	330	3,280,493	0.010
제주	68	6	4	78	678,159	0.012
계	4,311	923	376	5,610	51,439,038	0.011

주: 아동수 대비 공급 비율은 각 시도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수를 0~8세 아동 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1) 지역아동센터(2022.6.기준): 교육부 홈페이지_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2) 다함께돌봄센터(2023.5.기준): 교육부 홈페이지_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_다함께돌봄센터,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3) 공동육아나눔터(2023.5.기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_가족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지역기반 강화_공동육아나눔터, <https://www.kihf.or.kr/web/lay1/S1T88C158/contents.do> (2023. 6. 7. 인출).
 4)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3. 6. 13. 인출)

라. 초등자녀 돌봄: 방과후돌봄서비스

1) 초등돌봄교실

2021~2022년 동안의 초등돌봄교실 수와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교실 수는 1.3%, 이용인원은 20.3%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교실 수는 울산만 동일하고 모든 지역에서 0.3~4.2% 증가하였고, 세종 4.2%, 대전 3.6%로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이용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3.2~67.6% 증가하여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강원지역이 67.6%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 41.4%, 경북 40.7%이었다. 한편 전북, 광주, 제주, 충북은 3.2~6.6%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3-15〉 전국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현황(2021~2022)

단위: 개, 명, %

시도	2021년		2022년		증감율	
	교실 수	이용인원	교실 수	이용인원	교실 수	이용인원
서울	2,222	38,260	2,240	45,151	0.8	18.0
부산	675	10,984	694	13,612	2.8	23.9
대구	598	10,061	610	12,065	2.0	19.9
인천	879	12,469	905	17,627	3.0	41.4
광주	302	5,866	307	6,122	1.7	4.4
대전	503	8,137	521	9,775	3.6	20.1
울산	297	5,598	297	6,153	0.0	9.9
세종	214	3,604	223	4,591	4.2	27.4
경기	3,543	55,556	3,564	65,774	0.6	18.4
강원	610	6,950	617	11,647	1.1	67.6
충북	492	8,496	496	9,055	0.8	6.6
충남	767	12,773	772	15,097	0.7	18.2
전북	768	14,093	770	14,539	0.3	3.2
전남	718	12,765	725	14,198	1.0	11.2
경북	921	13,015	932	18,313	1.2	40.7
경남	1,029	18,896	1,055	22,761	2.5	20.5
제주	236	5,253	242	5,588	2.5	6.4
계	14,774	242,776	14,970	292,068	1.3	20.3

주: 2021년과 2022년 모두 4월 30일 기준 현황임.

자료: 1) 2021년: 공공데이터포털_교육부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06335/fileData.do> (2023. 4. 13. 인출)

2) 2022년: 교육부 홈페이지_초·중·고 교육_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653> (2023. 4. 13. 인출)

2) 학교돌봄터

2022년 8월 기준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6개 시·도뿐이었고, 전국 총 74개(개소 예정 포함)가 있었다.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개, 27개로 많았다. 교실 당 이용 인원은 17명~25명이었고, 운영시간은 11시~20시, 12시~20시가 대부분이고, 7시 30분~20시, 13시~19시, 13시~20시, 9시~18시 등 다양하다.

〈표 II-3-16〉 전국 지역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2022.8)

단위: 개, 명, 시

시도	시군구	교실수(개)	이용인원 (명)	교실당 이용인원	운영시간	
					시작	종료
서울	중구	3	75	25	12:00	20:00
		2	50	25	12:00	20:00
		2	50	25	12:00	20:00
		4	100	25	11:00	20:00
		4	100	25	11:00	20:00
		4	100	25	11:00	20:00
		5	125	25	12:00	20:00
		3	75	25	11:00	20:00
부산	부산진구	1	20	20	10:00	19:00
	기장군	3	60	20	7:30	20:00
대전	유성구	3	60	20	11:00	19:00
경기	고양시	3	66	22	10:00	19:00
경기	광주시	3	개소 예정	-	13:00	19:00
경기	부천시	2	40	20	10:00	19:00
경기	성남시	3	60	20	11:00	20:00
		1	개소 예정	-	11:00	20:00
		2	개소 예정	-	13:00	20:00
경기	수원시	3	57	19	10:00	19:00
경기	시흥시	1	20	20	13:00	19:00
		2	35	17.5	10:00	19:00
		2	40	20	10:00	19:00
경기	오산시	1	20	20	9:00	18:00
		1	17	17	9:00	18:00
		1	20	20	9:00	18:00

시도	시군구	교실수(개)	이용인원 (명)	교실당 이용인원	운영시간	
					시작	종료
경기	하남시	3	57	19	13:00	19:00
강원	화천군	6	개소 예정	-	13:00	19:00
충남	논산시	2	40	20	12:00	20:00
		1	19	19	12:00	20:00
충남	홍성군	1	20	20	11:00	20:00
		2	40	20	11:00	20:00
계	-	74	1,366	18.5	-	-

주: 2022년 8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3) 방과후어린이집 현황(방과후전담+방과후통합)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방과후전담과 방과후통합 어린이집 수는 16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0.52%로 매우 적다. 17개 시·도별로는 0~4.7%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가 4.7%, 전북이 2.3%로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 현원 대비 방과후 보육 이용아 현원 비율은 전국 평균 15.4%이었고, 시·도별로는 0~42.1%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서울 42.1%, 경북 23.6%, 대전 17.9%로 높았고 부산과 울산은 이용아동은 없었다.

〈표 II-3-17〉 전국 시·도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현황(방과후전담+방과후통합)(2022)

단위: 개소, 명, %

시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방과후보육 이용 아동 현황		
	방과후보육 어린이집수	전체 어린이집수	운영 비율 (%)	방과후보육 어린이집 전체 현원	방과후보육 현원	이용 비율 (%)
서울	50	4,712	1.06	2,416	1,018	42.14
부산	4	1,547	0.26	153	0	0.00
대구	0	1,139	0.00	-	-	-
인천	13	1,697	0.77	826	30	3.63
광주	8	940	0.85	501	20	3.99
대전	3	1,013	0.30	168	30	17.86
울산	1	656	0.15	61	0	0.00
세종	0	327	0.00	-	-	-

시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방과후보육 이용 아동 현황		
	방과후보육 어린이집수	전체 어린이집수	운영 비율 (%)	방과후보육 어린이집 전체 현원	방과후보육 현원	이용 비율 (%)
경기	6	9,438	0.06	207	21	10.14
강원	4	906	0.44	155	17	10.97
충북	6	972	0.62	292	2	0.68
충남	7	1,516	0.46	265	5	1.89
전북	24	1,024	2.34	1,188	81	6.82
전남	5	999	0.50	237	12	5.06
경북	3	1,463	0.21	89	21	23.60
경남	5	2,123	0.24	445	40	8.99
제주	21	451	4.66	1,530	18	1.18
계	160	30,923	0.52	8,533	1,315	15.41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임.

2) 방과후 현원은 보육시간구분이 '방과후'인 아동 현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p. 157-159.

4) 종합

2022년 6~8세 초등학생 인구수 대비 초등돌봄 인프라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1인당 1.17개로 매우 적었고 17개 시·도별로는 0.79~1.90개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전북 1.90개, 전남 1.85개로 높은 편이었고, 광주 0.79개, 부산 0.91개, 울산 0.92개로 낮은 편이었다.

〈표 II-3-18〉 전국 시·도별 초등방과후돌봄 인프라 공급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

시도	돌봄 인프라 공급 수준				2022년 6~8세 주민등록인구수	2022년 인구수 대비 공급(개)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교실	방과후어린이집	계		
서울	2,240	27	50	2,317	195,790	1.18
부산	694	4	4	702	77,559	0.91
대구	610	-	0	610	59,844	1.02
인천	905	-	13	918	76,231	1.20
광주	307	-	8	315	39,753	0.79
대전	521	3	3	527	37,227	1.42
울산	297	-	1	298	32,315	0.92
세종	223	-	0	223	16,662	1.34

시도	돌봄 인프라 공급 수준				2022년 6~8세 주민등록인구수	2022년 인구수 대비 공급(개)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교실	방과후어린이집	계		
경기	3,564	28	6	3,598	380,104	0.95
강원	617	6	4	627	33,941	1.85
충북	496	-	6	502	39,889	1.26
충남	772	6	7	785	55,999	1.40
전북	770	-	24	794	41,847	1.90
전남	725	-	5	730	41,709	1.75
경북	932	-	3	935	61,082	1.53
경남	1,055	-	5	1,060	88,550	1.20
제주	242	-	21	263	20,547	1.28
계	14,970	74	160	15,204	1,299,049	1.17

주: 아동수 대비 공급 비율은 각 시도의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방과후어린이집 수를 6~8세 아동수로 나눈 값임.
 자료: 1) 초등돌봄교실(2022.4.30.기준): 교육부 홈페이지_초·중·고 교육_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653> (2023. 4. 13. 인출)
 2) 학교돌봄터(2022.8.기준): 교육부 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2023. 4. 13. 인출)
 3) 방과후보육어린이집(2022.12.31.기준):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pp. 157~159.
 4)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3. 6. 13. 인출)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그리고 이들 서비스 유형별 공급 특성을 종합하여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아픈 경우’는 긴급돌봄의 주된 사유라고 파악되므로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픈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가 유일하나, 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외 돌봄 방식에 대한 수요도 예상되므로 긴급 사유와 아동 및 가구특성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돌봄의 어려움 정도가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인다면 비용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원내용을 <표 II-3-19>에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지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만하다.

첫째, 시간제보육은 6~35개월 영아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새벽이나 야간에는 이용하기 힘들고, 평일에도 정원이 충족된 경우는 이용할 수 없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므로 타 서비스의 연계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가구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전하 등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향후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전체 기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소수 이기는 하나, 야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이들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초등자녀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시간도 길어서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단,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우선지원 아동이 명시되어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신속한 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긴급돌봄 아동을 위한 별도의 이용 절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이돌봄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일시연계 방식으로 긴급한 경우 시간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질병감염아동의 경우는 중복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보미 매칭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관련 긴급한 사유,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을 일원화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긴급한 경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청하고 이용료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한다.

여섯째, 이상에서 살펴본 서비스 유형 중에서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이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포괄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공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존의 기관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을 포괄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혼합연령반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I-3-19〉 중앙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연장보육/ 그 밖의 연장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아침돌봄/ 저녁돌봄)	지역이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기반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연계/질병간염)
지원대상	6~35개월 /가정내양육가구	0세~초등저학년, 방과후: 초등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정원의 최대 50% 범위내 가능)	만 3~5세	- 우선: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및 조손 - 일반아동: 50%	- 6~12세, 취학전 아동 가능 - 우선순위 적용 가 능: 맞벌이, 한부 모, 다자녀, 초등 저학년, 장애 정원 일부 일시돌 봄 인원 배정 가능	초등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등	3개월~12세
긴급 사유		연장보육: 취업 외 유산, 부모의 입원 및 간병 등	-	-	+ 일시돌봄 권장 (보호자의 질병, 수술, 출산 등)	정기 (+일시돌봄 추진중)	- 부모의 질병 및 입원 - 부모의 취업준비 - 부모의 군 복무 등 - 모(母)의 출산
신청 및 이용 절차 (온라인)	당일 예약 가능	- 아이사랑포털 : 정보 제공 - 기관에 신청	기관에 신청	시군구청에 신청 및 이용 결정	센터에 신청 및 이용 결정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웹 회원 가입 → 전화로 승인 - 야간 등 PC, 모바일
운영시간 및 이용기간	월 80시간 이내	16:00~19:30 /19:30~7:30 /휴일(토요일 제외) 방과후: 4시간 이상	방과후과정: 교육과정 종료후 4~5시간 (시도별)	주 5일, 8시간 이상 14~20시/12~17시 필수 주말 등 자율	주 5일, 8시간 이상 14~20시/12~17시 표준 공휴일 제외 상시	- 오후돌봄: 17~19시 - 저녁돌봄: 17~22시	주말 및 휴일 가능

구분	시간제보호 서비스	어린이집 (연장보호/ 그 밖의 연장보호)	유치원 (방과후과정/ 아침돌봄/저녁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기반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가정내보호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연계/질병간염)
이용비용 (부모 부담)	시간당 1,000원 /어린이집 이용가구 : 전액 자부담 (4,000원)	아간연장보호 자부담		-	월 10만원 이내 자율 (일시돌봄 지역별)	긴급이용시 해당 지역의 비용 지불	- 주말 및 휴일 이 용 시 할증(50%) - 어린이집(9~16시) /유치원(9~13시) 중복 - 적응기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긴급 및 일시돌봄	정기+간헐적 보호	정기, 맞벌이 가정 우선	정기	정기+일시돌봄		일시 및 긴급돌봄
서비스 연계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시도별	- 돌봄협의체 - 초등돌봄교실 저녁 돌봄 연계	병행 이용 가능	저녁돌봄 미운영 시 타 기관 연계 가능	타 지역 서비스 기관 연계
급간식 제공	부모 협의시 제공 가능	-	-			수익자 부담 집행 가능	-
유관 추진 계획	정규교육반 미충족 정원 시간제보호 운영 추진	-	지역역사회 방과후 연계 확대 추진	-	-	- 17시 이후 일시돌봄 강화 - 교육청 중심 총괄, 협의체 (중앙/지역) 운영 활성화 - 거점형 확산	긴급 및 단시간 이용 수요 대응

주: Ⅱ-2절의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규정 및 추진 현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III

국내외 사례분석

- 01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 02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
- 03 소결

III. 국내외 사례분석

제3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일본 사례와 지방정부 사례를 조사하여 긴급 사유별로 사업내용 및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일본의 긴급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여성취업자 증가 등의 사유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질적 정비가 일찍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저출생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은 보호자로 하여금 기존 방식과는 다른 보육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보육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재 일본의 현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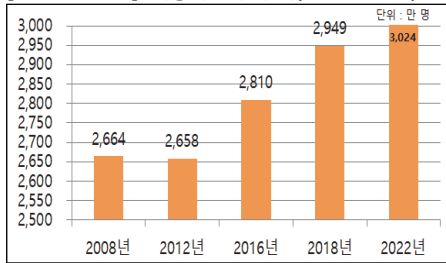
가. 일본 보육의 최근 현황

1) 여성고용률과 맞벌이 가정의 현황

일본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6,723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취업률은 주로 25세~44세의 여성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총무성, 20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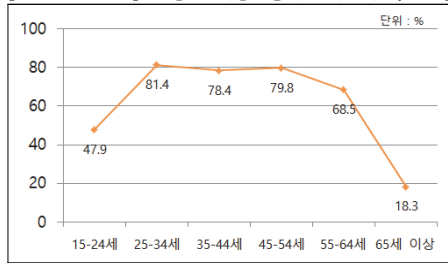
[그림 III-1-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취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취업자의 전체 고용율 72.4%에 비해, 25~34세 81.4%, 35세~44세 78.4%로서(총무성, 2023: 1), 자녀 출산, 양육의 주된 연령층에 있는 여성 10명 중 8명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여성취업자 추이(2008-2012)



자료: 총무성(2023). 노동력 조사(기본집계). 2022년 평균 결과 요약

[그림 III-1-2] 연령별 여성노동자 인구 비율(2022)



자료: 총무성(2023). 노동력 조사(기본집계). 2022년 평균 결과 요약

2) 아동·영유아 양육 신제도 시행 이후의 일본 보육의 현황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0~2세 아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기아동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2년에 아동·영유아 양육관련 3법이 제·개정(「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 제정, 「인정어린이원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정비)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의 변화와 함께 보육시간도 변화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가) 보육시설과 보육시간의 다양화

일본의 법정 보육시설로는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과 지역형 보육사업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III-1-1>과 같다.

유치원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의 4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보호자가 증가함으로써,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연장보육을 대부분의 유치원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시간은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하는 곳도 있다. 조사에 의하면 2021년 4월1일 기준 전체 유치원 수 9,418개 중 88.6%에 해당하는 8,346개(공립 1,854개, 사립 6,492개)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129).

반면 보육소는 원칙적으로 보육시간은 8시간, 개소 시간은 11시간 이다. 2015년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 시행 이전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을 연장보육

7) 정부는 11시간 이상을 연장보육으로 간주하고, 국고보조를 하였으나, 보육소의 설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으로 대신하였으나,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의 시행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이 월 120시간 미만이면 8시간(단시간 보육), 120시간 이상의 경우 11시간(장시간 보육)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6M60000002044_20230916_505M60000002067, 2023. 11. 7.인출). 1일 보육시간은 시설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아침 7시 조조보육을 시작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후 8시 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20년 10월 1일 기준 22,704개 중 81.5%에 해당하는 18,497개 보육소가 11시간 이상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4,728개의 보육소는 12시간 이상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308).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화 시설로서 3~5세의 모든 아동에게 4시간의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아동에게는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8시간, 11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소와 동일하게 아침 7시 조조보육을 시작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8시까지 운영되는 곳도 있다.

지역형 보육사업의 종류로는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A, B, C형과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이 있다. 보육소와 동일하게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8시간, 11시간 보육을 실시한다. 법정보육시설의 종류 및 성격은 다음 <표 III-1-1>과 같다(문부과학성, 2022;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표 III-1-1> 일본의 법정보육시설 종류 및 성격

구분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사업
자격 및 연령	3~5세 모든 유아	가정보육 불가능 0~5세	가정보육 불가능 0~2세, 3~5세 모든 유아	가정보육 불가능 0~2세
보육시간· 보육일수	4시간, 연장보육, 연간 39주 이상	8시간, 11시간 ※ 연간 대략 300일	교육: 4시간, 교육+보육: 8시간, 11시간 ※ 연간 대략 300일	8시간, 11시간 ※ 연간 대략 300일
시설 수(개소)	9,111	23,899	9,220	7,474

지고 있으므로, 8시간 이상보육에 대해 지방단독보조를 대부분 실시함.

구분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사업
입소아동수	923,295명	1,960,833명	1,108,180명	92,208명
취학전 아동수	5,368,000명			

- 주: 1) 인정어린이원: 유보연계,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포함됨.
 2) 지역형보육사업: 가정정보육, 소규모 보육 A, B, C형, 거택방문형 보육 포함됨.
 3) 취학전 아동수 합계는 2021년 기준임

자료: 문부과학성(2022)학교 기본조사,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22)토대로 필자 작성

이외에도 다음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63개의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230,046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다(후생노동성, 2021a).

<표 III-1-2> 일본의 인가 외 보육시설 수와 이용아동수(2021)

구분	총수	베이비 호텔	사업소내 보육사업 (인가 외)	거택방문형 (인가외)	기타 인가 외
시설 수(개)	20,263	1,115	8,426	6,687	4,035
입소 아동수(명)	230,046	14,417	115,516	6,832	93,281

자료: 후생노동성(2021a). 인가와 보육시설 현황(認可外保育施設の現況取りまとめ)

이 중, 베이비 호텔은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 심야, 숙박, 24시간이 전체의 56.2%로 야간이용자가 과반을 초과하고 있다. 즉, 인가보육소를 통해 야간을 포함한 심야 보육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상당수가 베이비호텔을 이용하고 있다.

<표 III-1-3> 일본의 베이비호텔 운영시간

구분	24시간	숙박	심야	야간	주간	계
시설수 (비율)	212 (19.0%)	92 (8.3%)	73 (6.5%)	250 (22.4%)	488 (43.8%)	1,115

자료: 후생노동성(2021a). 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認可外保育施設の現況取りまとめ)

나)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무상보육료 정책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3~5세의 모든 유아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0~2세 아동이며, 법정보육시설인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보육사업 뿐만 아니라, 베이비호텔 등의 인가 외 보육시설, 일시보육·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질병보육 등의 지

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도 무상보육의 대상이다(내각부 홈페이지_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 대하여,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usyoka/about/index.html>, 2023. 6. 2. 인출).

다) 지역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실시

일본의 보육정책은 유치원과 보육소를 이용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시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저 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보육사업, 연장보육, 방과 후 아동클럽, 영아가정방문사업, 지역 영유아 양육거점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2년「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을 제정하여, 13종류의 지역 아동·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 중 일부는 다음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의 질병,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 등 긴급돌봄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역 아동·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의 재원은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 제65조~68조의 3에 의거하여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교부세로 충당 된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65>, 2023. 6. 3. 인출).

<표 III-1-4> 일본의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연장보육사업	보육인정을 받은 아동에게 통상 이용일 및 이용시간 이외의 일, 시간에 인정 어린이원, 보육소 등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
방과후 아동건전 육성사업	근로 등으로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수업 후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아동관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생활의 장을 부여 함으로서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보호자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정양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아동에게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필요한 양육과 보호를 실시하는 사업(쇼트스테이 사업: 단기 입소생활 지원사업 및 야간 양호 등 사업)
일시보육사업	일시적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로 주간에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소, 지역 자녀양육 거점, 기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호를 하는 사업
질병아동보육사업	질병에 걸린 아동에게 보육소, 병원 등의 부설 전용 공간에서 간호사 등이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

사업명	내용
자녀양육원조활동 지원사업 (패밀리서포터 센터 사업)	영유아, 초등학생 아동이 있는 보호자를 회원으로 하여, 보육을 받고 싶은 사람과 도움주기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상호원조 활동에 관한 연락, 조정을 하는 사업

자료: 아동·자녀양육신제도 실시에 대하여(2022).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令和4年7月).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outline/pdf/setsumeip2.pdf> (인출일자: 2023. 4. 25).

나. 일본의 긴급돌봄 관련 보육지원 현황

일본의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근로가정의 근무시간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가정적 보육사업 등 지역형 보육사업은 조조보육, 11시간 보육, 연장보육의 형태로 12시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일도 운영된다. 유치원은 전업주부 가정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즉, 야근, 새벽, 주말근로 등의 긴급보육 상황은 보육소를 비롯한 보육시설의 11시간 보육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로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야간보육, 연장보육 등의 지역 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과 함께 공적 대응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비호텔 등의 인가 외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1)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학동보육, 방과후 아동클럽)

학동보육, 방과후 아동클럽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1950년 이후 실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영유아는 보육소의 연장보육 등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에 귀가하는 저학년 아동의 보육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50년부터 전국각지에서 학동보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의 합계출생율 1.57쇼크를 계기로 다양한 보육 대책이 논의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학동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후생노동성, 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基本的方向について, <https://www.mhlw.go.jp/bu>

nya/kodomo/angelplan.html, 2023. 11. 7. 인출). 그리고 1991년의 엔젤플랜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에 따라 방과후 아동클럽 9,000개소의 준비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 2016: 85), 2022년 현재는 26,683개의 시설에서 1,392,15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2: 1).

정부는 학동보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조금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1997년 「아동복지법」을 이하 <표 III-1-5>와 같이 개정하여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법제화 하였다.

<표 III-1-5> 일본의 방과후 돌봄의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의2 제6항

「아동복지법」
제6조2 제6항: 이 사업에서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란 초등학교 취학 약10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노동 등으로 주간에 가정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 수업종료 후 아동후생시설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소를 주어 건전육성을 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4조 7: 시정촌 사회복지법인기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제49조: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직원 및 그 외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명령에서 규정한다

자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164>. (2023. 6. 3. 인출)

그리고 2012년 제정된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에서 학동보육을 방과후 아동건전 육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였으며, 만 10세 까지의 이용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등학생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子ども・子育て支援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65>, 2023. 6. 3. 인출).

<표 III-1-6> 일본의 방과후돌봄 법적 근거: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59조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59조: 시정촌은 아동·영유아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정촌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⑤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보호자가 근로 등을 이유로 주간에 가정에 없어 초등학교 등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수업종료 후에 초등학교 여유교실, 아동관 등을 통해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자료: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65>. (2023. 6. 3. 인출)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시행 이후, 학동보육 이용 아동수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은 10만 명 정도의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2014년 933,535명, 2015년 1,017,429명, 2018년 1,211,522 명, 2021년 1,307,699 명의 아동이 이용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174). 그러나 일본의 여성취업률의 증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학동보육은 아직 전국에 충분히 설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학동보육이용아동 연령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4년에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아동 1명당 면적 기준(1.65평방미터) 및 개소 일수(250일 이상), 아동지도원 2명 이상 배치 등을 명문화 하였다. 학동보육 예산은 현재 내각부로부터 “지역 아동자녀양육지원교부금”의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으로 시정촌으로 교부되며(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176),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 65조 및 제67조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3분의 1 씩 부담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2022)에 의하면, 2022년 현재 방과 후 아동클럽은 전국에 26,68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립주체를 살펴보면, 공립 공영28%, 공립 민영 49%, 민설 민영이 23%로 공립이 77%이다. 전국 1,741개 시정촌 중 1,627개(93.5%)의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18,713개의 초등학교 구역 중, 16,651개(89%) 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설치 장소는 학교 여유교실 28%, 학교부지 내 전용시설 25%, 공적시설13%, 아동관 9% 등으로 대부분 공적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683개소 중, 16,526개소(62%)는 연간개소일 250일을 초과하여 280일 이상 운영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2).

평일의 개소시간은 오후 1시~2시 사이가 10,683개소(40%)로 가장 많으며, 종료시간은 14,174개소(53.1%)가 오후 6시 30분~7시로 확인된다. 오후 7시 이후 종료하는 방과 후 아동클럽은 2,042개소(7.2%)였다(후생노동성, 2022).

오후 6시 30분 이후 종료하는 방과 후 아동클럽은 학교 등교기간 중 16,216개소(60.6%), 방학 중 15,571개소(58.9%)였다. 대부분의 방과 후 아동클럽은 토요일(23,845개소, 89.4%)과 여름방학 등 장기휴업(26,015개소, 97.5%)에도 운영되

고 있다(후생노동성 2022: 12-14). 서비스 이용료는 월 4,000엔에서 6,000엔이 7,093개소(27.5%)로 가장 많으며 2,000엔에서 8,000엔 범위에서 대부분(66.3%)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후생노동성 2022: 27). 방과후 아동클럽을 이용하고 싶으나 정원 부족으로 대기 중인 아동은 15,180명이고, 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아동은 7,540명으로 나타난다(후생노동성, 2022: 9).

2) 일시보육

일시보육은 전업주부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사고, 질병,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상의 돌발 상황, 파트타임 근로, 취미생활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육하는 형태로서 보육소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시간제보육과 유사하다. 일시보육의 시행 초기에는 운영 중인 보육소가 적었으나,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엔젤플랜(1994) 및 신엔젤플랜(1999)을 시행하여 일시보육시설을 확충해 왔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www1/topics/syousika/tp0816-3_18.html, 2023. 11. 17. 인출). 그리고 1996년에는 보호자의 육아 피로도 일시보육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15: 133), 일시보육 시설 수는 2004년에는 5,000개소로 확충되었다(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 <https://www.mhlw.go.jp/bunya/kodomo/jisedai22/pdf/data.pdf>, 2023. 11. 7. 인출).

2008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법제화 함으로서 보육소의 특별보육사업에서 보육사업과 동물 사업으로 배치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09: 94). 그 후, 일시보육은 2012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이 제정됨으로서 지역 아동·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의 한 종류가 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이하 <표 III-1-7>에서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실시되며, 연간 이용아동 수는 3,322,256명으로 나타난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309).

〈표 III-1-7〉 일본의 일시보육시설 종류

구분	대상 아동	실시 장소	실시 요건	개소 수 (2020년)
일반형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미이용 아동	보육소,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 또는 역 주변 등 편의성이 높은 장소	① 시설 및 설비 기준 - 아동복지시설 설비 및 운영 기준의 보육소 기준 준수 ② 인력 배치 기준 - 영유아의 연령 및 인원수에 따른 보육종사자 배치하고 이 들 중 보육사 등을 1/2 배치 - 보육사 이외 보육종사자는 연수 수료자. - 보육종사자를 2명 이하배치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육 소 등에서 운영되므로 보육 소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명도 가능 〈일반형〉 평균 1일 이용아동수가 3명 이하의 경우에는 가정적 보육 자를 보육사로 인정 가능 〈유치원형〉 일정기간 보육사 배치 경우, 보육사 등 이외의 교육·보육 종사자자격에 대한 완화 조치 있음	9,223 개소
유치원형1	유치원에 재원 중인 3세 이상 유아로, 교 육시간 전후, 장기휴 업일 등으로 유치원 에서 일시보호를 받 는 경우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7,629 개소
유치원형2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2세 아동	유치원 (영유아양육지원법 전환 유치원, 사학 조성 유치원)		129 개소
여유 활용형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미이용 아동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가정적보육사업, 소규모보육사업, 사업소내 보육사업소가 정원 미달인 경우		659 개소
거택 방문형	- 장애, 질병 정도로 보아 집단보육이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된 사람 - 한부모 가정 보호 자의 일시적 심야 및 야간근로 - 도서지역 등, 보호자 의 일시적 근로	이용아동 자택	연수 수료 보육사, 가정적보 육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 로 인정된 사람. 단 가정적 보육자 1명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는 1명	1 개소

자료: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22). p. 167.

위의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형 및 여유헌용형은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형태이며, 유치원형 1은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이 보호자의 파트타임 근로, 질병, 취미활동 등의 사유로 일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유치원형 2는 보육소 부족 등의 이유로 보육소 이용이 불가능하여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2세 아동 보육을 유치원에서

일시보육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이며, 거택방문형은 아동 및 보호자,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집단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의 종류이다. 거택 방문형 이외의 모든 일시보육시설의 보육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사업 등의 운영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167).

한편 일시보육의 실시 내용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동경도의 경우는 “보호자의 출산, 질병, 관혼상제, 취미생활, 쇼핑 뿐만 아니라 육아 피로 등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일 2,220엔, 월 지불액은 44,000엔으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동경도 홈페이지_일시보육사업,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hoiku/ichijiazukari_teikiriyohoiku.html, 2023. 5. 23. 인출).

요코하마시 역시 이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생후 57일부터 취학 전 영유아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시간 당 300엔이고,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요코하마시 홈페이지_영유아 일시보육,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odate-kyoiku/kosodateshien/nyuyoji-ichiji/nyuyoji-ichiji.files/0022_20230407.pdf, 2023. 5. 23. 인출). 생활보호세대, 시민세 비과세세대, 한부모 가정 등은 전액 면제이며, 연봉 360만엔 미만 세대에 대해서도 이용요금의 3분의 2를 감면한다. 이용 방식은 웹사이트를 통해 면담을 신청하고, 이용 희망시설과 일정을 조정한 후 내방하여 이용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으로,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을 다니지 않는 3~5세 유아가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우에는 25,700엔(가정보육 가능 아동), 37,000엔(가정보육 불가능 아동) 한도 내에서 비용이 감면되고, 시정촌 주민세 미과세 0~2세 아동이 일시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42,000엔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감면 받는다(내각부 홈페이지_유아교육보육·무상화에 대하여,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usyouka/about/index.html>, 2023. 6. 2. 인출). 그러나 <표 III-1-7>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설비의 기준은 보육소 기준을 따르나, 종사자 배치를 전원 보육사로 의무화 하지 않고 연수 수료자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 질병아동보육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였으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보육소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는 자체사업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에 보육실을 설치하여 보육해 왔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17: 114). 그리고 1989년의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엔젤플랜, 신엔젤플랜의 시행과 함께 질병아동 보육은 영유아 건강지원 데이서비스 사업,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양육 사업으로 제도화 되어 국가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다. 1998년부터는 회복기 아동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급성기 아동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0년 신엔젤플랜의 시행과 함께 보육소도 질병아동보육을 위한 보육실을 설치하여 질병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17: 114). 2008년부터는 보육소 아동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해당 보육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을 위한 대응 서비스가 신설되었으며, 2011년에는 간호사 등이 아동의 자택에서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방문형 질병아동 보육서비스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17). 질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보육 형태 및 현황은 아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일본의 질병아동보육 종류

구분	질병아동 대응	회복기 아동 대응	컨디션 저조아동 대응	비시설행 (방문형)
사업 내용	병원, 보육소 등에 부설된 전용공간에서 지역거주 질병아동 및 질병회복기 아동을 간호사 등이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		보육 중인 컨디션 저조아동 보호 외 보육소 입소 아동에 대한 보건적 대응, 지역에서 자녀양육중인 가정과 임신부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지역거주 질병아동 회복기 아동을 간호사 등이 보호자 자택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사업
대상 아동	위급 상황은 아니지만, 집단보육이 곤란한 상황이고 보호자의 근무 등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하다고 시정촌이 인정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아동		보육소에서 보육 중 미열 등으로 컨디션이 저조하여 하원 전까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아동	질병 중 및 질병회복기 아동
실시주체	시정촌(시정촌이 인정한 사람에게 위탁 가능)			

구분	질병아동 대응	회복기 아동 대응	컨디션 저조아동 대응	비시설행 (방문형)
실시 요건	- 간호사 등: 이용아동 10명당 1명 이상 배치 - 보육사: 이용아동 3명당 1명 이상 배치 - 병의원, 보육소 등에 부설된 전용 공간 또는 본 사업을 위한 전용 시설 등		- 간호사 등 상시 1명이 상 배치(컨디션 저조아동 2명 당 간호사 1명) - 보육소의 의무실, 여유 공간 등에서 위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아동의 안정이 확보되는 장소여야 함	아동 1명당 보육자 1명(연수 수료 간호사 등, 보육사, 가정적 보육자 자격증 중 1개 소지)
실적	2020년 기준 3,582개소 966,675명 이용			
보조율	중앙정부, 시도부현, 시정촌 각각 1/3씩 부담			

자료: 후생노동성(2020). “질병아동보육사업 실시에 관하여” 일부개정. pp. 14-22.;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회(2022).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p. 309.

2015년 아동·영유아 양육 신제도의 시행으로 질병아동 보육은 지역 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실시됨과 동시에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다.

〈표 III-1-9〉 질병아동 보육사업의 근거 규정: 「아동복지법」 제6조의3 제13항

「아동복지법」
제6조의3 13항: 이 법률에서 질병아동 보육사업이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치료 혹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해 가정보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병원, 진료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0164>. (2023. 6. 3. 인출)

질병아동 보육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아동연령, 비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코베시, 시나가와구, 미야자키시의 질병아동 보육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의 〈표 III-1-10〉과 같다.

〈표 III-1-10〉 일본 지방정부의 질병아동보육 지원내용(2023)

구분	시나가와구	코베시	미야자키시
대상	보호자 근로, 질병, 관혼상제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생후 6개월~취학전	보호자 근로, 질병, 관혼상제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초등 6학년 까지	보호자 근로, 질병, 관혼상제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초등 6학년 까지
대상질병	일반 질병(감기, 구토, 설사) ※ 백일해, 홍역 등 전염병 불가	감기, 소화불량 등 일반질병, 수두, 볼거리 등 전염성 질환, 천식 등 만성질환, 골절 등 외상	감기, 소화불량 등의 일반질병, 홍역, 수두, 볼거리 등 전염성 질환, 천식 등 만성질환, 골절 등 외상
비용	1일 2,000엔	1일 2,000엔	1일 2,000엔
이용기간	7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자료: 1) 시나가와구 홈페이지, <https://www.city.shinagawa.tokyo.jp/PC/kodomo/kodomo-hoyou/kodomo-hoyou-ichizi/hpg000033509.html>(2023. 5. 13. 인출)
 2) 코베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obe.lg.jp/a65174/kosodate/shien/support/byouji.html>(2023. 5. 13. 인출);
 3) 미야자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1/8/8/6/9/_/718869.pdf(2023. 5. 13. 인출)

위의 〈표 III-1-10〉에서 볼 수 있듯이, 질병아동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근로, 질병, 관혼상제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아동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은 상이하여 코베시와 미야자키시는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동경도의 시나가와구는 취학전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시나가와구 홈페이지, <https://www.city.shinagawa.tokyo.jp/PC/kodomo/kodomo-hoyou/kodomo-hoyou-ichizi/hpg000033509.html>, 2023. 5. 13. 인출; 코베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obe.lg.jp/a65174/kosodate/shien/support/byouji.html>, 2023. 5. 13. 인출). 대상 질병 역시 코베시, 미야자키 시는 전염성 질환, 골절 등까지 포함하나 시나가와구는 전염성 질환은 질병보육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용은 모두 1일 2,000엔 정도이며, 식사비, 간식비, 기저귀 비용 등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7일 이내이며, 이용시간은 보육소와 병원의 운영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미야자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1/8/8/6/9/_/718869.pdf, 2023. 5. 13. 인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질병보육을 위한 시설 일람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보호자는 이용희망 시설에 미리 등록한 후,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한 보육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예약하고(이때 보호자는 주치의로부터 검

진을 받고 아동 건강상태 기입표를 함께 제출한다), 질병보육을 이용하면 된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과 시정촌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0~2세 아동이 질병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면제 된다(내각부 홈페이지_유아교육보육·무상화에 대하여,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usyouka/about/index.html>, 2023. 6. 2. 인출).

질병아동 대응, 질병회복기 대응, 컨디션 저조아동 대응의 시설형 3종류와 달리 방문형 질병보육은 NPO 법인, 전국보육서비스 협회 등에 등록된 베이비시터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질병아동 및 회복기 아동을 보육하는 형태로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미토시 홈페이지, <https://www.city.mito.lg.jp/site/kosodate/5571.html>, 2023. 6. 1. 인출). 방문형 질병보육 역시 시설형과 동일하게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다양하다. 일례로 이바라키현 미도시의 위탁을 받아 방문형 병아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아동의 극장”은 15분당 100엔, 오사카의 “NPO법인 노벨”은 시간당 1,800엔을 징수하며, 이외에도 입회비, 연회비, 월회비 등이 있다. 방문형 질병보육 사업은 자택에서 개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설형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보조 제도를 통해 지역의 자녀양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경도의 토시마구는 방문형 병아보육을 이용한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20,000엔, 연간 100,000엔을 상한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동경도 메구로구는 아동 1인당 연간 40,000엔까지 보조하고 있다(토시마구 홈페이지, <https://www.city.toshima.lg.jp/452/kosodate/kosodate/houmongata/1605241336.html>, 2023. 5. 2 인출; 메구로구 홈페이지, <https://www.city.meguro.tokyo.jp/smph/kurashi/kosodate/josei/byouji-joseikin.html>, 2023. 5. 2. 인출).

4) 야간보육

야간에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육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육하는 인가의 야간보육소가 2021년 기준 일본 전국에 75개소가 개설되어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2009년 77개였던 야간보육소는 2013년 85개로 약간 증가하였으

나 다시 감소하였다. 야간 보육소의 감소는 아동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산업 구조가 다양화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보육소는 1980년대 인가 외 보육시설인 베이비호텔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의 시범사업을 통해 1981년에 제도화 되었다(오오에마유코(大江 まゆ子), 2019: 127).

후생노동성(2018)의 야간보육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설립주체별 현황은 공립(3.4%), 사회복지법인(94.8%), 사단 및 재단법인(1.7%) 순이다.

야간 보육소는 야간보육만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 보육소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야간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부터 야간근로 등의 사유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소시간은 대개 오전 11시이며, 오후 10시 종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개소 및 종료시간 전후 3시간은 연장보육시간으로 국고가 보조된다. 이에 연장보육을 포함한 개소시간이 15시간 이하의 야간보육소가 54.4%이며, 15시간~17시간(22.8%), 17시간 이상 24시간 미만(14%), 24시간(8.8%)으로 확인된다(후생노동성 2018: 12).

정부는 “야간보육소의 설치인가 등에 관하여”(2000)에서 야간보육소의 정원은 20명 이상이며, 야간보육소의 비용은 「아동복지법」상의 보육소 운영비 국고부담금에서 규정하는 보육단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9201&dataType=1&pageNo=1, 2023. 5. 2. 인출). 따라서 야간보육소의 보호자 부담분 보육비용은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시설에 포함됨으로서 3~5세의 유아는 월 37,000엔, 주민세 비과세 대상 0~2세 아동은 42,000엔 범위 내에서 보육료가 면제된다(내각부 홈페이지_유아교육보육·무상화에 대하여, <https://www8.cao.go.jp/shoushi/shinsuido/musyouka/about/index.html>, 2023. 6. 2. 인출).

〈표 III-1-11〉 일본 야간보육소(드림)의 보육 일과 예시: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일과 시간대	0~2세아	3세아	4~5세아
08:00 ~ 09:30	아침 연장보육 등원·검진·놀이(혼합연령보육)		
09:30 ~ 11:00	개별 아동의 생활 리듬을 고려한 식사, 수유, 수면,	소그룹놀이 (흙놀이, 산보, 수영 등)	흙놀이, 산책, 검도, 수영 등
11:00 ~ 17:00	놀이 등	식사, 낮잠, 간식, 놀이	점심, 낮잠, 간식, 놀이
17:00 ~ 22:00	저녁 식사, 놀이(0~5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아동이 야간에 적합한 놀이 활동 전개). 샤워, 취침 준비		
22:00 ~ 24:00	(심야연장보육) 취침		

자료: 야간보육소 “드림” 홈페이지, [http://www.aiikukai.or.jp/dream/one-day-nurseries\(2023. 5. 24 인출\)](http://www.aiikukai.or.jp/dream/one-day-nurseries(2023. 5. 24 인출)).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소재 야간보육소 “드림(Dream)”의 보육 일과를 살펴보면 〈표 III-1-11〉과 같다. 오전 8시부터 등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 까지 혼합연령 보육을 실시한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연령별 보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오후 5시경 저녁식사 이후로는 야간에 적합한 놀이 활동을 하고 오후 10시에 귀가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보호자 상황에 따라 심야연장보육이 이루어진다.

5) 연장보육

보육소의 보육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이나, 맞벌이 세대의 증가, 노동시간의 다양화 및 장시간화 등에 따라 대부분의 보육소는 일반적으로 11시간 보육을 시행해 왔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10: 47). 그리고 2015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시행 이전에는 11시간 초과보육을 연장보육으로 간주하고 정부는 국고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보육시간을 보육 단시간 보장 8시간과 보육 표준시간 보장 11시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설정함으로써 연장보육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즉, 보호자의 월 근로시간이 12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8시간 보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보육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월 12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시간 이상 보육을 연장보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현재 연장보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연장보육은 다니고 있는 보육소에서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의 실시 책

임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에 있으므로, 시정촌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를 공지한다. 연장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사유(초과근로 등)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보육소에 제출하고 이용한다.

연장보육료는 보육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의 일종이므로 보육시설 및 지역에 따라 연장보육 시간, 대상자 등이 상이하다. 이용료 역시 시간 단위로 징수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 단위, 월 단위 등 다양하나, 1시간 연장보육을 받을 경우, 대개 월 2,000엔에서 3,000엔 수준으로 파악된다. 연장보육 시간은 보육소 종료시간인 오후 6시부터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호자 및 시설상황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시행되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그리고 야간 보육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므로, 연장보육은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10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일례로 동경도 중앙구의 연장보육은 <표 III-1-12>에서 보는바와 같이 3가지 형태로 실시된다(중앙구 홈페이지_연장보육, <https://www.city.chuo.lg.jp/a0021/kosodate/kosodate/hoikuen/hoiku/ninkahoiku/entyouhoiku.html>, 2023. 5. 23. 인출). 동경도 중앙구의 연장보육은 다양한 시간대로 실시된다. 11시간의 보육인정을 받는 표준보육시간 인정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등원하여 오후 6시까지 보육을 받으므로 연장보육은 저녁시간에 실시된다. 반면, 8시간 보육인정을 받는 보육 단시간 아동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보육소에 등원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12> 일본의 연장보육 유형: 동경도 중앙구

구분	월 단위 계약 연장보육	1일 단위 연장보육	1일 단위 연장보육
대상자	1세 이상 아동 11시간 보육보장 대상자	1세 이상 아동 11시간 보육보장 대상자	8시간 보육보장 대상자
이용시간	18:30~19:30	18:30~19:30 19:30~21:00 19:30~22:00	7:30~9:00 17:00~18:30 18:30~19:30 19:30~21:00 19:30~22:00

자료: 중앙구 홈페이지_연장보육, <https://www.city.chuo.lg.jp/a0021/kosodate/kosodate/hoikuen/hoiku/ninkahoiku/entyouhoiku.html> (2023. 5. 23. 인출)

한편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에서는 연장보육을 “보육인정을 받은 아동에게 통상 이용일 및 이용시간 이외 날짜와 시간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등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호자의 통근 시간, 추가 근로, 간병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규 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것을 일컫는다. 연장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2020년 기준으로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은 28,427개소이고, 연간 이용아동수는 897,348명으로 나타난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309).

6) 휴일보육

보육소는 일요일, 공휴일 및 신정연휴 기간(1월1일~1월 3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본의 보육소는 토요일도 오후 6,7시까지 운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자의 근로, 질병, 잔업, 관혼상제 등의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휴일에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다(나카노구 홈페이지, <https://www.city.tokyo-nakano.lg.jp/dept/244000/d026663.html>, 2023. 5. 17. 인출).

휴일보육의 지원내용은 보육소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신정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7시 사이이다. 보육 정원은 약 20명 정도이며, 보육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받지 않기도 한다. 보육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주 6일 보육을 원칙으로 하므로 휴일보육을 이용할 경우, 주중 1일은 보육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경도 나카노구의 경우에는 질병,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친족의 간병, 간호,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하여 보육소 또는 인정어린이원에 다니고 있는 생후 8개월 이상의 영유아 및 가정보육이 가능한 1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료는 1일당 3,000엔을 징수하나, 근로를 이유로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지 않는다(나카노구 홈페이지, <https://www.city.tokyo-nakano.lg.jp/dept/244000/d026663.html>, 2023. 5. 17. 인출). 반면 요코하마시는 휴일보육 종류를 <표 III-1-13>과 같이 휴일보육과 휴일 일시보육으로

구분하고, 연말연시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일보육의 이용 방법은 지자체, 보육시설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우선 이용 중인 보육시설 또는 지자체에 미리 휴일보육 신청을 하고, 휴일보육 실시 보육소를 확인한 후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 관련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시정촌 별로 휴일보육 실시 보육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13〉 일본의 휴일보육 종류 및 지원내용: 요코하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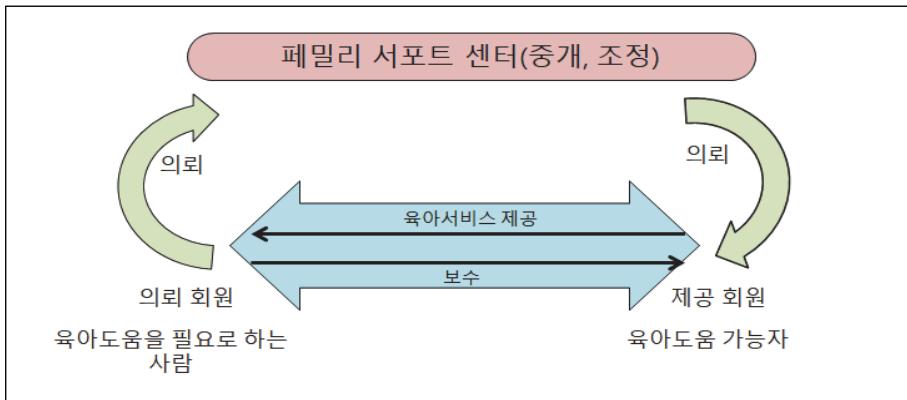
구분	휴일보육	휴일 일시보육
대상아동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영유아로 평일 법정보육시설 이용자	휴일보육 미대상자로서, 보호자의 근로, 질병, 입원, 관혼상제, 육아 피로 등의 이유로 휴일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지원시기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29일~1월3일)	
보육시간	시설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8시간)	
이용료	- 월~토요일에 보육시설 미이용가구: 이용료 받지 않음. - 월~토요일에 보육시설 이용가구: 휴일 일시보육과 동일요금 적용	3세 미만: 시간당 420엔 3세 이상: 시간당 230엔

자료: 요코하마시 홈페이지_휴일보육,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odate-kyoiku/hoiku-yoji/shisetsu/hoikuseido/ichiji/kyuujitsu.html>. (2023. 5. 24. 인출)

7)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에 대해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에서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보호자를 회원으로 하여, 보육을 받고 싶은 사람과 도움주기를 희망하는 사람과의 상호원조 활동에 관한 연락 및 조정을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3 제14항에서 ‘자녀양육원조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숙박을 포함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맡아 보호하는 것과 아동의 원만한 외출을 위한 아동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림 III-1-3]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운영체계



자료: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문제연구소(2022) 토대로 필자 작성.

이 사업은 1994년 노동성이 처음 시작하였으며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발표된 신엔젤플랜(2000년-2004년)의 저출생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1,718개 시정촌 중 956개 시정촌이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회원은 62만명, 제공회원은 14만명으로 나타난다(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172).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의뢰회원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제공회원은 시정촌에 등록하여야 한다(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문제연구소, 2015: 131). 시정촌은 서비스 내용, 시간 등과 관련하여 의뢰회원과 중개회원을 중개·조정한 후, 의뢰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료는 의뢰회원이 제공회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초기의 주된 서비스는 보육소 및 방과후 아동보육 송영서비스였으나, 2009년부터 질병 아동, 회복기 아동 및 조조, 야간 등 긴급 시의 보육사업으로 확대되었다(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문제연구소, 2014: 114). 현재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기본 사업과 질병아동·긴급대응 강화 사업으로 구분되며, 상호원조 활동의 세부내용은 <표 III-1-14>와 같다(내각부, 2021: 10-14).

〈표 III-1-14〉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상호원조 활동의 세부내용

기본 사업	질병아동·긴급대응 강화 사업
1. 보육시설의 보육 개시전과 종료후의 보육 2. 보육시설까지의 송영 3. 방과후 아동클럽 종료 후 아동보육 4. 학교 방과후 아동보육 5. 관혼상제, 학교 행사로 인한 아동보육 6. 쇼핑 등 외출로 인한 아동보육	1. 질병 아동 및 질병회복 아동 보육 2. 숙박을 동반한 아동보육 3. 조조·야간 등 긴급 상황 아동보육 4. 1에서 3에 동반되는 자택, 보육시설, 질병아동·회복기 아동보육시설간의 송영

자료: 내각부(2021).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실시에 관하여. pp. 10-14.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제도의 일종이므로, 대상아동, 사업내용, 비용 등이 시정촌 별로 상이하다. 오사카시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0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보호자의 육아피로 해소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질병아동 보육은 제공하지 않는다(오사카시 홈페이지,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70655.html>, 2023. 5. 24. 인출).

제공 회원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24시간 정도의 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 이 용료는 1시간당 800엔이고, 새벽, 야간, 심야, 컨디션 불량으로 이용할 경우와 토·일요일, 연말 연시 등의 경우에는 900엔을 지불한다. 동경도 기타구의 경우에는 생후 57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단시간 근로, 통원, 관혼상제 등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질병아동에 대한 보육은 사업내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오사카시와 동일하다. 이와는 달리 나가사키시에서는 질병아동 보육을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에서 제공하며, 사이타마시에서는 질병아동·긴급대응 강화사업의 4개 항목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나가사키시 홈페이지, <https://www.pref.nagasaki.jp/bunrui/hukushi-hoken/kosodateshien-shoshikataisaku/kodomo-shisetsu/famisapo>, 2023. 5. 24. 인출; 사이타마시 홈페이지, <https://www.pref.saitama.lg.jp/a0607/famisapo.html>, 2023. 5. 24. 인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공회원은 보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나 긴급구명 강습·사고방지 관련 강습(9강좌, 24시간)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내각부, 2021). 실시 주체는 시정촌 또는 시정촌의 위탁을 받은 자이며,

사업 실시에 동반되는 재정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도도 부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부담한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65조~68조의 3,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065>, 2023. 6. 3. 인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패밀리 서포트 지원 사업도 무상화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3~5세의 유아(가정보육 가능 25,700엔 /가정보육 불가능 3~5세 유아 37,100엔) 및 0~2세의 주민세 비과세 아동은 42,000엔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이처럼 보육소 또는 유치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을 보육의 대체서비스로 이용하는 경우, 아동 안전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보육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 오사카에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던 생후 5개월 영아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8) 자녀양육 단기지원 사업

자녀양육 단기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질병, 기타 사유로 가정양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및 경제적 이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모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의 시설, 위탁가정 또는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고 시정촌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후생노동성, 2021b: 294). 이 사업은 단기입소 생활지원(쇼트 스테이)과 야간보육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하의 <표 III-1-15>와 같다(후생노동성, 2021b: 294-295).

<표 III-1-15> 일본의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종류

구분	단기입소 생활지원	야간보육
대상자	1. 보호자의 질병 2. 육아피로, 만성질환 아동 간병피로, 육아불안 등 신체·정신상 사유 3. 출산, 간호, 사고, 재해, 실종 등 가정양육상 사유 4. 관혼상제, 전근, 출장, 학교공식 행사 등 사회적 사유 5. 경제적 문제로 인한 긴급일시 모자보호의 필요성	직업상 사유로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보호자 부재

구분	단기입소 생활지원	야간보육
보호기간	7일 이내	특이 규정 없음
실시장소	아동양육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영아원, 보육소,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자료: 후생노동성(2021b). 자녀양육 단기지원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pp. 294-295.

2017년 기준으로 단기입소 생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797개소이고, 야간 양호는 398개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 재원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65조~68조의 3에 의거, 정부 및 도도부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부담 한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065>, 2023. 6. 3. 인출).

다. 시사점

일본 정부는 여성취업자의 증가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해 왔다. 질병아동 보육, 방과후 아동클럽(학동보육), 야간보육 등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없는 가운데 보호자의 욕구를 받아들여 196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온 역사가 있다. 1990년 이후로는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합계출생률의 제고를 건인하고자 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패밀리 서포터 센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앞서 다룬 긴급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일본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까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시책이 중점이었으나, 1990년 이후는 비근로가정의 긴급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유치원의 연장보육 실시율은 1993년에는 19.4%에 불과하였으나(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09: 232), 2021년 기준으로 88.6%의 유치원이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아동·자녀양육지원법」 시행 이후 인정어린이원의 증가와 함께 유치원에서도 오전 7시부터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시보육 역시 1989년의 1.57쇼크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보호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혼상제, 육아피로, 쇼핑, 취미생활 등의 이유로도 이용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17,640개의 유치원, 보육소

등에서 3,322,256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밀리 서포터 센터사업은 보육사 자격 등의 문제로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으나, 관혼상제, 조조, 심야 등 긴급 상황 보육 등도 상호원조 활동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보육소와 인정어린이원 등 법정 보육시설은 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의 조조, 저녁, 휴일보육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야간 보육소도 11시간 법정 운영시간 전후로 3시간의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아동·영유아 자녀양육지원법」 시행 이후로 일본의 보육은 크게 변화하였다.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보장되는 보육시간이 상이하므로 대부분의 보육소는 11시간 이상 개소하며, 추가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보육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정어린이원의 증가와 함께 유치원도 오전 7시부터 연장보육이 있으며, 보육소 역시 아침 7시 조조보육을 시작으로 오후 7시 또는 오후 8시 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 33,119개소(보육소 23,899개, 인정어린이원 9,220개) 중에서 28,427개소(85.8%)에서 연장보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897,348명이 이용하였다(문부과학성 2022: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 2022).

셋째,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다.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등의 법정 보육시설이 4시간, 8시간, 11시간 보육을 보장하고, 질병, 추가근로, 관혼상제 등의 특별 상황에서는 일시보육, 연장보육, 패밀리 서포터 센터 사업, 질병보육, 휴일보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되어 욕구가 있는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아동·자녀양육지원법」 제59조 및 제61조에서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할 것”과 “5년 마다 시정촌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보조가 있어 보호자 부담분이 경감된다. 1950년대부터 지방자치제가 확립된 일본은 보호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개별 보조를 하고 있다. 일례로 방문형 질병보육서비스는 시설형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질병아동 보육 이외에도 대부분의 보육사업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시정촌의 영유아 보육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자녀양육지원법」에서도 시정촌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실시 및 기본 계획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정보, 상담 등의 일체적 내용을 시정촌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보육에 대한 신뢰감 형성 및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 보육에는 여전히 난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 보육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야간보육소도 충분하지 않아, 인가 외 보육시설인 베이비호텔이 영유아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시보육,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등의 보육자를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연수 수료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 아동 안전 문제 등도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다.

2.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만 8세 미만 아동 대상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긴급돌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 반영된 지방정부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가 필요한 내용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 지자체 사업과 기초 지자체로 구분하여 긴급돌봄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아동의 질병·입원 등에 제공되는 아픈 아이에 대한 긴급돌봄은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가. 광역 지자체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긴급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 광주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서울시: 틈새보육 SOS서비스⁸⁾

서울시는 지방정부 중 가장 다양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시범사업 시행 이래 긴급돌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5), 2022년부터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다양화하여 ‘틈새보육 SOS서비스’라는 정책 패키지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a).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가정방문형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기관 기반의 긴급돌봄 지원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어린이집의 기타연장보육을 확대하여 긴급·일시돌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초등자녀 대상으로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긴급·일시돌봄 기능을 도입·강화하는 방식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가)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휴일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해당 어린이집 이용아동 뿐만 아니라 긴급 틈새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당일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b). 세부내용은 아래 <표 III-2-1>과 같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및 어린이집 방문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 인건비 100%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2b). 서울시는 2026년까지 365열린어린이집은 자치구별 1개소, 총 25개소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435개소로,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150개소까지 확대하며 긴급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8)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서 발표된 ‘틈새보육 SOS서비스’에는 1) 아픈 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 2)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3) 초등생 방과후 긴급 일시돌봄 강화, 4)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5) 영아전담 아이돌봄지원사업, 6)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총 6개의 세부 사업이 있다(서울특별시, 2022a). 이 중 본 절에서는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 있는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초등생 방과후 긴급 일시돌봄 강화’ 사업을 살펴보고, 아픈 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는 이후 아픈 아이돌봄 지원 부분에서 살펴본다.

〈표 III-2-1〉 서울시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주요 내용

구분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보육	휴일보육
대상	모든 취학 전 영유아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만6개월~만6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황 ²⁾	253개소	7개소	62개소
내용	평일 16:00~22:00 연장야간연장 보육 및 석식 제공	365일, 24시간 보육 및 식사 제공 ※ 신청, 구정·추석연휴, 생탄절 제외	공휴일 보육 제공
지원내용	- 야간연장교사 인건비 100% (20% 추가지원) - 보육 도우미 인건비 등	전담교사(3인) 인건비 100% 냉난방비 등	휴일근무 보육교사 수당(55천원) 지급
가정부담	없음	시간당 3천원	없음
재원분담	시 50%, 구 50%	시 100%	시 50%, 구 50%

주: 1) 서울시 추진 사업에는 시간제보육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보육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함.

2) 2022년 6월말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2022b). 내부자료.

나) 초등방과후 긴급일시 돌봄 강화

서울시는 초등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면서 기본 정원의 20% 이내는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갑작스러운 돌봄 필요 사유 발생 시 온라인(우리동네키움포털)·방문전화 신청을 통해 1일(회) 2,500원 이내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형 키움센터는 13~19시(방학 09~18시), 융합·거점형키움센터는 13~20시(방학 08~20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2b).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확충되면, 초등 긴급돌봄 또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에도 긴급돌봄을 신설하였다. 만 7세~만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운영은 키움센터 긴급돌봄과 동일하다.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 당 월 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서울특별시, 2023b). 24개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후 2026년 15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 광주시: 긴급아이돌봄센터(영유아 대상)

서울시와 함께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발달한 광역 지자체로는 광주시를 들 수 있다. 광주시에서는 2019년 저출산 대책인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정책에 따라 긴급돌봄 지원이 추진되었다.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영유아 대상 별도의 긴급돌봄 기관인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I-2-2〉 광주시 긴급아이돌봄센터 주요 내용

구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서구아이돌봄센터
이용시간	월~금요일 18시~다음날 9시, 토요일 9시~20시	월~금요일 18시~23시, 토요일 9시~20시
이용대상	6개월~만 5세 이하(취학 전) 영유아	
이용료	시간당 2,000원(월 7건 또는 월 80시간 이용 가능) (※월 7건 또는 월 80시간 이상시 자부담으로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 가능)	
이용방법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www.gjicare.or.kr) 가입 및 아동 등록 후, 예약	

자료: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_긴급아이돌봄_이용절차 및 방법, http://gjicare.or.kr/page/child_care/intro (2023. 5. 24. 인출)

긴급아이돌봄센터는 2019년 9월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가 먼저 개소하고, 이후 확대 요구에 따라 2021년 6월 서구긴급아이돌봄센터가 개소하여 2곳이 운영 중이며, 6개월~만 5세 이하(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https://www.광주아이키움.kr/main>, 2023. 4. 19. 인출). 지원시간 범위 내에서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이고, 서구긴급아이돌봄센터는 야간 긴급보육 지원이,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는 24시간 긴급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표 III-2-2〉와 같다.

나. 기초 지자체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

기초 지자체 사업으로는 경북 포항시,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의 사업을 살펴보았다. 경북 포항시와 서울 서초구는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뽑혔던 사업으로, 서울 양천구는 아이돌봄 파견 방식이 아닌 기관 기반의 야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초 지자체 사업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1) 경북 포항시: ‘직장맘 SOS서비스’

경북 포항시는 ‘직장맘 SOS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긴급아동돌봄 서비스를 시행, 기초 지자체 중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긴급돌봄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사업내용이나 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로 뽑힌 것에 이어(행정안전부, 2021), 2022년에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 카드뉴스, 2022).

경상북도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직장맘, 직장대디를 이용 대상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타 지역 정책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병원진료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아픈 아이 돌봄(병원동행)서비스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함께 지원되고 있다(포항시청 홈페이지, <https://www.pohang.go.kr>, 2023. 5. 30. 인출). 그 외 세부 내용은 <표 III-2-3>에 정리하였다.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17년 하반기 43건에서 시작하여 2021년 394건까지 확대되었으며, 아동보호사 양성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행정안전부 카드뉴스, 2022).

〈표 III-2-3〉 포항시 ‘직장맘 SOS서비스’ 주요 내용

이용대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일반 임산부
이용시간	- 07:00~20:00(주말, 공휴일 이용가능)/ 기본 2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내 이용 가능 - 한 아동 당 연간 15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료	- 이용료(이용자 개인부담금) : 10,000원/건(취약계층, 다자녀가정 50% 감면) - 서비스 이용 시 소요되는 실교통비 : 이용자가 아동보호사에 직접 지급
이용방법	전화상담 후 신청
주요내용	긴급 아동보호사 파견서비스 - 긴급 병원 픽업,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 혼자 있는 아이 일시적 돌봄 - 등·하굣길 동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자료: 포항시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여성_직장맘지원센터, <https://www.pohang.go.kr/pohang/6951/subview.do> (2023. 5. 30. 인출)

2) 서울 서초구: ‘서초 119 아이돌보미’

서울시 서초구는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서초 119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하여, 2021년에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행정안전부, 2021).

〈표 III-2-4〉 서울 서초구 ‘서초 119 아이돌보미’ 주요 내용

이용대상	서초구 거주중인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자녀양육 가정으로 맞벌이·출장, 양육자의 질병·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	- 오전 8시 ~ 밤 10시, 일 2~4시간/월 최대 6회 이용가능
이용료	- 1일(회) 3,000원 ※ 4시간 초과 이용 시 10,000원/시간당 이용가정 부담
이용방법	홈페이지(www.seochofamily.com)회원 가입 후, 서약서 및 신청서 작성(등본, 증빙서류 업로드) → 담당자 승인 → 서비스 실시(이용료는 선납)
주요내용	긴급아이돌보미 파견

자료: 서초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영유아복지_서초아이돌보미순주돌보미 지원,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2023. 5. 24. 인출)

맞벌이·출장, 양육자의 질병·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2~4시간까지 ‘긴급 아이돌보미’가 지원된다. 이용료는 1일(회) 3,000원으로 부담이 낮고,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수를 늘려 당일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부모 만족도를 제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초구, 2020).

3) 서울 양천구: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여서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어린이집 기반의 야간·긴급돌봄 지원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특히 심야 돌봄(19:30~다음날 7:30)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운영기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하여(기존 1개소에서 23개소 추가 지정)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상담을 신청하면, 야간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양천구, 2023)은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표 III-2-5〉 서울 양천구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주요 내용

이용대상	양천구 거주 12개월~만 6세 미만 영유아
운영시간	연중 상시 심야시간(19:30~다음날 7:30) ※ 단, 1월 1일, 12월 25일, 설·추석 연휴는 미운영 ※ 안전상 입소한 영유아는 22:00~다음날 7:30 중도 퇴소할 수 없음 ※ 여행 또는 유휴 사유 등 긴급한 목적이 아닐 시 이용 제한
이용시간	-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가능
이용료	- 1시간당 1000원
이용방법	(평일) 당일 19시 전까지 신청 가능(정원 미초과시) (주말) 금요일 19시 전까지 사전 예약

자료: 양천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영유아복지_양천형밤샘긴급돌봄,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5/10503021201002023042509.jsp> (2023. 5. 29. 인출)

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1) 서울시: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서울시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형태의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에서 병상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의 ‘거점형 키움센터 아픈아이돌봄서비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서울형 틈새돌봄 3종 서비스’⁹⁾ 중 하나로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병원 내원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픈 아이 전담 돌보미를 지원,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23a). 아픈 아이 전담 돌보미 720명을 별도로 지정,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사업의 특징이다. 이용요금은 아래 〈표 III-2-6〉과 같이 현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2023년 현재 강북, 강서, 동대문, 서초, 성동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2022b).

9) 서울형 틈새돌봄 3종 서비스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안심돌봄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2023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등·하원 전담 돌봄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돌봄서비스, 영아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6〉 서울시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운영지역	강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전담돌보미(명)	133	186	144	140	117
이용대상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시간당 14,400원(시간제 종합형) (※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진료비, 약제비 등은 이용가정 자부담				
서비스 종류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주: 2023년 강북, 강서, 동대문, 서초, 성동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24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가족복지_아동_온마을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614> (2023. 5. 10. 인출)

나) 거점형 키움센터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거점형 키움센터를 활용한 아픈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아픈아이 전용 돌봄 공간’ 설치하고, 전문인력(간호 1, 돌봄 1) 확보하여 센터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동행 또는 병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22b). 운영시간은 9:00~18:00(월~금)이며, 이용료는 병원 동행은 무료(병원비 자부담), 병상 돌봄은 1일(회) 2,500원이다(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2023. 5. 10. 인출). 키움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대상은 만6~12세 초등학교 자녀로 제한된다.

2) 광주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¹⁰⁾

광주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는 2019년 11월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¹¹⁾ 입원아동 돌봄 지원이자, 병원 입원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 사업이다.¹²⁾ 2022년 연간 150시간까지 지원된 것에 대해 입원아동 특성 상 돌봄 지원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파인낸셜뉴스, 2022), 2023년에는 연간 200시간까지 지원시간이 확대되었다. 지방정부

10)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https://www.광주아이키움.kr/main>, 2023. 4. 19. 인출)를 토대로 정리함.

11) 2019년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 중 하나로 앞서 살펴본 긴급아이돌봄센터 개소와 함께 추진됨(광주N광주, 2019).

12) 부산시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2021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임.

사업 중 가장 지원시간이 길다.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방문하여 아동간병(복약, 식사) 및 정서교감을 통한 놀이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기준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4,000원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시간당 1,400~4,200원 수준이다.¹³⁾

〈표 III-2-7〉 광주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이용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지원내용	- 내용: 입원아동보호사 파견, 아동 간병(복약, 식사 등), 정서교감을 통한 놀이지원 등 - 장소: 병원 입원실(통합간병 병동 제외)
이용시간	- 08~20시, 1일 1회 최소 4시간~최대 12시간 이하, 한 아동 당 연간 200시간 한도
이용료	- 1시간 1,400~4,200원(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접수 : 평일 월~금 09:00~18:00 - 평일 외 시간 서비스 접수 : 온라인(www.광주아이키움.kr)접수만 가능

자료: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_입원아동돌봄, <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hChild>(2023. 4. 19. 인출)

3) 경북지역: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경상북도에서는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지역을 확대하였다(대한경제, 2023). 전담돌봄사를 지원하여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동행한다. 병원 진료 후 결과는 문자로 안내하며 집이나 학교 등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려다준다. 이용대상은 맞벌이 가구의 6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이다(현재는 안동시와 예천군 거주자에 한함). 신청시간은 오전 진료당일 7시~9시 30분, 오후 진료당일 11시~13시이며, 평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북 ‘모이소앱’에서 하며, 이용료는 무료(병원비와 약제비

13) 2023년 시간당 서비스 가격 14,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시 지원금	12,600원	11,200원	9,800원
본인 부담금	1,400원	2,800원	4,200원

자료: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https://www.광주아이키움.kr/main> (2023. 4. 19. 인출)

부모 부담)이다(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_가정양육지원_아픈아이병원진료 서비스, https://gyeongbuk.childcare.go.kr/lgyeongbuk/d17_20000/d17_20056.jsp, 2023. 5. 29. 인출). 경북 지역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실시 지역에 예천군이 포함, 군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경북 예천군의 사업 시행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군 단위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기초 지자체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기초지자체의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은 그 유형에 따라 별도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설립형,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보미 파견형, 병원입원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인 입원아동 돌봄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 센터형: 서울 노원구/경북 구미시

(1) 서울 노원구: 아픈 아이 돌봄센터

노원구는 아픈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10월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열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노원구에서 시행한 ‘부모 대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만 4세~초등학생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이용료는 무료이다. 센터에는 6개의 병상이 있고, 간호사 1명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2명, 보육교사 2명 등 돌봄 전담 선생님 4명이 상주한다(경향신문, 2022b). 아래 <표 III-2-8>과 같이 병원 동행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병상 돌봄서비스 까지 제공하고 있다(노원복지샘 홈페이지_노원복지소식_아픈아이돌봄센터, <https://www.nowonbokjisaem.co.kr/%ec%95%84%ed%94%88%ec%95%84%ec%9d%b4-%eb%b3%91%ec%9b%90%eb%8f%99%ed%96%89-%ec%84%9c%eb%b9%84%ec%8a%a4-%ec%82%ac%ec%97%85>, 2023. 5. 24. 인출).

이용료가 무료이며, 구청 직영으로 운영, 병원 동행 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노원구의 특징이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¹⁴⁾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아시아경제, 2021; 경향신문, 2022b), 이러한 노원구 사업의 특성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노원구 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특장점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III-2-8〉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주요 내용

구분	병원 동행	병상 돌봄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평일 09:00 ~ 19:00
이용대상	만 4세~초등학생 아동	
이용료	무료 (병원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	무료
제공 서비스	병원 동행, 복약 지도 및 귀가 - 정기 검진, 안과, 치과, 상담 치료 등 - 예방 접종 (독감, 자궁경부암만 해당)	아동 간호, 복약 지도 및 놀이 활동 - 아동 상태별 간호 서비스 제공 - 식사 가능 (도시락 및 간식 준비)
전담인력	4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 2인 1조 (병원 동행 전용 차량 이용)	간호사 항시 상주

자료: 노원복지생 홈페이지, <https://www.nowonbokjisaem.co.kr>(2023. 5. 24. 인출)

(2) 경북 구미시: 아픈 아이 돌봄센터

경북 구미시는 2023년 6월 간호돌봄실, 놀이(학습실), 사무실 등을 갖춘 ‘아픈 아이돌봄센터’를 개원할 예정에 있다. 만 5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은 뒤 학교나 유치원으로 다시 데려다 주거나 필요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한다(뉴스1 코리아, 2023). 이용료는 무료이고 병원비와 약제비는 본인 부담이다.

노원구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노원구와 함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병원동행과 병상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경북 구미시가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도농복합지역의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사례로서의 정책적 함의도 있다.

14) 병원 동행 및 병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각각 2020년 210명, 6명, 2021년 534명, 100명, 2022년 611명, 1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노원구 내부자료, 2022; 장은미·안현마·김현정, 2022: 100 재인용).

나) 돌보미 파견형: 경기 오산시/의왕시

경기도 오산시와 의왕시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의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는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최초로 2018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서울경제, 2018).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염·유형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입원아동 돌봄은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표 III-2-9〉 경기 오산시/의왕시의 아픈 아이 돌봄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분	오산시 아픈 아이 119지원사업	의왕시 아픈 아이 홈케어
이용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법정 전염병 및 질병에 감염돼 등원하지 못하는 아동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교가 어려운 아동
이용지원 시간	자녀당 연 60시간 지원 ※ 연 60시간 초과 시 이용료 50% 부담	자녀 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10일 이내
이용료	무료 (정부 지원 50%, 오산시 지원 50%) ※ 야간(22:00~6:00), 일공휴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무료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제공 서비스	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입원 아동 돌봄 불가)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자료: 오산시(2020). 오산시 아픈 아이119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홍보 리플렛);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2023. 5. 29. 인출)

다음으로 경기도 의왕시는 2020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아픈 아이 홈케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픈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서울pn, 2020).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의 만3개월~12세 이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이용으로 이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1일 최대 12시간,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병원 동행, 식사·간식 등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2023. 5. 29. 인출).

다) 입원아동 돌봄지원형: 경남 창원시/서울 광진구

입원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로는 경남 창원시와 서울 광진구가 있다. 경남 창원시는 2019년부터 ‘병원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대상과 지원시간을 확대하며 지속해오고 있다. 창원시 내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보호사가 기본 병간호, 놀이·독서 활동 등을 지원한다(창원시, 2023).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회, 최소 4시간~8시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이용 한도는 60시간 이다(창원시, 2022). 이용가격은 시간당 1만3천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창원시, 2022).

서울시 광진구는 ‘광진형 PLUS 돌봄SOS 사업’에 2022년부터 특화대상 중 하나로 입원 아동 돌봄을 포함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입원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사례이다.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전문 간병인을 파견, 입원아동의 식사와 복약지도, 놀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진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생애주기별복지_저소득주민_돌봄SOS센터,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548>, 2023. 5. 30. 인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가구에는 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하며, 그 외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경향신문, 2022a).

라. 시사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중앙정부 정책 시행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지자체 단위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많지 않으며 경기도 등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나, 주로 기초지자체의 긴급돌봄 지원이 더 발달되어 있다. 긴급돌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중심의 정책 발달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 등의 돌봄 취약지역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군·구 간 서비스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파견할

수 있는 돌봄인력이 부족하여 특정 지역에는 수요가 있어도 서비스 연결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다¹⁵⁾. 농어촌 등의 취약 지역은 예산 부족, 인력 및 공간 확보의 문제,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 수 등으로 자체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며,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도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하되, 돌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중앙정부는 지역 격차 없이 긴급돌봄을 지원하되, 지역 특성, 수요에 맞게 특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지원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돌봄인력을 긴급한 상황에서 연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며, ‘긴급한’ 돌봄의 기본 목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⁶⁾. 이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재가서비스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긴급 돌보미 연계 지연은 서비스 신청-제공(돌보미 연계)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보미가 부족한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긴급돌봄에 비해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 수요가 더 많고, 아이돌보미들 또한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더욱 선호한다. 때문에 긴급돌봄 지원 돌보미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면, 긴급돌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긴급돌봄을 전담하는 돌보미를 별도로 채용하되, 노동시간이 짧고 비정기적이며 이동시간이 길 수 있다는 등의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로 돌보미 파견 방식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발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관 기반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미흡하다. 특히 기관 기반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대부분(서울시 키움센터, 서울 노원구와 경북 구미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제

15)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긴급특례 돌봄지원사업에서 충남의 경우, 여러 시군 중 당진시는 이용자 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 요인이 파견할 돌봄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당진시, 2022). 농어촌 지역이나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있음에도 돌봄 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6) 각종 맘카페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게시글을 보면, “내일은 이미 마감이라 신청도 못했다”, “말만 긴급보육이지 최소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이 개월수와 위치가 맞아야 하고, 돌보미들에게 한명 한명 연락을 돌려서 매칭을 한다” 등의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외) 지원 대상이 영유아로 제한되어 있어, 초등아동 대상 기관 기반형 긴급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픈 아이 돌봄을 제외하고 초등아동 대상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2024년부터 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시·군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에 있다(경기도, 2023). 기관 기반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의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되, 초등아동 대상의 긴급돌봄 지원 기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긴급돌봄 지원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서 돌보미 매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관 기반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키움센터나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거점 돌봄기관을 선정하여 긴급돌봄 기관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한편, 기관 기반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서울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공간을 확보하여 정원 외 자리를 두거나, 정원에 포함하되 긴급돌봄 이용자 자리를 일정 부분 남겨두어야 방식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기돌봄으로 정원수가 다 차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없다면 긴급돌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넷째, 긴급돌봄 지원 사업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서비스 신청-서비스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시책을 보면 대부분 별도의 각 지자체 자체 돌봄 관련 포털이나 각 서비스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 자격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신속하고 긴급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긴급돌봄 서비스 신규 도입 및 확대 시 서류 제출·등록 및 서비스 대상 심사 과정 등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즉시 연결이 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과 키움센터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당일 유선 서비스 신청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서울 양천구의 경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연락하면 긴급돌봄(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에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 사업들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살펴보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신청-연계 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과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현황을 종합하여 긴급돌봄의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돌봄 지원의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관련 재원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르게 분담하는 고려될 수 있다. 긴급돌봄은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원기준 및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설계 전반 즉, 지원 사유 및 지원내용 등을 지방정부가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서비스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긴급돌봄은 이용자격의 제약은 최소화 하여 공백이 야기되는 것을 예방하되, 비용지원의 대상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일시보육 사유에는 전업주부에 적용되는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 관혼상제, 임시근로, 취미생활은 물론이고 육아 피로 항목이 포함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운영 방식도 기관과 거택방문형 등 다양하다. 즉, 일본의 일시보육은 보육소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뿐만 아니라, 유치원 재원아의 보호자가 임시근로 등으로 일시보육을 이용하거나 보육소의 부족으로 이용할 수 없는 2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일시보육을 제공한다. 또한 거택방문형은 기관을 통한 긴급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일시보육의 지원사유 및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이처럼 다양한 적용이 일시보육의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을 위한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야간근로 등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 사유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비용지원은 맞벌이 가구 위주이나, 이외에 관혼상제 등으로 이용할 시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은 비용을 지원하고, 이외 대상은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나, 이용자격

을 부여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교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한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격은 생후 57일부터 우리나라의 일시보육에 비해 이른 시기에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은 질병아동은 물론이고, 회복기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병원, 보육소 등 부설 전용공간과 상담지원, 방문형으로 그 방식이 다양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출산을 저하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0년 부터는 보육소에 질병감염 아동을 위한 보육소를 설치하여 해당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는 편의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이때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취학 전 영유아에 한정하거나 또는 초등 6학년 까지 이고, 전염병 포함 여부도 달라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적으로 영유아를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전염성 질환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짐작된다. 또한 보육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이용기간은 7일로 제한하여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상을 참고하면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파견 방식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담당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지방정부사업에서와 같이 입원아동 등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경우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아픈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긴급돌봄 수요를 현행 공공 부문에서 충족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야간이나 연장보육을 지역내 공적 부문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베이비호텔 등 인가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저조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특히 고려할만하다.

IV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수요자 조사

- 01 자녀 돌봄의 실태와 수요 충족 여부
- 02 긴급돌봄 사유와 어려움 정도
- 03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 04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
- 05 긴급돌봄 지원요구
- 06 소결

IV. 영유아와 초등자녀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수요자 조사

제4장에서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1~3학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돌봄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긴급돌봄의 사유 및 선호하는 지원방식과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긴급돌봄의 필요도에 주목하였으며, 심층면담에서는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불만족한 사항과 개선요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1. 자녀 돌봄의 실태와 수요 충족 여부

일상적인 돌봄의 틈새와 긴급돌봄 수요를 구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와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이들의 돌봄 수요 충족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외에도 자녀 돌봄 시간지원제도의 이용 및 이용가능성을 파악하여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가. 주양육자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1) 영유아 자녀

가) 주양육자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평일 낮 시간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린이집이 57.9%로 절반이 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이 19.1%로 나타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14.9%로 조사되었다. 영아자녀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돌봄의 비율이 각각 64.9%와 27.2%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유아자녀의 경우는 어린이집 다음으로 유치원이 38.6%로 높고, 반면에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비율은 2.4%

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61.8%로 평균에 비해 높고 혈연 또는 비혈연인력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홀벌이가구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28.1%로 월등히 높았다.

〈표 IV-1-1〉 영유아 자녀의 낮 시간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반일제 기관	비혈연 인력	혈연 인력	부모 직접돌봄	계(수)
전체	57.9	19.1	4.4	1.3	2.4	14.9	100.0 (1,029)
자녀연령							
영아	64.9	0.0	1.9	1.7	4.2	27.2	100.0 (519)
유아	50.8	38.6	6.9	0.8	0.6	2.4	100.0 (51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61.8	19.2	5.0	1.8	3.1	9.2	100.0 (720)
홀벌이 가구	49.0	19.3	2.6	0.0	1.0	28.1	100.0 (306)
모두 근로 안함	33.3	0.0	33.3	0.0	0.0	33.3	100.0 (3)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돌봄서비스 유형별로 이용하는 비율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88.3%, 어린이집 연장보육 62.8%로 월등히 높고,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10.6%, 휴일보육 6.4%, 야간12시간보육과 24시간보육은 공히 3.4%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통해 긴급돌봄의 수요가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IV-1-2〉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맞벌이 가구 여부					
	전체	(수)	맞벌이 가구	(수)	홀벌이 가구	(수)
연장보육	62.8	(596)	74.4	(445)	28.0	(150)
야간연장보육	10.6	(596)	13.5	(445)	2.0	(150)
휴일보육	6.4	(596)	7.9	(445)	2.0	(150)
야간12시간보육	3.4	(596)	3.8	(445)	2.0	(150)
24시간보육	3.4	(596)	4.0	(445)	1.3	(150)
유치원 방과후과정	88.3	(197)	92.8	(138)	78.0	(59)

주: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하고 있음'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수요 충족

(1) 등·하원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균 등하원시각과 해당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우선 등원시각의 경우는 평균 오전 8시 51분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0%로 조사되었으며,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 평일 기준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등원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8시 51분	81.0	19.0	100.0 (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44분	80.1	19.9	100.0 (583)
홀벌이 가구	9시 13분	83.3	16.7	100.0 (209)
모두 근로 안함	10시 0분	100.0	0.0	100.0 (1)
F/ χ^2 (df)	49.654***(a)	1.226(2)(b)		

주: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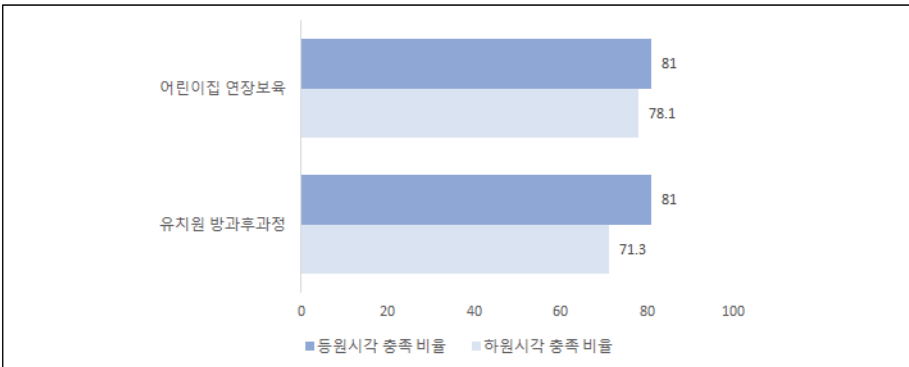
*** $p < .001$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원시각 대비 하원시각에서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 유형별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히 19%였으며,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1]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어린이집 연장보육 미이용가구에 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이용가구의 돌봄 수요 충족 수준이 낮아서 등원시각(평균 오전 8시 59분)의 경우는 60.9%, 하원시각(평균 15시 10분)의 경우는 65.2%가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4> 서비스 유형별 평일 기준 등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등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등원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8시 51분	81.0	19.0	100.0 (793)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8시 40분	81.0	19.0	100.0 (374)
연장보육 미이용	9시 8분	82.9	17.1	100.0 (222)
t/χ ² (df)	-9.938***	0.325(1)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방과후과정 이용	8시 55분	81.0	19.0	100.0 (174)
방과후과정 미이용	8시 59분	60.9	39.1	100.0 (23)
t/χ ² (df)	-0.464	4.924(1)*(b)		

주: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1-5〉 평일 기준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하원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16시 47분	74.3	25.7	100.0 (7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7시 1분	73.1	26.9	100.0 (583)
홀벌이 가구	16시 8분	77.5	22.5	100.0 (209)
모두 근로 안함	15시 0분	100.0	0.0	100.0 (1)
F/ χ^2 (df)	43.570*** ^(a)	1.935(2) ^(b)		

주: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1-6〉 서비스 유형별 평일 기준 하원시각 및 돌봄 수요(희망 하원시각) 충족 여부: 영유아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하원시각	돌봄 수요 충족 여부		계(수)
		충족	미충족	
전체	16시 47분	74.3	25.7	100.0 (793)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17시 25분	78.1	21.9	100.0 (374)
연장보육 미이용	15시 57분	71.2	28.8	100.0 (222)
t/ χ^2 (df)	16.785***	3.590(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방과후 과정 이용	16시 40분	71.3	28.7	100.0 (174)
방과후과정 미이용	15시 10분	65.2	34.8	100.0 (23)
t/ χ^2 (df)	7.328***	0.358(1)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2) 희망하는 등·하원시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의 등·하원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시각을 조사하였다. 희망하는 등원시각은 오전 8시 25분으로 현재 시각보다 26분이 빠르고,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18시 20분으로 현재 시각보다 1시간 33분이 늦게 나타났다. 영아를 둔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하원시각은 각각 18시 22분과 18시 28분으로 평균보다 길게 나타난다.

〈표 IV-1-7〉 (이용시간 불만족한 경우)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시각

단위: 시, 분, (명)

구분	희망 등원시각	(수)	희망 하원시각	(수)
전체	8시 25분	(151)	18시 20분	(204)
자녀연령				
영아	8시 22분	(66)	18시 22분	(94)
유아	8시 28분	(85)	18시 17분	(110)
t	-0.407		0.38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8시 20분	(116)	18시 28분	(157)
홀벌이 가구	8시 42분	(35)	17시 51분	(47)
모두 근로 안함	-	-	-	-
F	1.564		7.061**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2) 초등학생 자녀(1~3학년)

가)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 실태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응답가구에서 방과후돌봄은 초등돌봄교실이 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혈연인력 20.3% 였으며, 별도의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가 11.2%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각각 8.6%와 6.0%에 그쳐 초등방과후 돌봄 인프라의 전반적인 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인력(평일 기준): 초등학생 자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초등 돌봄 교실	지역 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학원	혈연 인력	비혈연 인력	기타	기관, 지원인력 없음	(수)
전체	45.3	8.6	6.0	52.1	20.3	4.3	0.7	11.2	(53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50.9	9.4	7.4	52.9	23.8	5.2	0.7	6.7	(403)
홀벌이 가구	28.7	6.2	1.6	49.6	10.1	1.6	0.8	24.8	(129)
모두 근로 안함	25.0	0.0	0.0	50.0	0.0	0.0	0.0	25.0	(4)
χ^2 (df)	77.301(16)*** (b)								

주: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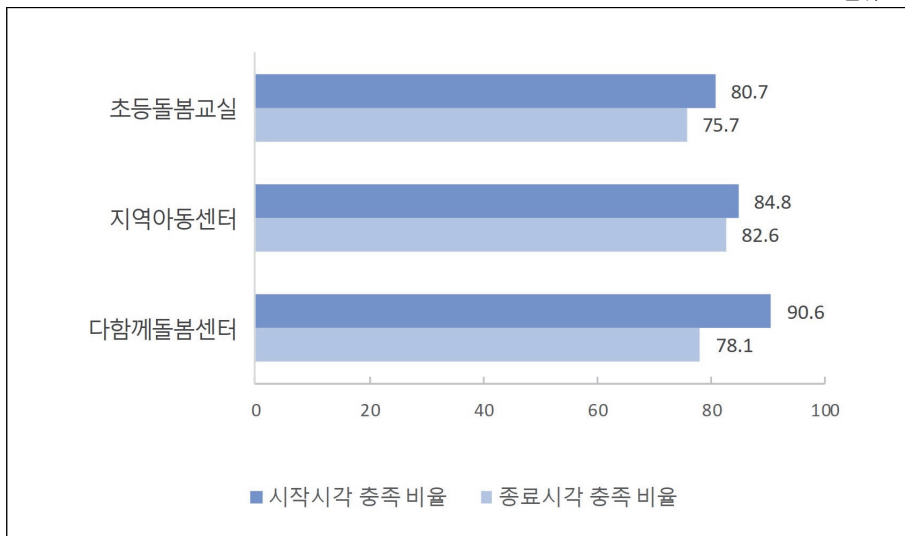
나)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돌봄 수요 충족

(1) 시작·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여부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구분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시작시각에 비해 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이 낮으나, 시작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은 서비스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작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IV-1-2]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의 돌봄 수요 충족 비율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구체적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평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의 시작시각이 14시 29분으로 가장 빠르고, 종료시각은 지역아동센터가 18시 20분으로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사례수가 제한적이거나(n=32), 평균 시작시각인 15시 25분이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다수였다.

〈표 IV-1-9〉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작시간/종료시간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평일 기준)

단위: 시, 분, %(명)

구분	시작시간 및 충족 비율		종료시간 및 충족 비율		계(수)
	시작시간	충족함 비율	종료시간	충족함 비율	
전체	14시 29분	80.7	16시 39분	75.7	100.0 (24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4시 23분	82.4	16시 33분	76.6	100.0 (205)
홀벌이 가구	14시 59분	70.3	17시 13분	73.0	100.0 (37)
모두 근로 안함	14시 10분	100.0	16시 20분	0.0	100.0 (1)
F/ χ^2 (df)	7.866***(a)	3.216(2)(b)	3.059*	3.354(2)(b)	

주: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V-1-10〉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작시간/종료시간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평일 기준): 초등학교생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시작시간 및 충족 비율		종료시간 및 충족 비율		계(수)
	시작시간	충족함 비율	종료시간	충족함 비율	
전체	15시 45분	84.8	18시 20분	82.6	100.0 (4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5시 48분	84.2	18시 24분	81.6	100.0 (38)
홀벌이 가구	15시 26분	87.5	17시 56분	87.5	100.0 (8)
모두 근로 안함	-	-	-	-	- -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1-1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작시간/종료시간 및 돌봄 수요 충족 여부(평일 기준): 초등학교생 자녀

단위: 시, 분, %(명)

구분	시작시간 및 충족 비율		종료시간 및 충족 비율		계(수)
	시작시간	충족함 비율	종료시간	충족함 비율	
전체	15시 25분	90.6	17시 42분	78.1	100.0 (3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5시 24분	93.3	17시 45분	80.0	100.0 (30)
홀벌이 가구	15시 40분	50.0	17시 0분	50.0	100.0 (2)
모두 근로 안함	-	-	-	-	- -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희망하는 시작·종료시각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가구 중에서 시작과 종료시각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시각을 질문하였다. 사례수가 적어서 제약이 있으나, 시작시각의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14시 50분으로 가장 이르고, 종료시각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20시 18분으로 가장 늦게 나타나며, 맞벌이 가구의 해당 시각은 20시 37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2〉 (이용시간 불만족한 경우) 희망하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시작·종료시각

단위: 시, 분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희망 시작시각	희망 종료시각	희망 시작시각	희망 종료시각	희망 시작시각	희망 종료시각
전체	15시 20분	18시 55분	16시 56분	20시 18분	14시 50분	19시 9분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15시 1분	18시 49분	17시 20분	20시 37분	15시 15분	19시 10분
홀벌이 가구	16시 25분	19시 47분	14시 30분	18시 0분	14시 0분	19시 0분
모두 근로 안함	-	15시 10분	-	-	-	-
(수)	(43)	(43)	(7)	(7)	(3)	(3)
F	7.300*(a)	5.135**	0.875	2.649	0.926	0.006

주: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실태

자녀 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현재 이용 및 필요시 이용가능성은 돌봄 공백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구소득과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현재 이용 및 필요시 이용 가능한 경우는 시차출근제가 27.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26%, 가족돌봄휴가 25.4%, 재택근무 15.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3〉 자녀돌봄시간 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전체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중	필요시 이용 가능	제도 있으나 이용 어려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잘 모름	계(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5	17.5	41.1	13.7	8.9	10.3	100.0 (1,558)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7.7	19.4	36.6	19.4	9.1	7.8	100.0 (1,558)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0 (1,558)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1	100.0 (1,558)

주: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로 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현재 이용 및 이용가능성이 저조한 수준을 보인 반면에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제도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4〉 월평균 가구소득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비율

단위: %, (명)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수)
전체	26.0	27.1	15.1	25.4	(1,55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4.8	11.1	22.2	7.4	(27)
201~300만원	22.2	24.6	13.5	23.0	(126)
301~400만원	20.9	17.6	12.0	22.1	(267)
401~500만원	27.2	28.5	12.4	23.3	(305)
501~600만원	25.6	25.2	11.6	27.0	(285)
601~700만원	27.0	29.9	20.9	29.4	(211)
701~800만원	34.0	34.7	19.6	30.8	(153)
801만원 이상	28.9	35.8	19.5	26.1	(184)

주: 1) '현재 이용 중' 과 '필요시 이용 가능' 응답을 합한 비율임.

2)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로 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맞벌이 가구 특성별로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현재 이용 및 이용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부 모두 시간제근로인 경우는 사례수가 제한적이나, 시차출근제를 제외한 이외 제도의 현재 및 이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15〉 맞벌이 가구 특성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및 이용가능 비율

단위: %(명)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수)
전체	30.2	29.6	16.7	28.6	(1,123)
근로형태					
둘다 전일제	32.6	31.0	15.5	29.5	(896)
전일제+시간제	20.0	24.5	20.0	24.5	(220)
둘다 시간제	42.9	28.6	57.2	42.9	(7)

주: 1) '현재이용 중'과 '필요시 이용 가능' 응답을 합한 비율임.
 2)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그밖에도 재택근무제도는 읍면지역에서 현재 이용 및 이용가능성이 8.8%에 그쳐 해당 지역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표 IV-1-16〉 재택근무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가구특성별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중	필요시 이용가능	제도 있으나 이용 어려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대상 아님	제도 잘 모름	계(수)
전체	3.5	11.6	32.4	33.1	15.0	4.4	100.0 (1,558)
거주지역							
대도시	4.1	13.4	33.1	32.5	13.5	3.4	100.0 (957)
중소도시	2.8	9.5	33.1	32.3	17.8	4.5	100.0 (465)
읍면지역	2.2	6.6	25.0	39.7	16.2	10.3	100.0 (136)
χ^2 (df)	30.980(10)**						

주: 가구 단위로 응답한 결과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둘 중에서 각 제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2. 긴급돌봄 사유와 어려움 정도

긴급돌봄의 지원의 사유 및 요건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돌봄의 사유별로 어려움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파악하였으며, 돌봄 공백의 발생 빈도 및 시간대를 분석하였다.

가. 긴급돌봄 사유별 어려움 정도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 걸쳐 보통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14점,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4.09점,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98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3.95점, 자녀를 출산한 경우 3.9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작스러운 연장근로와 일시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공히 3.88점, 이른 시각의 출근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또는 휴일에 긴급하게 일하는 경우는 3.82점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1〉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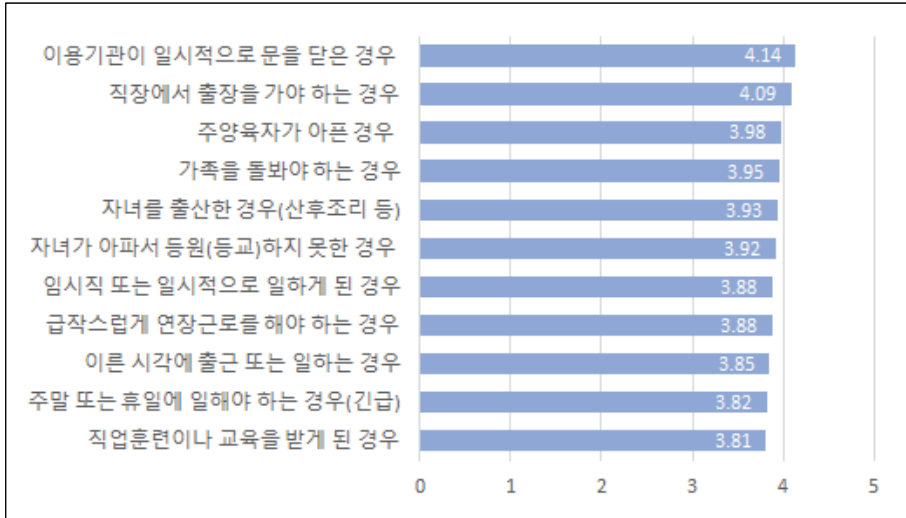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긴급 시 자녀돌봄의 어려움						계(수)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 없음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1.5	8.3	18.6	37.9	32.3	1.4	100.0 (1,565)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0.9	7.0	18.5	39.3	33.5	0.8	100.0 (1,565)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1.0	8.1	20.4	38.3	28.1	4.0	100.0 (1,565)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간급)	1.6	10.7	20.0	33.7	28.8	5.2	100.0 (1,565)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는 경우	1.5	9.4	19.6	36.5	28.9	4.1	100.0 (1,565)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1.2	7.1	13.9	28.8	40.2	8.8	100.0 (1,565)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1.8	7.7	17.8	31.0	32.3	9.5	100.0 (1,565)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3	5.7	19.1	37.4	29.6	7.0	100.0 (1,565)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1.6	6.1	20.3	33.7	27.1	11.2	100.0 (1,565)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1.4	6.8	23.3	33.3	23.9	11.3	100.0 (1,565)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0.8	5.5	15.1	33.7	41.5	3.5	100.0 (1,565)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2-1]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 5점 평균

단위: 점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긴급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자녀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지며, 초등자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어려움이 큰 가구가 달라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맞벌이 가구에서는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자녀가 아픈 경우, 갑작스러운 야근과 이른 출근, 출장 등에서 어려움이 큰 반면, 홑벌이 가구에서는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출산한 경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직업훈련 또는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구성에서는 특히 성인자녀가 있는 가구의 어려움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영아가구 영유아가구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도 상시로 돌봐줄 혈연 또는 비혈연인력이 있는 경우는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유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로는 둘다 전일제 근로를 하는 가구와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가구에서 모든 사유에 걸쳐 긴급돌봄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전형적근로시간대에 둘 중 한명이라도 근무하는 가구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대 가구에 비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상 지위별로는 둘다 상용직 근로가구에서 이용기관이 문을 닫거나 자녀가 아픈 경우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지며,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야근과 이른 출근, 출장 등에서 어려움이 크고, 이러한 사유에 따른 어려움은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가구에 비해 임시근로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및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 방식에 따라서는 사유별로 어려움의 정도가 달리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에서는 이용기관이 문을 닫거나 자녀가 아픈 경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와 비혈연인력에서,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는 부모가 직접돌보는 경우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자녀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는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출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요자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병원입원으로 인한 장시간 돌봄 필요(어린이집 이용가구 2), 부모의 지속적, 정기적인 병원진료(어린이집 이용가구 1), 사무직 맞벌이가정(모)의 간헐적 연장근로(유치원 이용가구 2), 외벌이 가정일지라도 출장이 많은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 1),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명만 코로나 감염, 독감 등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하여 나머지 한명의 자녀와 분리하여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유치원 이용가구 4), 특히, 자녀가 공립병설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6시에 퇴근하는 부

모는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유치원 이용가구 4). 자녀가 초등학교 방과 후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는 연로한 조부모가 자녀를 지속적 돌보기 어려운 경우 돌봄이 필요하며(초등방과후 이용가구 2), 자녀의 학원시간 전후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오후 3시~5시 또는 오후 7시까지)(초등방과후 이용가구 1, 4). 또한 지역아동센터 대기자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초등방과후 이용가구 3).

〈표 IV-2-2〉 자녀돌봄의 어려움: 가구특성별(아동 연령/맞벌이 가구 근로특성)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갑작 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출산 (사후조리등)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 근무	직업훈련 또는 교육	단위: 점, (명)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전체	3.92	3.98	3.88	3.82	3.85	4.09	3.93	3.95	3.88	3.81	4.14	(1,565)
자녀연령												
영아	4.07	4.12	3.94	3.90	3.92	4.23	4.04	4.02	4.00	3.87	4.21	(519)
유아	3.89	3.97	3.88	3.84	3.90	4.09	3.93	3.89	3.84	3.77	4.18	(510)
초등자녀	3.81	3.86	3.82	3.71	3.75	3.96	3.82	3.94	3.81	3.78	4.03	(536)
F	9.015*** ^(a)	10.809***	2.124	4.431*	4.548*(a)	8.748***	5.284**	2.497(a)	4.775** ^(a)	1.333	5.48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4.02	3.91	3.95	3.83	3.93	4.13	3.87	3.92	3.80	3.76	4.21	(1,123)
홀벌이 가구	3.67	4.18	3.69	3.78	3.67	4.01	4.08	4.01	4.09	3.92	3.94	(435)
모두 근로 포함	3.17	4.29	3.17	3.67	3.50	3.33	4.33	4.00	3.71	3.33	3.50	(7)
F	21.734***	13.470***	12.933***	0.408	10.171***	3.844*	6.375**	1.291	12.329***	4.418*	14.67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11	4.32	3.61	3.92	3.89	3.93	3.92	3.96	4.15	3.88	4.18	(29)
201~300만원	3.92	4.28	3.88	3.87	3.80	4.12	4.01	4.07	3.98	4.00	4.16	(130)
301~400만원	3.83	4.00	3.87	3.93	3.89	4.13	4.00	3.93	3.98	3.87	4.08	(267)
401~500만원	3.82	3.96	3.83	3.72	3.80	4.02	3.87	3.90	3.83	3.75	4.00	(305)
501~600만원	3.98	3.97	3.94	3.85	3.89	4.10	3.91	3.99	3.83	3.83	4.18	(286)
601~700만원	3.98	3.91	3.88	3.77	3.96	4.15	3.95	3.95	3.89	3.79	4.20	(211)
701~800만원	3.96	3.91	3.89	3.77	3.78	4.11	3.89	3.86	3.74	3.62	4.15	(153)
801만원 이상	4.01	3.89	3.92	3.79	3.80	4.08	3.94	3.99	3.90	3.76	4.24	(184)
F	1.386	2.906**	0.664	1.045	0.747	0.473	0.455	0.697	1.388	1.746	1.633	

주: 1)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3〉 자녀돌봄의 어려움: 자녀구성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감작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출산 (사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하는 경우	임시직 임시 근무 또는 교육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전체	3.92	3.98	3.88	3.82	3.85	4.09	3.93	3.95	3.88	3.81	4.14	(1,565)
영아 기구	4.09	4.11	3.94	3.86	3.91	4.22	4.04	4.02	3.94	3.86	4.19	(347)
영유아자녀 기구	3.90	4.01	3.86	3.84	3.83	4.09	3.93	3.88	3.85	3.69	4.16	(385)
영유아+초등자녀 기구	3.87	3.90	3.87	3.78	3.84	4.05	3.89	3.97	3.87	3.83	4.10	(722)
중고등학생 자녀 기구	3.87	4.04	3.87	3.85	3.89	3.98	3.88	3.84	3.88	3.87	4.08	(103)
성인자녀 기구	4.00	3.69	3.45	3.33	3.50	3.58	4.00	4.08	4.00	3.73	4.15	(13)

주: 1) 자녀 구성에서 영아 자녀는 영아자녀만 1명 이상, 영유아 자녀는 영아와 유아 자녀 1명 이상 포함(유아만 1명 이상 포함), 영유아+초등자녀는 영유아 1명 이상+초등자녀 1명 이상(초등자녀만 1명 이상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성인자녀는 고졸 이상 자녀(만 18세 이상)가 최소 1명 이상인 경우 기준(이므로 (수)는 전체 사례수를 초과하며, 멀티 베네이므로 차이검증값 없음.

2)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4〉 자녀돌봄의 어려움: 양육 특성 전반

단위: 점, (명)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감작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사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임시적 근무 또는 교육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상시 혈연 돌봄인력 여부												
혈연 돌봄인력 있음	3.74	3.78	3.71	3.64	3.67	3.94	3.75	3.77	3.69	3.59	3.94	(766)
혈연 돌봄인력 없음	4.10	4.17	4.04	3.98	4.03	4.24	4.11	4.12	4.07	4.02	4.32	(799)
t	-7.136***	-8.361***	-6.698***	-6.456***	-7.143***	-5.758***	-6.543***	-7.247***	-7.423***	-8.409***	-7.995***	
상시 비혈연 돌봄인력 여부												
비혈연 돌봄인력 있음	3.58	3.60	3.62	3.58	3.63	3.79	3.58	3.67	3.59	3.60	3.75	(255)

구분	자녀가 주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이른 경우 아픈 경우 연장근로 휴일 근무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산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주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또는 교육 경우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비월연 돌봄인력 없음																
t	-5.830***	-6.584***	-4.620***	-3.888***	-3.864***	-4.805***	-5.524***	-4.754***	-5.070***	-3.556***	-6.528***						

주: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2-5〉 자녀돌봄의 어려움: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1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이른 경우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산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전체	4.02	3.91	3.95	3.83	3.93	4.13	3.87	3.92	3.80	3.76	4.21	(1,123)								
근로형태																					
둘다 전일제		4.04	3.90	3.97	3.84	3.92	4.13	3.83	3.92	3.80	3.73	4.24	(896)								
전일제+시간제		3.95	3.93	3.92	3.82	3.96	4.14	4.03	3.94	3.83	3.88	4.13	(220)								
둘다 시간제		3.86	3.86	3.17	3.57	3.29	3.57	4.00	3.43	3.67	3.67	3.86	(7)								
F		0.855	0.113	2.358	0.242(a)	1.608	1.129(a)	2.589	0.959	0.132	1.682	1.644									
재택근무 가능 여부																					
재택근무 가능		3.59	3.54	3.60	3.55	3.57	3.79	3.55	3.64	3.50	3.49	3.77	(290)								
재택근로 불가능		4.18	4.03	4.08	3.93	4.05	4.25	3.98	4.02	3.91	3.87	4.37	(833)								
t		-8.340***	-7.037***	-7.028***	-5.021***	-6.817***	-6.347***	-5.528***	-5.478***	-5.615***	-5.227***	-8.715***									

주: 1)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현재 재택근로 중이거나, 필요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준임.

2)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2-6〉 자녀돌봄의 어려움: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2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신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하는 일시적 근무 경우	임시직 또는 직업훈련 문을 닫은 경우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비전형적 시간대 근로가구											
주말근로 가구	4.03	3.94	3.97	3.89	3.94	4.16	3.89	3.95	3.82	3.78	4.23 (886)
휴일근로 가구	4.00	3.93	3.97	3.92	3.98	4.18	3.91	3.96	3.87	3.85	4.21 (639)
아간근로 가구	4.04	3.93	4.00	3.86	3.94	4.17	3.91	3.95	3.83	3.81	4.26 (831)
새벽근로 가구	3.96	3.91	3.94	3.94	3.94	4.16	3.90	3.92	3.83	3.82	4.13 (407)
교대제 근로 가구	3.90	3.87	3.87	3.89	3.88	4.08	3.82	3.89	3.77	3.80	4.04 (302)
이외 가구	3.83	3.72	3.73	3.55	3.73	3.90	3.61	3.69	3.59	3.53	3.93 (106)
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4.05	3.92	3.98	3.83	3.94	4.14	3.83	3.93	3.79	3.73	4.25 (754)
임시근로 가구	4.17	3.95	4.02	4.04	4.07	4.22	4.10	3.99	3.97	3.91	4.20 (133)
일용직근로 가구	3.50	3.25	3.70	3.33	3.55	3.82	3.87	3.63	3.43	3.78	4.00 (44)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가구	3.82	3.80	3.80	3.73	3.52	3.98	3.95	3.88	3.81	3.66	3.88 (4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구	3.92	3.91	3.86	3.84	3.91	4.08	3.84	3.92	3.85	3.87	4.15 (99)
기타 종사자 가구	3.83	3.88	3.82	3.68	3.83	4.09	3.81	3.91	3.78	3.79	4.15 (84)
이외 가구	3.80	3.40	4.00	3.75	4.40	4.40	3.40	3.80	4.00	4.20	4.40 (5)

주: 1) 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기타 종사가 가구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하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둘다 근로인원(N=7) 제외한 수치임. 멀티베너로 차이검증값 없음.
 2) 맞벌이 가구 중 비전형적 근로가구는 주말, 휴일, 아간, 새벽, 교대제 근로가구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연간 5회 이상 정도(3개월에 1회 정도) 일하는 경우이며, '이외 가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다 해당없음에 응답한 경우이며, 연간 해당 근로의 경향이 전혀 없는 경우임. 멀티베너로 차이검증값 없음.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7〉 자녀돌봄의 어려움: 영유아 자녀의 낮 시간 주양육자별

구분	단위: 점, (명)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간접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산후조리등)	가족을 돌보아주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어린이집 이용	4.03	4.08	3.93	3.89	3.93	4.18	4.03	3.95	3.93	3.83	4.27	(596)
유치원 이용	4.02	4.02	4.02	3.87	4.00	4.19	3.97	3.90	3.88	3.86	4.21	(197)
아외 반일제기관	3.58	3.71	3.47	3.82	3.75	3.54	3.44	3.67	3.73	3.69	3.91	(45)
비혈연인력	4.08	4.00	3.50	4.00	4.00	4.36	3.92	4.08	3.91	3.62	4.55	(13)
혈연인력	3.80	3.72	3.92	3.84	3.64	4.28	3.75	3.96	3.78	3.46	4.00	(25)
부모가 직접돌봄	3.88	4.13	3.88	3.82	3.79	4.19	4.05	4.12	4.01	3.87	3.96	(153)
F	2.387*	2.216(a)	2.894*	0.165	1.397(a)	3.559**	3.075**	1.747	0.746	1.049	4.121**	

주: 1) 반일제기관에는 영아유치원 또는 학원, 비혈연인력은 아이돌보미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혈연인력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해당됨.

2)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기타' 응답자 '0'명

4)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2-8〉 자녀돌봄의 어려움: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 유형별

구분	단위: 점, (명)											
	자녀가 아픈 경우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이른 출근 및 근무	출장	자녀 출산 (신혼조리등)	가족을 돌보아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수)
초등돌봄교실	3.93	3.88	3.93	3.82	3.83	4.04	3.80	3.95	3.79	3.76	4.09	(243)
지역아동센터	3.78	3.89	3.45	3.62	3.60	3.80	3.51	3.78	3.55	3.52	3.71	(46)
다함께돌봄센터	3.94	3.58	3.81	3.77	3.72	3.77	3.38	3.72	3.47	3.66	3.71	(32)
(사설) 학원	3.83	3.91	3.84	3.71	3.78	3.98	3.85	3.97	3.87	3.84	4.12	(279)
혈연인력	3.75	3.61	3.88	3.58	3.54	3.86	3.69	3.82	3.71	3.62	3.91	(109)
비혈연인력	3.87	3.70	3.68	3.48	3.35	3.61	3.53	3.84	3.59	3.59	4.19	(23)
기타	3.50	3.75	3.25	3.50	4.00	4.50	4.00	4.00	4.25	3.75	4.00	(4)
이용기관이나 인력 없음	3.72	4.03	3.80	3.89	3.79	4.04	4.13	4.11	4.06	3.88	3.98	(60)

주: 5점 평균은 '전혀 어렵지 않음' 1점 ~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긴급돌봄 사유별 돌봄 공백의 발생 빈도와 시간대

1) 돌봄 공백의 발생 빈도

긴급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각 사유별로 1주일에 한번 경험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출근으로 각각 5.7%와 7.8%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한달에 2~3회와 연간 3~4회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달에 1번 이하로 경험한 비율(1주일에 한번+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을 기준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가 47.6%, 갑작스러운 야근 41.2%, 이른 출근 또는 근로 38.5%,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로 33.7%,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25.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IV-2-9〉 긴급 사유별 발생 빈도

단위: %(명)

구분	1주일에 한번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두달에 1회	연간 3~4회	연간 1~2회	계(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5	20.6	24.5	16.9	24.5	11.0	100.0 (1,09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0	6.8	14.5	16.9	29.6	31.2	100.0 (1,139)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5.7	15.8	19.7	18.3	17.1	23.5	100.0 (1,040)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3.7	11.2	18.8	15.5	20.3	30.4	100.0 (978)
이른 출근 및 근무	7.8	14.6	16.1	13.4	19.7	28.4	100.0 (1,024)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2.9	9.1	13.0	11.8	16.4	46.7	100.0 (9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2.9	5.3	10.1	11.1	18.7	52.1	100.0 (895)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2	3.5	7.6	10.1	26.9	50.8	100.0 (1,176)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돌봄 공백의 시간대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대를 시작과 종료시각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바에 의하면, 이른 출근 및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오전 7시 12분으로 가장 이르고, 갑작스러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19시 46분으로 가장 늦은

시각으로 나타난다. 이들 시간대는 앞서 살펴본 틈새보육 시간대와는 달리 나타나서 별도의 추가적인 돌봄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표 IV-2-10〉 긴급 사유별 돌봄공백 시간대

단위: 시, 분, (명)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수)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8시 32분	16시 2분	(708)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8시 58분	16시 56분	(447)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15시 13분	19시 46분	(618)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9시 6분	16시 14분	(482)
이른 출근 및 근무	7시 12분	12시 26분	(531)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9시 35분	16시 15분	(351)
직업훈련 또는 교육	9시 54분	16시 10분	(262)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9시 36분	16시 44분	(263)

주: 1) 돌봄 공백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긴급 상황별로 자녀돌봄의 공백 발생 빈도가 ① 1주일에 한번 ② 한 달에 2~3회 ③ 한 달에 1회 ④ 두달에 1회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긴급돌봄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

긴급한 사유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 자녀를 돌봐줄 인력이나 기관이 있는지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긴급돌봄 제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위해 자녀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긴급돌봄 지원의 정책적 함의를 명료화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 지연, 경력 단절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가구 단위로 질문하였다. 긴급돌봄의 어려움은 자녀 출산이나 지연에 영향을 미쳐서 추가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7.3%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54.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54.4%,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경우가 53.0% 순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휴직 이후 복직 시기를 늦추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1〉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애로사항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44.4	55.6	100.0 (1,364)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 연장 및 반복을 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4	45.6	100.0 (1,335)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3.0	47.0	100.0 (1,331)
긴급돌봄이 쉽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33.2	66.8	100.0 (1,228)
긴급돌봄이 쉽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43.5	56.5	100.0 (1,286)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4.5	45.5	100.0 (1,322)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3	36.7	100.0 (1,364)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7.3	42.7	100.0 (1,297)
긴급돌봄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 (조부모 거주지 또는 선호하는 기관 인근 지역 등)	49.2	50.8	100.0 (1,313)

주: 세부 항목의 '해당사항 없음' 제외하고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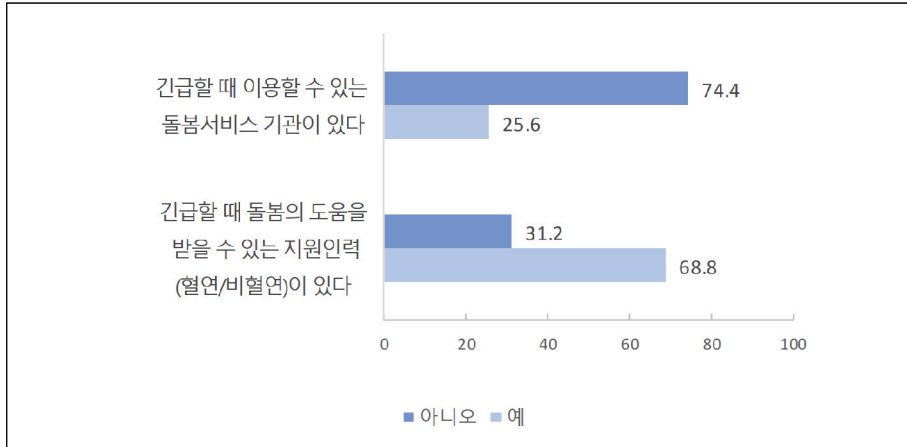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긴급돌봄의 대응 실태

응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시급하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인력은 68.8%인 반면, 돌봄서비스 기관은 25.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긴급돌봄은 주로 혈연 등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서비스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IV-3-1] 긴급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전체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주요 변인별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자녀 및 영아가구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25%선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긴급돌봄 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 밖에도 자녀가 3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는 긴급할 때 혈연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서 출생순위를 고려한 지원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표 IV-3-2〉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자녀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기관 있음	(수)
전체	68.8	25.6	(1,565)
자녀연령			
영아	72.1	26.0	(519)
유아	69.0	26.5	(510)
초등자녀	65.3	24.3	(536)
$\chi^2(df)$	5.639(2)	0.759(2)	
출생순위			
첫째자녀	69.9	24.2	(737)
둘째자녀	69.8	26.7	(689)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기관 있음	(수)
셋째자녀 이상	57.6	27.3	(139)
χ^2 (df)	8.908(2)*	1.474(2)	
자녀구성			
영아 가구	71.2	25.1	(347)
영유아자녀 가구	75.8	26.8	(385)
영유아+초등자녀 가구	65.7	24.8	(722)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	57.3	30.1	(103)
성인자녀 가구	53.8	23.1	(13)
χ^2 (df)	27.290(5)*** (b)	2.088(5)(b)	

주: 1) 자녀구성에서 영아 자녀는 영아자녀만 1명 이상, 영유아 자녀는 영아와 유아 자녀 1명 이상 포함(유아만 1명 이상 포함), 영유아+초등자녀는 영유아 1명 이상+초등자녀 1명 이상(초등자녀만 1명 이상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성인자녀는 고졸 이상 자녀(만 18세 이상)가 최소 1명 이상인 경우 기준이므로 자녀구성별 응답자수는 전체 사례수를 초과함.

2)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돌봄인력의 도움을 구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201~400만원 이하 가구와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읍면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21.9%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3-3〉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가구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 기관 있음	(수)
전체	68.8	25.6	(1,5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71.3	28.0	(1,123)
홀벌이 가구	61.8	19.3	(435)
모두 근로 안함	85.7	28.6	(7)
χ^2 (df)	14.080(2)**(b)	12.365(2)**	
거주지역			
대도시	73.5	28.8	(960)
중소도시	61.5	20.1	(468)
읍면지역	59.9	21.9	(137)
χ^2 (df)	26.636(2)***	13.472(2)**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긴급할 때 돌봄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돌봄서비스 기관 있음	(수)
200만원 이하	72.4	20.7	(29)
201~300만원	61.5	21.5	(130)
301~400만원	61.8	22.5	(267)
401~500만원	74.1	26.6	(305)
501~600만원	68.2	24.5	(286)
601~700만원	69.7	30.8	(211)
701~800만원	68.6	28.8	(153)
801만원 이상	74.5	25.0	(184)
χ^2 (df)	16.313(7)*	7.045(7)	

주: 1) 자녀 구성에서 영아 자녀는 영아 1명 또는 2명 이상, 영유아 자녀는 유아 자녀 1명 또는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영유아+ 초등자녀는 영유아 1명 이상과 초등자녀 1명 이상, 중고등학생 자녀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성인자녀는 고졸 이상 자녀(만 18세 이상)가 최소 1명 이상인 경우 기준임.

2)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4〉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 유무: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긴급할 때 자녀돌봄 지원인력 있음	긴급할 때 자녀돌봄 서비스 기관 있음	(수)
전체	71.3	28.0	(1,123)
근로형태			
둘다 전일제	73.4	27.9	(896)
전일제+시간제	61.8	28.6	(220)
둘다 시간제	100.0	14.3	(7)
χ^2 (df)	14.492(2)**(b)	0.701(2)	
비전형적 시간대 근로가구			
주말근로 가구	72.2	30.1	(886)
휴일근로 가구	72.1	31.8	(639)
야간근로 가구	72.3	29.2	(831)
새벽근로 가구	74.9	32.7	(407)
교대제 근로 가구	76.5	39.7	(302)
이외 가구	69.8	20.8	(106)
χ^2 (df)	13.313(6)*	61.632(6)***	

주: 1) 비전형적 근로가구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교대제 근로가구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 포함하며, 중복가구가 있으므로 가구별 응답자수는 전체 사례수를 초과함.

2)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현재 재택근로 중이거나, 필요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준임.

3) (b)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로는 비전형 근로시간대에 근로하는 가구에서 돌봄인력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둘다 시간제로 일하는 가구에서는 사례수가 제한적이나,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14.3%로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표 IV-3-4 참고).

4.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

긴급한 상황의 자녀돌봄 실태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심층면담 참여자를 통해 서비스 유형별 불만족사항 및 개선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가.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경우 돌봄 인력 및 기관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최근 1년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긴급 사유 전반에 걸쳐 부모의 직접 돌봄이 40~50% 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혈연이 20~30% 선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아이돌보미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등 비혈연인력과 초등돌봄교실 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대부분 5% 이하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에 부모가 직접 돌본 비율이 55.8%로 가장 높고, 아이돌보미에 비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활용한 비율이 소폭에 불과하나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이용한 비율은 2~3%선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률도 대부분의 긴급 사유에서 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표 IV-4-1〉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 시 돌봄인력 및 기관: 전체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55.8	31.4	2.0	2.7	2.8	1.8	0.4	0.0	0.6	0.6	0.6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47.4	31.3	2.0	4.9	3.4	4.3	1.1	0.9	0.7	0.2	0.4
갑작스러운 연장근로	44.8	30.3	2.8	4.2	6.5	3.9	0.5	1.8	0.5	0.8	1.8
긴급한 주말 또는 휴일 근무	45.6	32.8	4.1	4.8	3.9	0.4	0.4	0.8	1.9	0.8	1.2
이른 출근 및 근무	46.9	27.9	3.0	4.7	4.5	3.4	0.8	0.8	1.1	0.6	2.4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44.2	25.4	4.3	4.8	4.6	4.0	0.9	1.7	1.1	2.0	2.0
직업훈련 또는 교육	42.0	20.6	3.8	8.0	7.3	3.4	2.7	0.8	2.3	3.4	2.7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0.7	33.1	6.1	5.3	6.1	0.0	0.0	0.0	4.2	0.8	0.0

주: 1) ① 부모(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돌봄 ② 할양인력(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③ (공공) 아이돌봄비(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포함) ④ 민간 육아도우미 ⑤ 이웃 또는 지인 ⑥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영장보육/아간영장보육 등) ⑦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병과후과정 등) ⑧ 현재 이용 중인 초등학교(초등돌봄교실 등) ⑨ 지역아동센터 ⑩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기움센터 등 포함) ⑪ 기타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긴급한 경우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게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다함께돌봄센터 61.6%(3.77점),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 57.9%(3.53점), 현재 이용중인 어린이집 55.7%(3.53점), 지역아동센터 50.0%(3.4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이돌보미와 초등학교는 각각 47.6%(3.33점)와 46.1%(3.42점)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 이들 결과는 사례수의 제약으로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표 IV-4-2〉 긴급돌봄 지원인력 및 기관의 이용 만족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긴급돌봄 인력 및 서비스 기관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6.3	8.8	37.5	41.3	6.3	100.0 (80)	3.33
현 이용중인 어린이집	2.9	7.1	34.3	45.7	10.0	100.0 (70)	3.53
현 이용중인 유치원	0.0	10.5	31.6	52.6	5.3	100.0 (19)	3.53
현 이용중인 초등학교	0.0	7.7	46.2	42.3	3.8	100.0 (26)	3.42
지역아동센터	0.0	17.6	32.4	38.2	11.8	100.0 (34)	3.44
다함께돌봄센터	0.0	0.0	38.5	46.2	15.4	100.0 (26)	3.77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불만족사항 및 개선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례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가구에서 제기한 불만족사항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한 점과 돌봄활동의 전문성이 의문시되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용시간과 비용,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질,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언급되었다.

이하에서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 제기된 불만족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연령 구분 없이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질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고(어린이집 이용가구 1, 2), 유치원 이용 부모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담당교사 또는 원장의 퇴근으로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며(유치원 이용가구 1,2,3), 이외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유치원 이용가구 2).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부모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돌봄서비스 신청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신속하게 이용하기 어려우며(초등방과후 이용가구 2, 3), 초등학교에서 해당 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초등방과후 이용가구 2,3,4) 등이 불만족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부모는 시간제 보육 운영 어린이집 수가 적음(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2), 사전예약제로 사전 신청기간이 현재 한달로 미리 예약 완료 및 수요집중 시간에 예약 어려움(시간제보육 이용가구 2, 4), 긴급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비스기관에 자녀를 데려다 주어야 하는 불편함(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과 또래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 아동으로 인한 자녀 적응문제(시간제보육 이용가구 3)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신청 서류 항목이 많아 작성시간 부담(아이돌봄 일시연계 이용가구 3), 당일 예약시 신청 후 4시간 이후에 돌봄인력이 배정되므로 매우 긴급한 경우 이용하기 어려움, 매일 다른 돌봄인력이 배정됨(아이돌봄 일시연계 이용가구 2), 수익자 부담의 식비(아이돌봄 일시연계 이용가구 3)등이다.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 역시, 이용 아동수가 많아 이용기회 부족, 신청 절차 불편(예: 이용 아동의 건강상태 확인 절차, 즉, 아픈 자녀의 경우 병원진단서 발급 및 팩스로 제출 후 이용,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매칭이 되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하여 아이돌보미가 구해진 이후에 모바일로 신청, 16시 전후로 신청해야 함)(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2,3), 돌봄인력 미배정으로 주말 이용 어려움(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2) 등을 지적하였다.

5. 긴급돌봄 지원요구

긴급돌봄 사유별로 지원의 필요도와 선호하는 지원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아픈 자녀를 위한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가구특성별로 지원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 대상 심층면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긴급돌봄의 이용 의향 및 이유를 파악하였다.

가.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유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 기준으로 자녀가 아파서 등원 또는 등원하지 못한 경우가 57.9%로 가장 높고,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37.6%, 갑작스러운 야간근로 23.0%, 이용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16.9%,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근무해야 하는 경우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1〉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체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47.2	57.9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19.1	37.6
갑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9.3	23.0
(긴급)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8	16.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는 경우	4.9	14.2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3.3	10.0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2.0	8.2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7	7.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1.6	4.6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0.4	2.4
이용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4.7	16.9
기타	0.1	0.3
계(수)	100.0 (1,565)	(1,565)

주: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선호하는 긴급돌봄 지원방식 전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이 30~50%선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혈연인력을 제외하면, 소수이나 아이돌보미가 4.5%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비율이 13.4%,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비율은 8.1%로 이들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가 어린이집 등 기관돌봄 수요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를테면 갑작스럽게 이른 시각에 출근해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나지만, 정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합한 비율은 해당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가정내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긴급돌봄 지원의 방향성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표 IV-5-2〉 긴급한 상황에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 1순위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혈연 인력	정부지원 아이 돌봄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 또는 지인	현 이용 어린이집	현 이용 유치원	현 이용 초등학교	지역내 돌봄기관	기타	해당 사항 없음	계(수)
1.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57.8	25.0	4.5	2.4	1.6	4.3	1.1	1.4	0.3	0.1	1.5	100.0 (1,565)
2.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아간근로 등)	44.9	26.6	5.8	4.0	3.2	6.5	0.6	1.7	1.3	0.4	5.0	100.0 (1,565)
3.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49.6	26.8	5.4	3.5	3.5	2.2	0.1	1.1	1.7	0.1	6.1	100.0 (1,565)
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43.7	24.7	5.3	4.0	5.1	6.1	1.3	1.9	2.1	0.1	5.8	100.0 (1,565)
5.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귀외출장 등)	43.5	31.1	4.9	3.6	2.5	2.4	0.3	0.9	1.6	0.0	9.2	100.0 (1,565)
6. 자녀를 출산한 경우	38.5	32.9	5.2	3.7	2.1	2.2	0.3	1.0	1.8	0.0	12.4	100.0 (1,565)
7.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44.0	24.6	5.9	3.1	2.5	4.8	1.2	2.0	2.6	0.1	9.3	100.0 (1,565)
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36.8	23.5	5.6	4.0	3.4	5.9	1.3	2.7	2.2	0.1	14.4	100.0 (1,565)
9.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37.1	24.1	5.8	3.0	2.8	6.0	1.0	3.0	2.6	0.1	14.6	100.0 (1,565)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5-3〉 긴급한 상황에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 1+2순위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혈연 인력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도우 미	이웃 또는 지인	현 이용 어린이집	현 이용 유치원	현 이용 초등학교	지역내 돌봄기관	기타	해당 사항 없음	계(수)
1.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74.8	67.5	13.4	8.1	10.9	9.6	2.6	4.5	2.9	0.6	1.5	100.0 (1,565)
2.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아간근로 등)	62.5	60.8	14.4	11.2	14.9	11.9	2.3	3.7	5.2	1.5	5.0	100.0 (1,565)
3.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65.8	64.0	14.3	10.5	13.9	6.1	1.1	3.1	6.1	1.0	6.1	100.0 (1,565)
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61.0	58.3	13.7	10.8	15.7	11.9	2.9	5.0	6.0	1.4	5.8	100.0 (1,565)
5.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국외출장등)	61.4	64.7	14.2	10.4	12.3	6.6	1.4	3.0	5.4	0.5	9.2	100.0 (1,565)
6. 자녀를 출산한 경우	56.9	63.2	15.2	11.9	9.4	7.2	1.5	2.7	5.2	0.3	12.4	100.0 (1,565)
7.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돌봐야하는 경우	59.8	57.4	16.0	10.1	11.9	9.4	2.8	4.2	7.2	0.5	9.3	100.0 (1,565)
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51.4	54.0	14.8	10.4	11.7	11.1	2.8	5.2	7.5	0.6	14.4	100.0 (1,565)
9.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51.8	53.8	14.6	9.8	10.9	11.1	2.4	5.4	8.6	0.6	14.6	100.0 (1,565)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 아픈 자녀 대상 선호하는 긴급돌봄 지원방식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긴급돌봄 방식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용 중인 기관내 돌봄공간’이 평균 3.66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2.95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2.92점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표 IV-5-4〉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도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내 돌봄 공간	6.4	9.1	21.3	39.1	24.2	100.0 (1,565)	3.66
의료기관 내 돌봄시설	15.1	18.7	34.7	22.1	9.4	100.0 (1,565)	2.92
가정 파견 전문 돌봄인력	15.0	19.6	31.2	23.8	10.3	100.0 (1,565)	2.95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17.8	21.6	31.0	22.4	7.2	100.0 (1,565)	2.79

주: 1) 5점 평균은 선호도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3) 부모 등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경우의 선호하는 양육방식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이들 선호는 가구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영아 및 유아자녀의 경우는 이
용기관내 돌봄공간과 가정파견 전문인력에 대한 선호가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자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요를 보여서 영유아 자녀에게 우선적
인 지원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수요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며, 단, 읍면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돌봄서비스 전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5-5〉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양육방식: 가구특성별

단위: 점, (명)

구분	이용기관내 돌봄 공간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수)
전체	3.66	2.92	2.95	2.79	(1,565)
자녀연령					
영아	3.74	2.97	3.08	2.86	(519)
유아	3.75	2.98	3.00	2.80	(510)
초등자녀	3.49	2.82	2.77	2.72	(536)
F	9.204*** ^(a)	3.098*	9.073***	1.954	

구분	이용기관내 돌봄 공간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가정파견 전문 돌봄인력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수)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가구	3.70	2.93	2.96	2.82	(1,123)
홀벌이 가구	3.55	2.89	2.92	2.74	(435)
모두 근로 안함	3.71	3.43	2.29	2.43	(7)
F	2.670	0.797	1.268	0.914	
거주지역					
대도시	3.65	2.99	3.04	2.89	(960)
중소도시	3.68	2.79	2.82	2.70	(468)
읍면지역	3.60	2.86	2.74	2.48	(137)
F	0.246(a)	4.611*(a)	7.902***	9.327***	

주: 1) 5점 평균은 선호도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a)는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한편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관련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상위 10% 응답률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 필요시 즉각 지원, 상시 운영, 전문 돌봄인력과 서비스 질이 보장된 기관, 정보 접근성 제고, 지리적 접근성 제고 등이 제기되었다.

〈표 IV-5-6〉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하는 긴급돌봄 관련 이외 지원 요구사항

단위: %(명)

구분(상위10위)	비율(수)
신청 절차 간소화 요망	7.5 (118)
필요/신청 즉시 지원 요망	4.6 (72)
상시(24시) 지원 요망	4.5 (70)
(긴급)돌봄 휴가제 의무적 시행 요망	3.5 (55)
전문 돌봄 및 간호 인력 확충	3.5 (54)
신뢰/검증된 인력.센터 연계 요망	3.3 (52)
관련 제도/서비스 홍보 요망	2.7 (43)
긴급 의료/돌봄서비스 확대 요망	2.6 (40)
각 지역별 돌봄 시설 확대 요망	2.4 (37)
자격요건 완화 요망	2.2 (34)

주: 해당 문항의 응답자(1,173명) 중에서 상위 10위 응답결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율은 응답 건수 기준임.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라. 긴급돌봄 지원대상 범위 및 원칙에 관한 의견

1) 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한부모가족과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각각 평균 3.92점과 3.88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 중인 기관에서 긴급돌봄 지원3.80점, 어린 아동 우선지원 3.72점 순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 IV-5-7〉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원칙의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주양육자 돌봄이 힘든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 지원 원칙에 대한 동의 수준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이용기관의 긴급돌봄 제공	4.7	7.1	19.7	40.9	27.6	100.0 (1,565)	3.80	
맞벌이 가구 우선 지원	3.6	5.4	22.9	35.5	32.7	100.0 (1,565)	3.88	
한부모 가구 우선 지원	3.0	6.4	21.1	34.8	34.8	100.0 (1,565)	3.92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5.2	7.5	28.8	33.6	24.9	100.0 (1,565)	3.66	
어린 아동 우선 지원	3.6	8.1	27.2	34.9	26.2	100.0 (1,565)	3.72	
긴급돌봄 신청자 일괄 지원 (긴급돌봄 사유 무관)	5.6	9.3	25.3	28.8	31.0	100.0 (1,565)	3.70	
긴급돌봄 지원 한도 설정 (연간 최대 일수)	8.0	11.4	27.2	30.5	22.9	100.0 (1,565)	3.49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 지원 ↑)	8.0	10.8	29.9	30.2	21.2	100.0 (1,565)	3.46	

주: 1)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지원대상 아동연령 범위

긴급돌봄의 지원범위에 대해 각 아동 연령별로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13~35개월까지의 영아 자녀가 4.1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 자녀(3~5세) 4.13점, 0~12개월까지의 영아 자녀 4.0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 4~6학년은 2.87점으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여서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5-8〉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아동 연령대별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긴급돌봄 지원대상 아동 범위(연령)에 대한 인식					계(수)	5점 평균
	낮음	←	→	높음			
	①	②	③	④	⑤		
영아 자녀(0~12개월)	3.8	6.4	15.1	26.6	48.0	100.0 (1,565)	4.09
영아 자녀(13~35개월)	1.7	4.2	15.3	33.7	45.1	100.0 (1,565)	4.16
유아 자녀(만 3~5세)	1.2	3.4	18.0	35.8	41.7	100.0 (1,565)	4.13
초등 1~3학년	2.7	9.8	29.0	34.7	23.8	100.0 (1,565)	3.67
초등 4~6학년	13.4	21.3	37.7	20.4	7.2	100.0 (1,565)	2.87

주: 1) 5점 평균은 '낮음' 1점 ~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이용 중인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이 연구의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혼합연령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이용 의향이 있는 혼합연령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의향이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혼합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다.

먼저, 혼합연령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부모들은 만5세와 같이 높은 연령의 유아와 초등학생 전 연령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 이용가구 1,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연계 이용가구 2, 초등방과후 이용가구 2). 이는 저출산에 따른 외동자녀에게 형제자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어린이집 이용가구 1), 강원도 군 지역에서와 같이 일부 돌봄서비스 정원이 적은 지역에 유용하다고(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면담한 부모들 중 혼합연령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부모들이 혼합연령 긴급돌봄을 선호하는 부모들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많았으며, 주로 어린 연령대의 자녀와 여야를 둔 부모들을 포함하였다. 부모들은 만4세 이하 어린 연령의 자녀가 익숙하지 않은 돌봄 환경에서 높은 연령의 아동과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어렵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 연령일수록 발달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어린이집 이용가구2, 유치원 이용가구

1, 2; 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2,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 또한 특히 여자 아이에 대해서는 성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학년과 분리되기를 선호하였다(초등방과후 이용가구 3). 일부 유치원 부모는 1~2세, 2~5세, 6~7세로 연령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비슷한 연령대로 정서적 유대감이 조성되어 돌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유에서였다(유치원 이용가구 3).

마.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 의향 및 개선요구

현행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긴급한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 의향 및 사유

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유로 불가피한 주말 근로에 유용하며, 가정으로 방문하므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가정에서 돌봄 제공으로 엄마와 같은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 등이 제시되었다(어린이집 이용가구 3; 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2).

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대부분의 면담한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가정방문 돌봄이라는 점을 선호하며,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돌봄으로 자녀에게 안정적(어린이집 이용가구 2), 저렴한 비용(어린이집 이용가구 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4), 돌봄 인력의 확실한 신원(초등방과후 이용가구 1), 두자녀 이상을 함께 돌봄(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예기치 못한 야근 일정으로 인한 가정돌봄 필요(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등이 주된 사유로 파악되었다.

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와 동시에 아픈 경우 장소 이동없이 편안한 가정에서 휴식 및 돌보기 위해서가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어린이집 이용가구 1, 2, 3, 4; 유치원 이용가구 2,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 또한 아픈 자녀가 등원시 다른

아동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일시연계 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질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하며(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또한 미등원으로 인한 돌봄 비용 혜택을 얻고자 하였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

라) 공동육아나눔터

집 근처에 위치하여 동일지역 아동들과 교류가 가능하고(어린이집 이용가구 1), 자주 이용하는 경우 부모간의 친분이 생겨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것(유치원 이용가구 2)이라는 점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육아의 어려운 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마)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면담한 부모들은 주변에 도별로 이용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돌봄의 측면에서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시돌봄과 정기돌봄을 모두 신청 가능하며(어린이집 이용가구 1),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저렴한 이용비용(간식비 포함하여 월5만원)(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등하원서비스 이용가능(시간제보육 이용가구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학기 중(저녁 8시까지 이용가능)(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및 방학 중 운영시간이 달라서 이용하기 용이함(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등이 부모들의 이용 의사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유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 초등돌봄교실 및 학교돌봄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면담한 부모들은 학교환경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어린이집 이용가구 2; 시간제보육 이용가구 4;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또래친구들과 다양한 활동 가능(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장시간의 저녁돌봄 이용(22시까지)(시간제보육 이용가구 3), 연령별 구분하여 운영 및 자녀의 학습활동 가능(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등의 장점에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한 부모들 중 맞벌이 가구와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더 이상 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돌봄인력을 확충하여 석식 제공 및 늦은 시간까지 안전한 학교에 자녀를 맡기기를 보다 희망하였다(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은 질병 시기에도 학습 활동이 일부 가능하다고 기대되어 선호하였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또한 초등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돌봄터를 선호하였으며, 이는 익숙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유치원 이용가구 1).

2)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

이상의 다양한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면담한 부모들의 개선요구를 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② 서비스 이용비용, ③ 서비스 이용시간, ④ 돌봄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⑤ 돌봄 환경(안전, 청결, 위생 등), ⑥ 집과의 거리(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완화(1시간당 1만원 이하로 책정 희망)(어린이집 이용가구 4), 돌봄인력의 충원 및 다양한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어린이집 이용가구 1, 4).

유치원의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모바일 어플 등을 활용한 신청 편의성 제고(유치원 이용가구 3, 4),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유치원 이용가구 4), 돌봄인력, 돌봄시설 환경(사진자료)과 급간식 및 프로그램 등 제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유치원 이용가구 1, 2, 3, 4).

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서비스의 경우, 대기자가 많으므로 수용 아동인원 확대, 대기 순번에 대한 정보 제공(알림톡),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도 신청가능 하도록 하고(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이용비용 부담 완화 및 식비 지원(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3;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긴급 시 5시간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

구 3), 방학 중 저녁돌봄 제공, 차량지원 및 근접한 거리에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4). 또한 충분한 도서 구비, 돌봄공간 내의 화장실 및 휴식 공간(누울 수 있는 소파 등) 구비, 간식 종류 다양화 등, 돌봄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다양하였다(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긴급돌봄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청 절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유선 보다는 앱 등으로 실시간 연동하여 신청절차 간편화, 당일 신청시간 연장(현재 3시에서 5시로), 예약 기간 단축(현재 한 달에서 2주 혹은 10일 전에 예약 변경), 이용시간을 30분 단위로 변경(현재 1시간 단위) 등이다(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2, 3, 4). 또한 9시 이전, 18시 이후 및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시간제보육 이용가구 1). 신원이 확실한 돌봄인력 및 원장, 교사, 부모가 참여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다원적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고(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1, 3, 4). 아동의 연령격차를 고려하여 18개월 이전, 이후로 분리하여 돌봄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3). 무엇보다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시간제보육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1, 2).

아이돌봄서비스(일시연계)의 경우, 실시간 예약 확인 시스템, 신청서류 간소화, 최소 1시간 이전 신청으로 변경(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 3, 4), 이용비용 부담 완화(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시간 연장(현재의 2시간을 8시~20시 이용 희망)(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돌봄인력의 체계적 교육 이수 및 돌봄인력 풀 확충(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3, 4)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파악되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는 실시간 예약확인 시스템, 환아 신청서류 사후 제출로 절차 변경(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 2), 장시간 이용시 비용 완화(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3),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조율해서 이용(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돌봄인력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 절차 필요하며, 최소한의 교육 이수, 돌봄인력 확충 및 정보 공개(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1, 2, 3), 신청즉시 인력 배정(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3), 차량지원 서비스 제공(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가구 2) 등이 제기되었다.

〈표 IV-5-9〉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 요약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과후 돌봄서비스 /학교돌봄터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연계)	질병감염이동지원서비스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	- 진화 신청보다 아플 활성화 - 신청과정 체계화 (병원예약 어플처럼 하나의 앱으로 다양 하게 선택사용)	- 대기 순번에 대한 정보 제공(알림톡) - 수용 아동인원 확대 - 고학년도 신청가능 하도록	- 절차 간편화(우선연락 보다는 앱 등으로 실시 간 연동) - 당일 신청시간 연장 (현재 3시부터 5시로) - 예약기간 단축(2주 혹은 10일전에 예약)	- 실시간 예약 확인 시스템 - 신청서류 정보 간소화 - 최소 1시간 이전 신청 으로 변경 필요	- 실시간 예약 확인 시스템 - 환자 신청서류 사후 제출로 절차 변경
2. 서비스 이용비용	비용 부담 완화 (시간당 민원 이나로 책정 희망)	저렴한 비용 희망	이용비용 인하 및 식비 지원	-	비용 부담 완화	장시간 이용 시 비용 부담 완화(현재 10시간씩 3일 /15~16만원)
3. 서비스 이용시간	최소 오후 6시 까지	이용시간 연장	-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2시30분까지)/긴급 시 5시간 이상가능 하도록 - 방학 중 저녁돌봄	- 이용시간이 30분 단위 (현재 1시간단위) - 9시전, 18시후 이용 및 주말이용 지원	공통육아나눔터 이용시간 연장(현재의 2시간 → 8시~20시 이용 희망	-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조율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4. 돌봄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 돌봄인력 충원 - 프로그램 진행 (돌봄시간에 TV 시청 등 지양)	- 돌봄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 프로그램 보완 및 장보 제공(아이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과목이 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 돌봄인력 배치 신원 확실한 인력	- 체계적 돌봄교육 이수 필요 - 돌봄인력풀 확충	- 자질과 전문성 검증 절차 필요 - 최소한의 교육이수 - 일시연계 이용한 부모의 리부 활성화 - 돌봄인력 확충 - 돌봄인력 정보 공개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학교돌봄터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5. 돌봄 환경 (안전, 정결, 위생 등)	-	- 돌봄 환경에 대한 사전 피드백 - 긴급돌봄 공간식 등 관련 정보 공개	- 충분한 도서 구비 (주로 보드게임 위주) 및 다양한 활동 - 돌봄공간 내의 화장실 및 휴식 공간(누울 수 있는 소파 등) 마련 - 간식 종류 다양화 및 음식물알레르기 확인	- 돌봄이동 연령 격차 완화 (6~18개월, 18~35개월) - 영아를 위한 분유 구비 - 18개월 이전, 이후로 연령 분리	-	-
6. 집과의 거리 (지리적 접근성)	-	- 인접한 거리에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확대	- 차량지원 및 근접한 거리에 시설 확대	- 근거리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	-	- 전주변 서비스 위치 - 차량지원서비스
7. 기타	- 교육적인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 희망		- 긴급하게 돌봄 신청시 공간식 제공 필요	-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운영 및 공간식 제공		- 신청 즉시 인력배정

자료: 이 연구의 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긴급돌봄 수요 및 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돌봄의 제도화는 단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율과 여성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긴급돌봄의 제도화는 자녀 출산의 포기 및 지연을 예방하고,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산과 노동시간 참여 및 경력유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 하에서 자녀 돌봄은 영아 자녀, 저소득층,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들 가구는 긴급돌봄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고려할만하다. 영아자녀는 가정내 양육가구의 비율이 높아서 주양육자가 돌보기 힘든 상황 등에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어린자녀에 대해 긴급돌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맡아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저소득층가구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제도의 이용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한 정도는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부모 모두 전일제 상시근로자이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가구에서 긴급돌봄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이들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긴급돌봄 지원대상 연령으로는 영유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긴급 사유에 따라 초등저학년 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돌봄의 아동 연령대별 필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필요도는 5점 척도에서 2.87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영유아는 평균 4점대

의 높은 수요를 보였다. 초등1~3학년은 평균 3.67점으로 나타나서 이들은 긴급 사유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단, 초등 고학년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자녀가 아픈 경우’는 가장 주요한 긴급돌봄 사유로 파악되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제도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1번 이상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자녀가 아픈 경우’는 47.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긴급돌봄 지원 사유에서도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지원방식은 부모 선호도를 반영하여 다양화가 요구된다.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이용 중인 기관내의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파견 전문 돌봄 인력,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순으로 다양한 수요를 보였다. 게다가 영아자녀는 가정파견, 초등자녀는 의료기관내 돌봄시설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긴급돌봄 사유는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홀벌이 가구를 포괄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맞벌이 가구는 이용 중인 기관의 휴원,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이른 출근, 출장 등에 따른 수요가 높은 반면, 홀벌이가구는 가족 간병, 임시직이나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에서 높은 수요가 나타나므로 이들 사유를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긴급돌봄의 지원방식은 방향성 측면에서 부모의 직접돌봄이 선결 과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요구된다. 긴급 사유별로 선호하는 지원방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는 모든 사유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나,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선호를 합한 수요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노동 등으로 인해 장시간 동안 자녀를 기관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기피와 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여섯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약 20%대로 나타나지만, 희망하는 등·하원시각 또는 시작 및 종료시각은 법정 운영시간 내여서 이들 틈새보육 수요와 긴급돌봄 수요는 면밀하게 구분된다. 이

를테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희망하는 등원시각은 평균 8시 25분이고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오후 6시 20분으로 조사되어 현행 어린이집 운영시간(7:30~19:30)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적인 틈새보육의 대응은 서비스 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준수임을 확인시켜준다. 단,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구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 높고, 이용시간에 불만족한 가구의 희망하는 종료시각은 최대 오후 8시 18분으로 나타나서 일부 기관에서 돌봄의 틈새가 우려된다.

다른 한편 긴급돌봄 수요는 현행 돌봄서비스 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범위를 초과하므로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로 운영시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한 사유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간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이른 시작시각은 이른 출근을 위한 오전 7시 12분, 가장 늦은 종료시각은 갑작스러운 야간근로를 위한 오후 7시 46분으로 나타나서 어린이집의 경우 법정 운영시간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반영하면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신청 및 이용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급간식 지원 등이 제기되었으므로 서비스 기관별로 현행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 방향성 측면에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혼합연령반의 형성 기준으로 유아와 초등자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아동과 영아를 함께 돌보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공급자 조사

- 01 시간제보육서비스
- 0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 03 아이돌봄서비스
- 04 다함께돌봄센터
- 05 지역아동센터
- 06 소결

V.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 공급자 조사

제5장에서는 긴급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의 운영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아 대상의 시간제보육시설,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및 초등자녀 대상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시간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시간제보육기관 1, 2)과 어린이집 원장(시간제보육기관 3, 4) 각 2인씩 총 4인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때 조사대상은 서비스 공급자 유형 즉,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고르게 배분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수요를 파악하고자 읍면지역 소재 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표 V-1-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시간제보육시설

구분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	인력 (상근)	긴급돌봄서비스 및 이용아동	지역규모	소재지
시간제 보육기관1	육아종합 지원센터	20명	시간제교사 2명, 4시간보조교사 2명(4명)	일평균 20명	대도시	서울
시간제 보육기관2	육아종합 지원센터	3명	2명(1명)	-	대도시	서울
시간제 보육기관3	가정 어린이집	16명	7명(7명)	연장보육 일7~8명 야간연장보육 일7~8명	중소도시	강원
시간제 보육기관4	국공립 어린이집	54명	23명(15명)	연장보육 34명 야간연장보육 11명	중소도시	경기

이하에서는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구에서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세부 운영사항, 운영상의 어려움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긴급돌봄 지원 관련 운영관리

시간제보육반은 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확인), 가정 및 제공기관의 알림장 작성, 일별 및 월별 안전체크리스트 작성, 투약의뢰서 및 투약확인서 작성, 사고, 감염병 발생 시 발생 보고서 작성, 등·하원 시 이용대장(인계 관련) 확인 후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시간제보육기관1). 부모 대상으로 기관의 홈페이지, sns 게재, 서면 배부 등이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시간제보육기관1).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는 신입아동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등·하원 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센터 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리플렛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기관4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데, 서비스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이용가구가 직접 예약하고 해당 일에 어린이집 방문(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하여 이용하고 있다. 당일 예약인 경우 유선(시도 시간제관리기관)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시간 연장도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 시간 20분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는 이용 아동에게 이유식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는 영아의 안전을 위해 매일 급식(이유식 등)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보조교사가 하루에 4시간을 함께 보육하고 있다.

나.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시간제보육기관1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적응 기간 없이 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재이용 시에는 적응 기간이 다시 필요하고, 아동별 식사, 낮잠 등 개별아동의 요구가 모두 달라서 일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보육아동의 월령 차이로 인해 보육프로그램을 운영에도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 부모가 예약한 시간보다 초과로 이용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초과하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2)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개선요구

가) 보조인력 지원 강화

시간제보육반의 돌봄 인력에 대하여 돌봄 인력의 순환적 근무 및 사무를 위한 돌봄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고(법정휴게시간 및 보육일지 작성 등을 위한 필수시간 보장), 5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갖춘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시간제보육기관2의 경우에도 보조교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현재는 수입금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수입금으로 만으로는 단시간 동안만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여서 미배치 시간대에 1명의 시간제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5분~10분정도 일찍 오신 부모님의 경우 다른 영아가 귀가 할 때까지 시간제보육실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보조교사가 없는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힘든 점도 제기되었다(시간제보육기관2).

시간제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하루에 4시간 쓰고 있거든요.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신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가 왔을 때 받아줄 수 있겠죠.(시간제보육기관2)

저희도 (시간제보육반)이 두 개 반여서 한 달에 총 200건 가까이 아이들이 오거든요.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와서 저희도 자체 보조교사를 채용하였는데, 보조교사 인건비는 운영비의 50% 이상 지출을 못해서....(시간제보육기관4)

시간제보육의 경우도 학급수에 따라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100%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시간제보육기관4)

나) 시간제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강화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는 9시~18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이용아동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제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다음 날의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고정적인) 내 반, 내 교실, 내 아이들이 아니고 매번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매일 바뀌고 매일 적응을 시켜야 되고, 이 아이 적응 좀 시켜놓으면 다른 새로운 아이가 오고, 그게 반복이니까...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시간제보육기관4)

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개선

현행 시간제보육의 아동 대 교사 비율(1:3)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이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아는 12개월 이전 영아들이므로 계속 안아주거나 이유식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여서 보육교사 1인이 3명의 영아를 돌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려되었다(시간제보육기관2).

라) 서비스 이용자격 강화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는 실수요자인 긴급한 수요를 지닌 부모가 시간제보육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격 및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특히 매번 종일 동안 이용하는 아동으로 인해 다양한 영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시간제보육기관2).

엄마가 복직을 하셔서 맡기기 시작하셨는데, 저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놨는데 아직 안 되었다는 라는 이유로 맡기고 계시니까 정말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좀 생기거든요.(시간제보육기관2)

저희도 마찬가지로 7시간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중략)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는 어린이집에 장시간 맡기기 부담스러워서 오후 3시 이후 부터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는 긴급보육 수요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시간제보육기관2)

마) 낮은 지리적 접근성

현재 시간제보육은 가까운 곳의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없으나 시간제보육 장소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종종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시간제보육기관2).

바) 홍보자료 활용성 제고

시간제보육 관련 부모교육 자료가 리플레 등의 형식으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정부에서 제공되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제기되었다(시간제보육기관2).

다. 서비스 연계 실태

시간제보육기관의 경우는 타 서비스와 연계한 경험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하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근의 정원 충족 미달 어린이집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시간제보육기관1에서는 인근의 연계 기관에 대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연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기관4에서는 긴급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 또는 원활한 연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하였다.

라.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긴급돌봄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으로 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1) 이용자격 기준 마련 및 증빙서류 제출

시간제보육이 긴급돌봄 수요에 보다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관련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서 시간제보육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시에 긴급보육 필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시간제보육기관1).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도 긴급돌봄에 대한 증빙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제보육기관2에서는 현재 시간제보육의 이용가구의 주된 사유로서 1) 어린이집 보내기 전의 기관 적응 2) 부모의 여가시간 3) 어린이집 대기기간 중 이용 4) 부모교육 이수시간 이용 5) 조부모의 양육시간에 이용 등을 들었다.

2) 시간제보육기관 유형별 역할 재정립과 업무추진체계 명료화

현재 시간제보육기관의 확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강점을 부각하여 그 역할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즉,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일시보육은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하고, 예기치 않은 긴급한 수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7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도 관리를 하라 당일 예약 전화도 받으라 보육도 하느라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관리자 하고 교사하고 두 분 인데... 어린이집에서 당일 예약은 현장 예약 안 되고 무조건 센터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중략) 정말로 긴급한 돌봄은 센터 쪽에서 맡고, 일반적인 시간제보육은 기간을 늘려서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면 어떨런지....(시간제보육기관4)

3)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세분화

현재 시간제보육기관은 6~35개월 아동을 함께 보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발달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6~18개월과 19~35개월로 반을 구성하고,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전자는 1:2, 후자는 현행과 같이 1:3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시간제보육반예) 6~36개월까지 영아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6~18개월과 19~35개월 아동의 교사 비율을 나누면 어떨지...(시간제보육기관4)

4) 급간식 운영기준 정교화

시간제보육 이용가구에서 급식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위해서는 급식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급간식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보조금과 별개로 전액 부모 자부담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엄마들이 긴급하다고 하니깐 저희가 처음(2016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상의 하에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지를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연장 급간식 비용에 산정해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급식비가 지원되면서 운영비 정산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제보육반 애들 재료만 시켜서 따로 조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군구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면 시간제보육반에서는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어요.(시간제보육기관4)

부모 자부담으로 급식을 제공하려면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급식비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올려서 1일 급식 단가를 어느 기준 이상 지출하였다는 정산서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비용 안에 시간제보육 아동의 비용도 포함되어 버리거든요.(시간제보육기관4)

5) 보조인력 지원기준 신설

보조교사의 배치에 대한 수요는 참여기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이용 건수가 제안되었으나(시간제보육기관4), 이에 대해 읍면지역에 소재한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수가 적어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용아동수가 안정적인 정규과정과는 달리 시간 단위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 개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보조교사 지원기준을 1개 반 2개 반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처럼 건수로 하거나, 그것도 힘들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개 반을 운영을 3년을 했어요, 1개 반 운영할 때 최대 130건까지 해봤어요). 한 달에 그뎨 제가 결재랑 확정 처리를 제가 다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시간제보육기관4)

군 단위나 읍 단위에서는 시간제보육반은 있으나, 보육반에 예약이 없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이죠.(시간제보육기관3)

12시부터 1시까지와 5시부터 6시까지는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을 시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부터 (교사를) 쓰면 적어도 6시간을 써야 되는데 수입료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4시간 밖에 못 쓰니까 저녁에는 자주 저희 직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시간제 보육기관2)

6) 운영시간 다양화: 야간거점형 시간제보육기관 지정기준 마련

현재 시간제보육기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므로 오후 6시 이후에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약이 있는 실정이나, 운영시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시간의 확대는 시간제보육기관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시간제보육교사의 채용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거점형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오후 6시 이후의 돌봄 수요는 해당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거점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현재 야간연장보육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제보육기관3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아동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예상된다.

저희 원의 시간제보육 아동 1명이 가끔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야간연장보육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랑 다 잘 놀고 있거든요.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을 연장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시간제보육기관3).

오후 7시 반 8시까지 시간제보육을 운영해야 한다면 거점 지역의 거점어린이집 교사의 수급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두 분이어서 당직처럼 돌린다, 그러면 오토이 두 분이 하셔야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시간제보육기관4)

7)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단위 통합정보체계 구축

정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보육하기 힘든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인근의 타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기관4에서는 여석이 있는 인근의 시간제보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어린이집에 제공되어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저희(국공립어린이집)가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원이 다 찼을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여석이 있는 어린이집을 그 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해 주기는 힘들다고...(시간제보육기관4)

2.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을 운영 중인 원장 4인(유치원 원장 및 원감 1, 2, 3, 4)과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 4인(어린이집 원장 1, 2, 3, 4)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시설유형과 지역을 고르게 배분하되,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및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V-2-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	인력 (상근)	긴급돌봄서비스 및 이용아동	지역규모	소재지
유치원원장1	사립법인	118명	21명(21명)	아침돌봄 약20명 방과후과정 99명	대도시	서울
유치원원장2	사립	93명	8명(8명)	아침돌봄 10명 방과후과정 91명 저녁돌봄 30명	중소도시	경기
유치원원장3	공립병설	42명	10명(10명)	아침돌봄 10명 방과후과정 42명 저녁돌봄 26명	읍면	경북
유치원원장4	공립병설	76명	10명(10명)	아침돌봄 15명 방과후과정 76명 저녁돌봄 26명(방학중 49명)	읍면	경북
어린이집1	국공립	72명	19명(19명)	연장보육 40명 야간연장보육 5명	읍면	경기
어린이집2	가정	17명	9명(9명)	연장보육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3	민간	30명	12명(12명)	연장보육(5명)	대도시	서울
어린이집4	민간	40명	10명(10명)	야간연장보육 4명 시간제보육 42명	대도시	서울

이하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을 이용 중이나, 16시 이후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유치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용 중이나, 방과후돌봄 운영시간대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들 가구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과 어려움 및 개선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가. 어린이집

1) 긴급돌봄 지원 관련 운영관리

가) 긴급돌봄 신청 및 이용 절차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은 다양한 알림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선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며, 이는 부모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보육활동에도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합한 방식으로 파악된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급한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는 데 더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연락을 할 때에는 그냥 평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던 방법대로 저희 전화라든지 키즈 노트라든지 그냥 이 방법으로 써도 방해되지 않고 저희가 아이들 결석을 할 때에도 원 운영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면 그걸로 안내가 되는 거와 같이 모든 연락망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어린이집2)

나) 긴급돌봄 담당 교사

긴급하게 추가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순환제로 운영되는 당직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집4에서와 같이 당직교사의 근무시간을 통상적으로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에 걸쳐 운영하는 경우는 이른 등원과 늦은 하원시간대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담임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긴급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이제 당직을 하지 않아도 당직을 일단 스케줄을 짜놔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저희 야간연장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영아반 1대 7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직교사가 배치가 돼서 당직 교사 순대로.... 대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날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한다면 아니면 여러 인센티브를 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어린이집4)

2)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가) 담당 인력의 부족

연장보육반 정원이 충족된 어린이집1과 2에서는 기본보육 아동을 16시 이후에 긴급하게 보육하려면 저녁 당직교사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당일 안내를 받은 해당

교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3에서는 연장보육을 긴급하게 이용하는 아동이 된 기본보육 등록아동이 19시 30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수요는 해당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이용기관의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거점형 어린이집으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장반 제도에 영아반과 유아반 정원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개반을 운영하는데, 모두 정원을 충족한 상황이에요. 긴급돌봄(아동)이 추가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넘 어갈 수 없는 상황 인데..., 영아반이면 1 대 7이 넘어간단, 이 경우는 담임교사가 당직이 들어가고...(어린이집1)

저희는 야간연장은 안 하고 연장보육만 운영하고 있는데,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중에도 시간을 오버해서 많이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오후) 7시 반 이후에 오셔야 되는 부득이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나요. (중략) 보조교사도 모두 퇴근하고 없는 상태이고, 연장보육 선생 님 한 분이 보육하고 있는 중에 (긴급돌봄) 요청이 오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렇다고 거점 형 어린이집이 그렇게 촘촘히 있지는 않아요.(어린이집3)

나) 긴급돌봄 대응의 어려움

어린이집3에서는 영아반에 한하여 연장보육을 운영하나, 긴급돌봄 아동이 유아인 경우는 해당 학급에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 탄력편성 기준 이외 별도의 혼합연령반 운영 기준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아반 대상으로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 부모님들이 긴급돌봄을 요청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경우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중략) 이제 유아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데 유아 담당 교사는 없는데 긴급(돌봄)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아주 좀 난감 해요.(어린이집3)

다) 석식 제공 기준 미비

어린이집1에서는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당일에 긴급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었다. 긴급돌봄 시에는 기본적으로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석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대여서 대응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저희가 야간연장 아동이 5명이 있고 그 5명에 대한 석식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일에 긴급돌봄을 요청을 했을 때는 석식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 원칙은 긴급돌봄을 요청하더라도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어린이집1)

라)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긴급돌봄 대응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1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모내기, 농번기 또는 특수작물 재배의 경우는 해당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을 위한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데, 해당 수요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충족할 수 없다고 우려된다. 긴급돌봄의 지원체계는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면 단위로 들어가면 한창 모내기하거나 수확해야 할 때 그리고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지역 특성을 (정부지원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어린이집1)

마) 긴급보육의 아동인계 기준 미비

긴급돌봄 아동을 인계해야 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양육자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거론하였으므로(어린이집3), 현행 아동인계에 관한 규사항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덧붙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도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안전에 대해서 아동 인계에 대해서는.. 이혼가정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인계하는 경우 안전에 대해서 아동인계 과정가 좀 애매 모호할 때가 있어요.(어린이집3)

3) 서비스 연계 실태

면답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는 이용가구의 긴급돌봄을 타 서비스로 연계한 경험 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어린이집은 감염병 등의 우려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할 경우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모에게 안내한 경험도 없는 상황여서 타 서비스와의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가) 초과수당 지원

어린이집 원장2는 연장보육의 정원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녁 당직교사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 경우 초과수당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긴급하게 발생하는 야간연장보육 수요를 거점어린이집을 통해 대응하는 데 참여기관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어린이집3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차량지원이나 아동을 인솔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하였다.

거점어린이집 연계를 통한 (긴급돌봄) 대응은 가능하고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동할 때에 교통수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대에 또 통학 차량도 운행이 마친 시간이고, 부모님이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한 동에 저희 같으면 이제 저희 동에 1개 정도는 1개 원 정도는 거점형이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어린이집3)

다) 지리적 접근성 제고

긴급돌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야간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연계하는 방안과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아동을 보육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지역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돌봄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어린이집 밀집지역의 경우는 권역별 거점어린이집 지정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린이집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재원중인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1) 권역별 거점 어린이집 지정 및 요건

어린이집원장3은 긴급돌봄 제공3린이집의 접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 단위 기준으로 최소 1개원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거점형이라 서로 원원하면서 만일 저희가 다 못 보는 상황이라면 거점형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도 되고 저희가 야간연장이니까 그러지 않은 데에서는 와도 되고...(후략) (어린이집4)

쌍둥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평소 돌봐준 선생님을 구하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쌍둥이 경우는 힘드니까 너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긴급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봐주셨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니까...(중략)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의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주변의 거점형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근거리를 묶어주셔야 되고...(후략) (어린이집4)

(2) 긴급보육 대응을 위한 연장보육전담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시간 확대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는 등 추가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긴급돌봄을 위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예요. 이 시간을 6시간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어린이집3)

긴급돌봄을 위한 신규 교사 또는 보조교사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교사가 연장근무를 했을 때 급료를 지원해서 급할 때 보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어린이집4)

(3) 읍면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의무화 및 지원기준 마련

읍면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적고, 아동이 밀집되어 거주하지 않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거점어린이집을 지정한다고 해도 해당 어린이집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어린이집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 단위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군 단위 이하 면으로 내려오면 모든 돌봄서비스 기관이 전반적으로 없어요. 저희는 경기도 내에 3개 남은 군 단위이기도 하고, 면 단위로 내려오면 국공립어린이집 밖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든 수요를 해결해야 하고 군 단위 면 단위로 내려오면 사실은 원아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정원을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면 단위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게 해 달라 예요. (중략) 농촌지역으로 가면 야간연장도 이용아동이 없어서 야간연장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중략) 아동 한명 이상을 긴급돌봄 하기 위해 교사 한명을 채용했을 때는 100% 인건비 지원과 100% 4대 보험 지원이 필요하고...(어린이집1)

라) 긴급돌봄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1에서는 긴급돌봄 지정 어린이집에서 담당교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호봉이 반영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긴급돌봄) 담당교사는 보육시간을 4시간 기준으로 앞뒤로 조율할 수 있다 라는 조건으로 호봉을 인정받는 교사로 지원을 해줘야 훨씬 더 원활하게 교사 채용이 가능하고 원 운영도 가능하죠.(어린이집1)

마) 긴급돌봄 담당교사 대상 재교육

어린이집4에서는 긴급돌봄 지정기관의 담당교사는 긴급돌봄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재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아든 유아든 새로운 환경의 낯선 아이들, 특히 거점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주변의 거점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면 (교사) 능력이 요구되겠죠. 교사한테 내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타 원의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경우니까 또 연령도 다양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어린이집4)

나. 유치원

1) 긴급돌봄 지원 관련 운영관리

가) 신청 및 이용 절차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전화로 부모가 신청하고,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유치원1). 이들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입학 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유치원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든지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이 아이들을 따로 특별하게 보줄 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돌봄 아동을 해당 연령의 종일반에 편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도 약간 받는 거고, 간식비랑 이런 걸 포함해서...(유치원1)

긴급한 때는 전화가 가장 많이 와요. 본인도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e-알리미는 앱이 있기는 해도 앱을 설치해야 하고, 가정통신은 사실 엄마들이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e-알리미로 신청을 하면 우리도 기관에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문자

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는 키즈노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유치원1)

전화로 신청할 수 없는 시간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출퇴근 전후의 시간들이 어머님들은 제일 긴박하고 그때 연락이 안 될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토모 노트를 쓰고 있고 그 토모 노트 알리미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주고 있으면 실시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머님들이 몇 시간 연장을 하세요.(유치원2)

나) 반 배정 및 이용료

유치원1에서는 방과후과정을 신청하지 않는 아동이 긴급하게 돌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 방과후과정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고 방학 기간 중에서 방과후과정에 편입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이용료는 학기 중에는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기준으로 7,000원이고, 방학 기간 중에는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하루 기준으로 1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간식을 제공한다.(유치원1) 유치원1은 유치원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모두 원비 안정화를 위한 상한액에 반영하게 되므로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긴급돌봄을 제도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다) 담당 인력

유치원1에서는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가 돌아가면서 오후 7시 까지 원아들을 담당하고, 담임교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서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들 교사가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오후 7시까지는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덜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교사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아동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원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혼자 남아 있어서 되게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사실 방과후 교사들이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보는데 돌아가면서 순회에서. 그게 사립이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정담임 교사들이 아침과 저녁에 당직을 서요.(유치원1)

라) 아동 인계

유치원1에 의하면, 긴급돌봄 아동의 부모 인계는 방과후과정 아동과 마찬가지로 당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어려움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누가 데려갔는지 보통 귀가할 때 방과후과정 애들이 귀가할 때 누가 데려가는지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할 거기 때문에 (긴급돌봄) 이동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차량의 경우는 사립은 지금도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통학버스를 등하원 때. 종일반도 일부 시간대는 운영을 하는 데 차량을 이용하는 앱이 있어요.(유치원1)

2)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가) 긴급돌봄의 신청 시기 규제 강화

유치원1에서는 하원차량이 출발한 이후에 긴급돌봄을 요청하는 부모가 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차가 떠나는데 전화하면 정말 당황스럽지만 그냥 받는 거죠. 저희가 1시간 전에 연락을 하 시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의 긴급한 상황은 그냥 본인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 기 때문에 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도 (연락이) 와요.(유치원1)

나) 정원 초과 시 긴급돌봄 아동의 반 배정의 어려움

오후 7시 까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1에서는 이후 시간대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19시 이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 인력은 최소한 보육교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종일반의 정원을 충족한 경우는 긴급돌봄 아동이 속한 연령에 배정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경우 아동 배정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유치원1).

문제가 지금 모든 유치원이 아마 그럴 텐데... 종일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략) 애들이 지금 최대치로 종일반 5개 반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일반에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종일반 아이가 가고자 하는 연령의 종일반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종일반도 문제가 되고 이 아이를 다른 연령반에 보낸다고 했을 때, 부모가 오케이를 하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사정은 딱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되는 거라서...(후략)(유치원1)

다) 석식 제공의 어려움

유치원3에서는 아침돌봄을 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19시 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석식을 제공하기 힘들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저희는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아침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간식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오는 거 맞이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오후 제가 왔을 때 17시 까지 했는데 17시 아니고 19시, 19시 까지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녁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중략) 오후 7시 까지...겨울에는 배가 고픈데도 저녁을 못 주고 그냥 돌봐주는 정도여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밥을 하거나 간식을 직접 하거나 조리하는 게 유치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유치원3)

라) 담당인력 부족 및 안전사고 우려

유치원3과 4는 늦은 오후시간대에 긴급돌봄 아동을 교사 1명이 돌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전 때문에 안전벨 같은 게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 혼자 계시는 상황 밖에 안 되니까 안전벨을 한다든지 또 귀가할 때 저희가 확인하고 7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다른 사실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또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또 젊은 여성선생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중략) 다른 보조인력이 있다든지 사실 한 명이 있는 것보다는 두 명 있는 게 낫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다 귀가할 때까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유치원3)

아침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30분을 돌봄하고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7시까지는 돌봄 시간제 선생님이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데... (중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놀봄학교라 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인력이 많이 지원되는데 지금 사실은 현재는 유치원 1명이 7시까지 지금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유치원4)

3) 서비스 연계 실태

면담에 참여한 유치원에서는 원아의 긴급돌봄을 위해 다른 유치원과 연계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단, 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3에서는 지역 특성상 지역아동센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이들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군 지역에서는 1~2개 학급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여서 거점 유치원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저희 작은 면 단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된 곳들이 많아요. 저희도 두 곳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다 지역아동센터로 4시 반 이후에는 거기서 와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그렇게 되는 자리 잡고 있는 추세예요. (중략) 시골은 병설에는 한 학급이 있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저희 유치원까지 만약 저희 유치원이 거점 유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유치원3)

4)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가) 아동 출결 및 안전귀가를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유치원1과 3에서는 긴급돌봄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출결시스템을 지원하여 서류상 부담과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부모들이 앱에 다 연결돼 있어서 애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와서 유치원에 도착하면 부모들한테 누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눌러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중략) 해당 기관에 이렇게 뭔가 앱으로 개발해서 연결을 시키면, 안전 문제는 서로 전화하고 확인할 거 없이 잘 도착했다는 걸 확인하는 차량을 이용한다면 되는 것 같고, (중략) 부모가 데려갔던 학원이 데려갔던 다른 센터가 데려갔던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고요.(유치원1)

차량 아니어도 가방에 부착하면 이렇게 알림 되는 것도 있어요.(유치원3)

나)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선 전담인력의 경우는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등 자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유치원1, 2).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2에서는 아동의 측면에서 이용 중인 유치원이 긴급돌봄 인프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군 지역에서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긴급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하기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되었으나, 급여수준 등이 채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유치원4). 또한 긴급돌봄 전담교사의 자격 측면에서 국공립유치원의 경

우는 유치원 정교사만이 담당할 수 있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하였다(유치원3).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관에서 인력을 돌봄을 할 수 있는 풀이 형성되고 그 인력풀이 기관으로 지원되고 그 기관에서 지원되어서 아이가 있던 장소에서 안전하게 그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외 기관을 지속적으로 별도의 기관을 마련을 하고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곳에 갔을 때에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돌봄을 하고 있는 담당자의 우리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후략) (유치원2)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유치원에서 교사가 남아서 긴급을 돌봐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립에서는 하든 아니면 그 시간에 배정되어서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긴급 교사가 있잖아요 그게 사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안정성 있게 돌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유치원2)

저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유치원 자격 이상인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도요. 근데 지역 특성상 돌봄 시간이 3시부터 7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대에 좀 하려고 하는 인력이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유치원4)

시간제 기간제 교사 해보니까 일단 봉급적인 면 시간 4시간이어서 저희는 저 시골이기 때문에 예천보다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급여가 된다면 그래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런데 교사가 2급 정교사 이상은 되는 교사가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유치원3)

한편 유치원2에서는 보조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노인인력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보육교사 자격과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시고 긴급돌봄으로 들어오셔서 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력이 부족하고 없어요. (중략) 유치원으로 배정되는 하모니 선생님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 중에서도 이렇게 능력적인 부분에 개인차가 심하기는 했고....좀 검증되고 인정된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오셔서 보조인력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유치원2)

다) 온종일돌봄 유치원의 거점 지정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거점 유치원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온종일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서비스 운영시간은 물론이고,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유치원1).

기존에 온종일돌봄을 하는 유치원을 당연히 우선순위로 두는 게...(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은) 이미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거기를 당연히 (야간긴급돌봄의) 우선순위로...(후략) (유치원1)

라) 졸업생 대상 초등방과후 긴급돌봄 지원

유치원2에서는 졸업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방과후돌봄이 어려워서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졸업생에 한하여 초등자녀의 긴급돌봄을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치원에서 종일반 3년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졸업은 했지만 1년간만 좀 맡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략)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아 수가 적어서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유휴)교실이 생기게 된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졸업생들에 한해서 한 반을 방과후로 운영해도 운영적인 부분이나 학부모의 요구나 졸업생의 안전 부분에서 선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유치원2)

마)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방식 차별화

군 지역의 경우는 면 단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1~2개소에 불과하므로 이들 간의 연계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반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유치원3).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늦은 등교와 이른 하교로 인해 이외 시간대에는 보안상 관리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였다(유치원3).

3. 아이돌봄서비스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담당자(팀장급) 총 3인(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1, 2, 3)이 참여하였으며, 참여기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3-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구분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	인력 (상근)	긴급돌봄서비스 및 이용아동	지역규모	소재지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1	가족센터	275가구	6명(6명)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도시	서울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2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 지원센터)	-	-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중소도시	전북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3	가족센터	1,062명	282명(0명)	일시연계 12명 질병감염아동지원 41명	중소도시	경기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긴급돌봄 수요로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지원과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 서비스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를 위주로 파악하였다.

가. 서비스 운영관리

1) 긴급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 매칭

소속 아이돌보미 중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에 활동이 가능한 아이돌보미로 배정되는 운영방식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만을 위한 상시인력은 없으며,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서 이용자의 일시연계서비스 요청 확인이 가능하며, 돌봄 요청이 오면 10분 내로 수락한 후 일시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신청하므로 아이돌보미가 연계 거절 또는 연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2에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단가가 일시연계서비스에 비해 높아서 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저희는 일시연계 서비스 시스템에 의한 실적이 좀 낮다 보니까 그냥 수기로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선생님들이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했을 때 수당이 조금 더 붙으니까 그나마 그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시기는 해요....(후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한편 긴급돌봄을 전담하는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무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이들에게 기본금을 보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보장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우려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아이돌보미) 본인이 긴급돌봄을 전담하겠다고 해서 매달 30만 원씩은 가지고 가면서 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러면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긴급돌봄 전담인력) 운영에는 찬성하지는 않아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2) 서비스 제공내용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상연락처 확인, 성인 보호자에게 아동을 인계하며 그 날의 활동사항을 메모, 문자, 전화, 활동일지 등을 통해 전달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또한 질병감염아동의 경우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돌봄 대상 건강 및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유선으로 서비스 안내 및 아이돌보미 정보를 제공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3) 아이돌보미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에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이용하게 된 가구에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과 상충되는 경우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저희는 (아이돌보미 대상) 자체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빠짐없이 이수를 한다고 하면 1년에 12시간 14시간 이상은 이수를 해요. 근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결과를 받은 것 중에...(중략) 어머니에게 시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 교육을 잘 시켜놨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이용자들은 이제 불만스러워 한다고 하는 데 저희는 그런 민원은 기본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후략)(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4) 부모 대상 정보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안내하고,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일시연계서비스 앱 활용 방법 별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

나.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가) 이용자격 기준 미비로 인한 실수요자 접근성 보장 미흡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¹에서는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긴급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경우는 대기 가점 순으로 아이돌보미를 배정받아야 하는 데,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시연계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나)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

긴급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 매칭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아이돌보미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운 상황여서 체력적인 어려움,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10분 내에 수락하기가 어려워서 연계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아이돌보미가 최저시급에 최단시간 근로를 위해서 이동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음,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정기적인 활동 중이라 추가 활동에 한계가 있음, 긴급돌봄 신청 시간이 등하원시간과 겹쳐져서 현재 활동 중인 일정과 맞지 않음 등이 언급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¹).

다) 안전사고 등 책임성 문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수락 후 진행되는 서비스이지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¹).

2) 개선요구

가) 일시연계 신청 관련 업무관리시스템의 효율화

긴급돌봄을 부모가 신청하였으나, 아이돌보미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결과적으로 일시연계 서비스의 매칭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신청 및 매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저희는 규모는 굉장히 크고 건수며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은데 일시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늘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수락을 빨리빨리 못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시스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일시연계 서비스를 하겠다는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면 좋는데... (중략) 내가 지금 갑자기 일이 있어 생겨서 다른 아이가 아프다던가 그래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저희가 수기로 연계를 해주는데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저희는 일시연계 이용 건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일시연계를 통해서 며칠 이용해 보신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시연계 제도가 좀 악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몇 건 안 되지만 계속해서 같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10분 내에 수락을 했을 때 안 되니까 다른 선생님이 했을 때 또 안 되고 신청을 할 때 5분만해도 1시간이 다 간다. 그러니 내가 이걸 하겠냐 센터에 전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돌봄 활동 중에 핸드폰 보지 말라 그러면서 그럼 그거 어떻게 들여다보고 확인을 하느냐 라고 해서 이게 같은 문제로 둘 다 불평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나)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 간병인은 아니지만, 질병 특성과 아동이 질병 감염 시 발생하는 증상과 돌봄 활동 시 주의사항(투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때 간혹 나오는 불만사항이 일시연계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간을 때우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중략) 이렇게 긴급 일시 연결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원가 서비스가 만족하지도 않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잠깐 이 시간을 그냥 때우려고 오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돌보미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다) 긴급돌봄 이용가구의 이용 수칙 준수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에서는 긴급하게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신청 가구가 서비스 이용 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즉,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아이돌보미는 가사활동이 불가하고 돌봄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우선 또는 문자로 안내하다 보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안내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서비스 등을 요청할 시에 거절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모가 이용 수칙을 숙지하는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라) 유경험가구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기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정의 정보가 적은 편이라 홍보 등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마) 질병감염아동 대상 서비스 범위 명료화

질병감염아동 대상 서비스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제외되어 있는 병원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가 가정 내이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초과근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성 측면에서 입원한 아동에 대한 돌봄은 힘들다고 인식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장시간이 연속되는 거...(후략)(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병원을 가게 되면 간병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 관련 교육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잘못 먹이는 경우도 나오고, 아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돌보미 선생님도 케어를 제대로 못하고...(후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다. 서비스 연계 실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¹에서는 일시연계서비스의 매칭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외 서비스와 연계한 경험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련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인근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도 제약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갈등, 사고 등 발생 시에 사실관계 확인은 이용가정 관할 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별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자의 관리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단적으로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교육 등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운영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응이 우려하였다. 무엇보다 지역별 자체 예산이 포함되어 다른 지역의 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고, 아이돌보미의 근태 및 급여 즉, 법정수당 산정 등이 복잡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에서는 인근 연계를 진행하던 센터에서도 현재는 중단하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지자체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보조금을 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 활동 수당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이용자에게 쓴 거는 우리가 급여를 제공을 해주지만 그 외에 수당 다른 수당은 원래 기관에서 속해 있는 원래 기관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중략)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침은 해냈지만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서로 복잡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후략)(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저희는 구비 예산도 일부 있는데 그 구비가 이제 다른 구로 연계되면서 이제 타 구랑 또 이렇게 예산이 좀 꼬여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센터에서도 이제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종합적으로 비슷한 사유인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한편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가 미비하여 제약이 크다고 우려하였다. 단, 초등자녀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접

근성을 제고한 경험이 언급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홍보를 할 때 정말 많이 섭외를 해요. 홍보 물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배부 부탁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원에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 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을 할 때 그때 저희 보고 와서 설명을 하라, 기관에서 저희가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만약에 (원으로 설명회 등을 위해) 출장을 가면 당연히 출장비는 지급을 받아야겠지만, 그게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주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주 업무는 사실 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돌봄비 관리 이용자 관리 매칭하고 이런 건데 그 설명을 위해서 가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모를까, 그게 매주 몇 번씩 가야 된다면... (후략)(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저희는 초등학생 이용 인원이 좀 적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담스럽고 아니까...이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학교에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이용하라고 그때 신청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중략) 어린이집도 1년 내내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학부모 교육할 때 부모교육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조율하여 하루에 두세 군데를 쫓 돌러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라.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1) 긴급돌봄 전담인력풀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일시연계서비스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서비스 매칭을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해당 인력풀의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돌보미의 고용상 지위 및 노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말 긴급을 보내려 하면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대기는 30가정 40가정이 있는데 이 분들은 긴급만 보내야 되니까 정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뭘아 되는 게 담당자로서 되게 난감해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2) 민간 육아도우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에서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예정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전담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지정을 허용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매칭하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3)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개선

일시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부모가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긴급하게 매칭한 서비스를 수기로 처리하지 않고 실시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개편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

4)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초등자녀에게도 유용하므로 교육부와 협력하여 정보 제공 등 협력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³).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기관을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24시간 동안 또는 질병감염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또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해당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²).

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인 3인(우리동네키움센터 1, 2, 다함께돌봄센터 3)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참여기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기관은 서울 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표 V-4-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다함께돌봄센터

구분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	인력 (상근)	긴급돌봄서비스 및 이용아동	지역규모	소재지
다함께돌봄센터1	우리동네키움센터	32명	8명(3명)	영유아 이용가구 없음	대도시	서울
다함께돌봄센터2	우리동네키움센터	30명	9명(3명)	영유아 이용가구 없음	대도시	서울
다함께돌봄센터3	다함께돌봄센터	22명	3명(2명)	영유아 이용가구 3명	읍면	충북

이하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 특성과 긴급돌봄 요청시 해당 아동의 출결관리 등 서비스 운영관리, 긴급돌봄 시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등에 관한 운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 서울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는 일반형이 참여하였으며, 일시돌봄을 위해 20%를 배정하고 있는 등 차별화된 운영 사항에 주목하였다.

가. 서비스 운영관리

1) 이용아동 자격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의 규정에 따라 일시돌봄을 위한 아동을 위해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2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초등자녀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소재한 다함께돌봄센터3에서는 정원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긴급하게 돌보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정기돌봄이 25명, 일시돌봄은 그것의 20% 정도예요. 평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3명 기준으로 일시돌봄을 이용하고 있어요. 방학은 보통 5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하면, 다른 아이가 12시부터 6시까지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통 8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1)

영유아는 저희가 매뉴얼 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거나 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 대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입학 전 아이들은 받지 않기로 해서 영유아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2)

저희는 20% 기준은 없어요. 저희는 군청 관할이라, 군청에서 일시돌봄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세요.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22명이 초과됐을 때는 일시돌봄으로 아이들을 받아요. 영유아가 3명, 여기가 농촌 지역이라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 형제가 다니고 있으면 유치원 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가 3명이 등록되어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3)

등록은 되어 있는데 가끔 와요. 일주일에 1-2번 와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받아도 정원 22명이 차지 않을 때가 있어서 볼 수가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3)

2) 돌봄 인력 현황

서울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3인 즉, 센터장 1인, 돌봄교사 2명(사회복지사1, 2급, 유치원 정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아들은 각각 사회복지 보수교육 연 8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연간 6시간,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연간 25시간을 이수하였으며, 일시돌봄을 위한 전담 인력은 없어서 이들 3인이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다함께돌봄센터1).

다함께돌봄센터2(우리동네키움센터)는 상시 인력 총 3인 이고, 1인은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2급, 어린이집원장, 간호사 자격을 지니고, 나머지 2인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신청 및 이용 절차

서울 지역의 우리동네키움포털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승인하고 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기준으로 2,500원 이다(다함께돌봄센터1). 또한 미등록가구에서 유치원 재원 중인 쌍둥이형제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보호자가 병원에 가는 경우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다함께돌봄센터3).

4) 아동의 출결관리 및 활동

일반적으로 아동의 출결은 등원 시 아동카드를 등록하면 학부모님께 등원 및 하원 문자 전송, 서비스 신청 전 아동 등하원 정보 자세히 기재 후 기재된 사항으로

아동 하원 시킴, 부정확한 경우 다시 보호자와 통화 후 하원하고 있다(다함께돌봄센터1). 안심등원서비스(1~2학년 하교 후 픽업서비스), 전자출결관리시스템(부모에게 등하원 문자발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다함께돌봄센터2).

전자출결과 우리동네키움포털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번호를 주면 그 카드에 있는 번호를 등록하면 그 아이가 찍으면 그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게 되어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1)

또한 다함께돌봄센터2에서는 긴급돌봄 시 당일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선 신청프로그램 이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긴급돌봄 아동 지도의 어려움

일시돌봄 아동의 특성을 잘 몰라서 아동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외부활동 시에 일시돌봄 아동들은 규칙을 잘 몰라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담당교사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언급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_우리동네키움센터1).

또한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긴급한 상황에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져서 아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귀가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다함께돌봄센터2).

2) 혼합연령 돌봄의 어려움

협소한 장소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므로 이용아동의 연령폭이 큰 경우 프로그램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3).

문제는 그 아이들(영유아)이 왔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도 안 통해요.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어요. 공간이 구분 되어 있지 않아요. 소리를 크게 한다면 하면 프로그램 하던 언니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다함께돌봄센터3)

전일제 돌봄교사 1인이 프로그램 활동 시 아이들 전체를 통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저학년 또는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기도 하지

만 영유아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고, 1개의 공간일 경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3).

그 밖에도 서비스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시돌봄 정원이 5명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8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다함께돌봄센터1).

3) 영유아 돌봄을 위한 보육환경 미비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학령기 아동 위주이므로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별도의 보육실 등 보육환경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여서 영유아 발달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또한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실과 교구교재 등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2).

공간 뿐만 아니라 놀이도 연령과 맞아야 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1~6학년에 맞춰서 보드게임, 교구세팅을 해놓는 상태라서 영유아 아이들이 왔을 때 흥미를 갖고 놀 수 있는 게 있느냐...(후략)(다함께돌봄센터2)

또한 다함께돌봄센터3에서는 현재 영유아 또는 미등록 아동의 긴급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므로 영유아를 긴급한 상황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영아전담 돌봄교사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고용하거나 지역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4) 급간식 제공의 어려움

긴급돌봄 아동은 필요한 시간에 왔다가 하원함에 따라 이들 아동을 위한 간식을 따로 여러번 챙겨야 하고, 이들의 규모가 급간식의 여유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1).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조리사가 따로 있지 않고 그 시간까지 선생님 1명이 라고 하면 아이돌봄을 하셔야지 석식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점심도 도시락 업체와 연계해서 먹고 있는데 1~2명 먹게 됐을 때 배달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1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을 8~9시까지 있을 때 저녁을 안 먹이고 데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다함께돌봄센터1)

5) 안전사고 대응 미비

긴급하게 등록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게 아동이 활동 중에 센터 내에서 다쳐 상처가 나거나 넘어져서 골절된 경우는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3). 다른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긴급돌봄 아동의 경우도 서비스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1).

일단 교사가 센터장인 저와 전일제교사 1명 총 2명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런데 긴급돌봄 요청하는 어머니가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등록된 아이들만 혜택이 있는 거라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유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보겠습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좋으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받았고...(후략)(다함께돌봄센터3)

저희는 보험을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어요. 25명의 명단을 주는 게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30명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30명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명단을 따로 드리거나 하지 않고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공제회에서 드는 종합보험이에요. 다함께돌봄 종합보험..(다함께돌봄센터1)

또한 안전 귀가의 측면에서 서비스 신청 시에 하원 방법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여러 번 보호자에게 확인하고 챙겨야 하거나 신청 시간과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시간대별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다함께돌봄센터1).

6) 신청 방식 개선

일시돌봄의 인원이 5명인데, 2주전에 신청할 수 있어서 일시돌봄을 정기돌봄처럼 이용하는 양육자로 인해 정작 당일 필요한 양육자(아동)는 잔여 인원이 부족하여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다함께돌봄센터2).

7) 돌봄 인력 부족

같은 시간 대 같은 공간에서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전담 인력배치를 하기에는 어려우며, 단, 추가인력이 배치된다면 질 높은 돌

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1). 또한 긴급돌봄 시 아동들의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1).

다. 서비스 연계 실태

서울지역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원이 불가능인 경우는 인근 센터(융합형, 일반형)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동 거리 및 이동 방법의 부재 등으로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다함께돌봄센터1).

본 기관에서 연계하더라도 보호자가 연계되는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므로 서비스 연계 시는 연계 기관에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1). 또한 인근지역의 서비스 욕구와 연계가능 기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조정자가 있으면 좀더 원활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해당 업무가 융합형키움센터 센터장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우려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1). 그 밖에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 혹은 동행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1).

라.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1) 긴급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돌봄인력은 현재처럼 사회복지, 아동관련 자격이면 되지만 오랫동안 현장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전에 재교육이 필요하며, 재교육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식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2).

2) 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접근성 보장

긴급돌봄의 지리적 접근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거점 기관은 최소 면 단위에 한 개소가 필요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3).

면 지역에는 1개씩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는 이외 돌봄센터가 없어요. 면과 면의 거리가 자동차로 20-30분 거리.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면 단위에 1개씩은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점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 읍내에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다함께돌봄센터3)

3) 신청 시스템 개선 및 통합정보 제공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시돌봄 정원의 별도로 배정하여 운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2).

또한 부모가 인근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석식 제공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부모 안내가 필요하다(다함께돌봄센터3).

저희 센터는 이용아동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는 신청을 2주 전에 할 수 있어요. 일시돌봄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오늘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자리가 찰 것 같으니까 2주 전에 신청해요. 센터마다 한 달 이용 횟수를 정할 수 있어서 8회라고 지정해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매번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저는 긴급하게 오늘 돌봄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다함께돌봄센터2)

부모님들이 그 기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저녁 제공 여부, 기본적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안내를 했는데 저녁을 안 주면 나중에는 도움을 정작 못 받으니까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다함께돌봄센터1)

4) 영유아돌봄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영유아 대상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전담교사가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대는 15시~19시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다함께돌봄센터3). 또한 학령기 아동과 분리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실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하다(다함께돌봄센터3).

5) 서비스 연계를 위한 차량지원

아동돌봄서비스 기관과의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소재한 다함께돌봄센터3에서는 서비스 연계 및 하원지도를 위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다른 기관은 (오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는 차가 없어요. 센터의 차가 없어서 그 아이를 본인의 자가용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부탁할 때를 대비해서 작은 차라도 센터의 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다함께돌봄센터3)

5.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3인(지역아동센터 1, 2, 3)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참여기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2022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표 V-5-1〉 서비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참여기관의 일반적 특성: 지역아동센터

구분	기관유형	기관규모 (현원)	인력 (상근)	긴급돌봄서비스 및 이용아동	지역규모	소재지
지역아동센터1	지역아동센터	45명	8명(8명)	영유아 이용가구 없음	읍면	경남
지역아동센터2	지역아동센터	37명	5명(3명)	영유아 이용가구 없음	중소도시	전북
지역아동센터3	지역아동센터	38명	4명(3명)	영유아 이용가구 있음	중소도시	경북

이하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 시의 어려움과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에 대한 등록 절차가 엄격하여 미등록 아동의 긴급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주로 의견을 나누었다.

가. 서비스 운영관리

1) 이용아동 특성과 담당인력

지역아동센터1은 중학생 위주로 이용하며, 돌봄인력은 사회복지사 위주여서 영유아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용아동의 연령 폭이 넓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이 경우 책임 소재 문제도 언급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15명이고 나머지 고등학생 고학년이 한 15명 되고 저학년이 15명 이 정도 있거든요. (중략)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지역아동센터이거든요. (중략) 영유아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인력이 저희한테 와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또 못 받는 거는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영유아랑 같이 다 같은 한 공간에 지역아동센터 공간이 좁아요. 근데 잠깐 있는 친구들이 그 학년 중학생 고학년 친구들 있다가 다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지역아동센터1)

전반적으로 부족한 돌봄인력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데, 관련하여 보조인력(시니어)의 경우, 청소, 주방보조 등 제한적여서 안전에 중점을 두어

야 하는 영유아를 직접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지역아동센터3). 또한 등하원 귀가 시에 센터차량을 이용한다면 도로 교통법상 동승자 동반 탑승이 필수이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지역아동센터3).

시니어 어르신이 청소를 하시는데 연세가 70세를 훌쩍 넘기시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시는 것 비교 80% 수준입니다. 그 인력을 저희가 아동을 돌보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영유아를 긴급 돌봄으로 받는다면 전문성이 없는 어르신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영유아의 긴급돌봄은 또래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지역아동센터3)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공문이 계속 옵니다. 시군구, 경찰에서 오는데 바뀐 도로교통법 안내와 동반 2인 차량운행 실시하라는 내용이지요. 저희는 야간 운영을 하면서 12시간 운영 하는데 저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있어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은 추가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11시에 나와서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당직 설 때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보조금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지역아동센터3)

2) 서비스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는 늦은 야간시간에도 돌봄을 제공하며, 지역아동센터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생 이상 학령기 아동을 위주로 돌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은 오후 5시에 센터를 이용하니까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야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이용자들이 야간을 이용하고 싶어서 저희 센터를 이용...(후략)(지역아동센터1)

도 사업을 위탁받아 마련하고 있다.

야간에 특수 목적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수당 정도 조금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주시는데...(중략) 야간보호사업 하시거든요. 거기에 응모해서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거기는 인건비 따로 나오시기도 하고, 수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지역아동센터1)

저희도 10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공동모금회 복권기금야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중략) 아이들 부모님들이 8시 넘어서 9시 10시 퇴근하시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 빈집, 혼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야간을 하거든요. (중략) 복권기금 공모사업을 받으면 조금 나온 게 프로그램비라든지 아이들 야간 간식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나운데 인건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지역아동센터3)

나.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현행 아동 등록 절차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 대응 어려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긴급돌봄 아동을 등록하기 힘든 상황이다(지역아동센터1). 단, 등록아동의 형제 또는 자매는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돌봄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지역아동센터2).

(이용아동 등록예) 최소 3일이지 3일 이상 걸려요. 근데 그 아동이 미리 접수해놓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도 않지만 하루 이틀 한 달에 하루 이틀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이용하자고 그 아이를 바로 매일 다닐 수 있는 아이한테 자리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원 외로 이용을 한다면 모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 기관은 유아를 등록해서 보호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지역아동센터2)

2) 담당인력 및 자체인력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에는 학령기 아동을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부재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책무성의 문제도 우려되었다(지역아동센터2).

저희가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등록해서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용 아동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에 영유아가 있으면 부모님이 난감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편리상 봐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2명, 3명이 근무하는 데서 3살, 4살짜리가 와버리면 1대 1로 볼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님들한테 “초등학교 입학하면 받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후략)(지역아동센터2)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나 파견 교사가 해마다 바뀌어서 오잖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전주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체인지를 했었다가 최근에 잦은 민원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2년씩 한 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주인처럼 일을 하잖아요. (중략) 이 책임감 문제에서는 급료를 어디서 지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파견교사는 딱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 협업이 안될 때가 많아요.(지역아동센터2)

3) 아동 안전관리

긴급돌봄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그 적용이 쉽지 않다고 언급되었다(지역아동센터3).

아동이 급하게 왔을 때 보험 가입하고 나면 그날 24시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당일, 만약 오후 5시에 가입한다고 5시부터가 아니고, 오전 5시 가입해도 밤 12시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센터 상해보험 적용을 기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용아동 개인 상해보험을 이용, 센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부분의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지역아동센터3)

만약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 '다음달 24일에 내가 일이 있어서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한다면 미리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당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보내고 싶어요.' 하고 보낸다면 보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센터 이용 절차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구 결제까지 나는데 빠르면 3일이거든요. 긴급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 행정 절차부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지역아동센터3)

다. 서비스 연계 실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주도하는 지역돌봄협의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희 교육감님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과 학교 담당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돌봄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어졌어요.(지역아동센터2)

돌봄협의체 회의가 교육청 주관 이루어지고 우리 지아센 협의회 대표 1명 참석 시담당 주무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담당이 모여 연2회 합니다. 수년 전 권역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 언젠가부터 협의회 대표 1명참석으로 이루어지니 모르는 센터장이 대다수입니다.(지역아동센터3)

저는 동보다 이거를 학교 단위로 묶어야 된다고 봐요. 학교 이후에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중략) 저희가 돌봄협의체를 할 때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그 학교랑 연계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시군구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학교에 있는 교육청에서 (담당) 하셔야 돼요.(지역아동센터1)

라.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1) 긴급돌봄 별도 정원 배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이 일시돌봄을 위한 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지역아동센터3). 이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긴급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저희 기관이 만약에 40명 정원이라면 100% 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정원의 20%는 자리를 비워두고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군구에 긴급돌봄을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는 긴급돌봄을 위한 상시 인력을 별도로 지원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어린이집 행복도우미선생님, 연장반선생님처럼 인력을 파트타임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신설 기관을 만들어 긴급돌봄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있는 (기존의)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지역아동센터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가정 형편상 긴급 상황으로 누군가 데리고 자 줘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양호실 비슷한 아니면 숙면실이든 하나가 만들어진다면...만약에 30명 정원 평수에 20명만 받고 5명은 긴급돌봄을 위해 자리를 비워놓고, 나머지 5명의 공간은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후략) (지역아동센터3)

2) 추가인력 지원

지역아동센터2는 아침과 저녁에 추가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려면 해당 시간대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아침시간에 (중략)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할 인력을 배치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녁시간 만이라도 근무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주면 긴급돌봄이 가능할 거 같아요.(지역아동센터2)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긴급돌봄의 어려움과 개선요구를 토대로 긴급돌봄 지원의 방향성과 서비스 유형별로 개선과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서비스를 활용하여 긴급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이 공통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긴급돌봄을 위한 추가인력을 지원하되, 인건비 지원방식은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지역 및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테면 아동 인구가 밀집되어 어린이집 등 돌봄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권역별로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반면 돌봄 인프라의 공급 수준이 저조하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큰 지역에서는 돌봄서비스 기관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돌봄 인프라의 운영시간 범위 내의 긴급돌봄 수요는 원칙적으로 이용기관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등 운영시간 이외 수요는 거점 기관을 지정하여 연계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긴급돌봄 수요는 이용기관의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야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거점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할 부처의 협력체계 및 지역 단위의 협의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시간 긴급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 연계 시의 이동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아동의 출결관리 등을 위한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 부문으로 충족하지 못한 긴급돌봄 수요는 민간 부문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 확대에 제약이 따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정과제로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의 등록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등록기관에 한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주목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제보육은 운영 주체간의 역할 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므로 이들 운영 주체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여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간제보육의 이용 사유가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된 경우 이를테면 1) 어린이집 입소 이전에 적응을 시키려는 아동과 2) 어린이집 대기신청 중인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이외 긴급한 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등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소하는 원아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통한 시간제보육반의 확충에 따라 그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특히 읍면지역에서 주로 병설유치원에서 1~2개반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점 기관의 지정이 불가하며 고르게 분포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연계 시에 다수의 아이돌보미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입원아동을 제외하되, 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 정보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단, 긴급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이 단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해당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특히 야간시간대의 긴급돌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승인 절차를 요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예상된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긴급돌봄을 위한 정원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아동의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긴급돌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등록 절차를 정기돌봄과 구분하여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학령기 아동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유아의 긴급돌봄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보

육실 등 구비를 위한 개보수비 지원, 유아 대상의 교구 및 교재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추가지원이 요구된다.

VI

정책 제언

- 01 긴급돌봄의 개념화와 지원 원칙
- 02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 03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서비스 지원 방안

V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앞서 다룬 일본과 지방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부모 대상의 긴급돌봄 수요, 그리고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운영자의 개선요구를 종합하여 긴급돌봄 제도화의 방향성과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긴급 사유별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긴급돌봄의 개념화와 지원 원칙

긴급돌봄의 제도화를 모색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수요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조하였으며, 긴급돌봄 개념화에 따른 서비스 지원범위와 원칙, 방향성과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가. 긴급돌봄 제도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긴급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자녀의 출산과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긴급돌봄의 제도화는 합계 출산율 제고와 부모의 노동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다룬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와 ‘추가출산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지연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와 57.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54.4%이고,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늦춘 응답자의 비율이 53.3%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추가출산이나 출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긴급돌봄은 단지 돌봄의 공백을 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희망하는 출산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나.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화 및 지원 범위

1) 긴급돌봄의 개념화

앞서 다룬 부모 수요에 따르면, 긴급돌봄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고 일시적이며 긴급하게 요구되나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들어서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긴급돌봄의 수요는 일상적인 틈새보육이나 재난 시의 한시적인 돌봄이나 다양한 사유로 인한 일시보육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긴급돌봄은 특히 일상적으로 야기되는 틈새보육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틈새보육 수요는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의 실제 운영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장시간보육 기피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가구의 이른 하원으로 인한 돌봄의 틈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바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이용시간과 희망하는 이용시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틈새보육 시간대가 대체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법정 운영시간 범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맞벌이 가구에서 희망하는 등·하원시각은 평균 8시 20분과 평균 18시 28분으로 연장보육과 방과후과정의 시간대에 걸쳐 있다. 반면에 긴급한 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의 시간대는 이른 출근의 경우 평균 오전 7시 12분, 갑작스러운 야근의 경우 19시 46분으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시간을 초과하였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경우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법정 또는 필수 운영시간을 벗어나므로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번기에 우려되는 돌봄 공백의 경우도 긴급돌봄 사유와는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농번기에는 이른 아침과 주말 등 돌봄서비스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수요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맞춤형 보육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긴급돌봄 지원대상에는 가정내양육 가구를 포괄하되, 비용지원 대상에는 주양육자가 부재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가정내양육가구에서 발생하는 긴급돌봄의 수요에는 현행과 같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되,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모든 일시보육 사유가 곧 긴급돌봄 수요는 아니므로 시간제보육의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가정 내양육가구를 위한 일시보육은 현행과 같이 별다른 요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보다 정교화 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시보육 지원 사유에 포함되는 보호자의 취미활동이나 육아 피로, 보육소의 적응이나 대기 중인 경우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긴급돌봄 지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의 사유 및 범위

긴급돌봄은 그 사유는 물론이고 아동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반영하여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긴급돌봄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제시하였다.

가) 긴급돌봄의 유형 및 지원 사유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긴급돌봄 어려움과 발생 빈도,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에 대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 자녀가 아픈 경우, 2) 기관이용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근로 상황, 3) 가정내양육가구의 주양육자 부재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앞서 다룬 긴급돌봄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가 아픈 경우’는 주된 긴급돌봄 사유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시급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긴급 사유별 자녀돌봄의 어려움 정도에서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평균 4.14점(5점 척도)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표하였으며,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47.2%(1+2순위 응답률: 57.9%)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게다가 자녀가 아파서 우려되는 돌봄의 공백은 한 달에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47.6%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기관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 상황, 즉 갑작스럽게 야근해야 하거나 이른 시각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직장

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에서 긴급돌봄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직접 돌보는 가정내양육 가구에서는 ‘자녀 출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시적 근무’, ‘직업훈련 또는 교육’ 시에 긴급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내양육 가구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다른 요건 없이 35개월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경우 ‘주양육자의 급작스러운 부재’ 시에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지원대상 연령 범위

긴급돌봄 지원 아동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로 한다. 앞서 부모 수요 조사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으로는 영유아가 평균 4점대(5점 척도)로 높은 수요를 보인 반면에 초등 고학년(4~6학년)에 대해서는 3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정원 초과 등으로 긴급돌봄 지원아동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1~3학년) → 초등 고학년(4~6학년) 순으로 적용한다.

단, 이들 아동이 곧 비용지원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이하의 지원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방향 및 전략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의 원칙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하는 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부모 대상의 조사결과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긴급한 사유 모두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응답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재택근무제도를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15.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며,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1) 지원 방식의 다양화: 기관돌봄/가정내돌봄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 방식은 다양한 부모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는 기관에서의 돌봄의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어린 자녀가 아픈 경우와 야간 등에는 가정내보육의 선호도 더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 여건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기관돌봄의 경우는 이용 중인 기관에서 연장하여 긴급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아동의 안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부모의 편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단, 이 경우는 이용 중인 기관이 운영되는 시간내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늦은 야간 등에는 해당 시간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가정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내돌봄의 경우는 현재 공공 부문에서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공공 아이돌보미가 긴급돌봄의 가정내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우므로 믿을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격은 6~35개월에 한정되므로 이외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구의 일시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비용지원: 우선지원 대상의 명문화와 선별적 비용지원

긴급돌봄은 정기돌봄과는 달리 그 수요를 예측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고, 긴급 사유별로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긴급돌봄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이들 가구를 위주로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다룬 부모 수요 조사에서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고, 우선 지원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대상은 영아 자녀를 둔 가구,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층가구, 자녀돌봄 시간 지원제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가구, 읍면

지역 가구로 파악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부모 양쪽이 전일제 상시근로자이거나 둘중 한명이 임시근로를 하는 가구, 부모 모두 또는 한명이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야간, 주말, 교대제 등)에 일하는 가구에서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여 우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들 가구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모든 긴급 사유에서 영아 또는 영유아 자녀만 둔 가구에 비해 돌봄 공백의 우려가 덜하여 긴급돌봄 지원의 우선지원 요건으로 자녀의 구성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즉 혈연 또는 비혈연 인력이 상시로 있는 가구에서는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긴급돌봄의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가구는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예상되므로 해당 요건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3)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전략

긴급돌봄은 그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상시로 운영하는 별도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장하여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가) 긴급돌봄 서비스의 연계 활성화

긴급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돌봄 인프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은 새벽, 야간, 주말보육이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거점으로 지정하여 필요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연계 체계에는 돌봄서비스 기관뿐만 아니라 가정내보육서비스인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아동을 수용하기 힘든 경우나 수요자가 거점 기관보다 가정내보육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에 대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유관 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총괄 관리 및 연계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 등이 그 기반으로서 요구된다. 그 밖에도 다른 기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긴급돌봄 서비스의 통합연령 운영

긴급돌봄의 특성상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시되나 지원대상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아동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여서 별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아동 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읍면지역에서 긴급돌봄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긴급돌봄 인프라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충하고, 긴급돌봄의 경우 정기돌봄 아동에 비해 연령범위를 확장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학령기 아동 위주여서 영유아의 이들의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 통합연령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아 자녀는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만 4~5세아는 초등학교와 함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영유아가 이용한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취학전 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영유아가 이용한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9%에 불과하나,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2개소에 불과한 면 단위 지역에서 영유아의 긴급돌봄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속하게 이용해야 하므로 지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관련 인프라의 공급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격차가 커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인 인프라의 공급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 규모도 매우 적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선 면 단위 지역에는 소수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의 공급 수준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공공성 측면에서 이들 기관이 영유아의 긴급돌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운영시간도 야간에 걸쳐 있어서 긴급돌봄의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취학전 아동의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 돌봄을 위한 여건 즉, 영유아 전문인력(보육교사 등)의 배치, 보육실 구비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등 우선지원 자격 판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이용 및 등록 절차를 긴급돌봄 시에는 달리 적용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논의한 긴급돌봄의 유형별로 대응 전략 및 제도화의 방향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VI-1-1]과 같다. 즉, 긴급돌봄의 사유는 기관 이용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구분되므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자녀가 아픈 경우’는 제도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미비하여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긴급돌봄 유형별로 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관돌봄과 가정내돌봄 방식을 동시에 마련하여 아동 및 가구의 여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아픈 경우의 기관돌봄 인프라는 다양한 확충 방식이 모색되는 반면, 기관 이용가구의 경우는 이용기관에서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 이외 시간대는 인근의 거점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정내양육 가구는 주양육자의 부재 시에 한정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규정하는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간제보육에서 긴급돌봄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VI-1-1] 긴급돌봄의 유형별 대응 전략 및 제도화 수준

긴급돌봄 유형	대응 방향	긴급돌봄 제도화 수준
자녀가 아픈 경우 (재난시 긴급돌봄 제외)	돌봄 인프라 확충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긴급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신규 사업 운영기준 마련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관련 규정 개정
[기관이용 가구] 긴급한 근로 상황 등 (틈새보육 제외)	이용기관의 돌봄서비스 연장 및 거점기관 연계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의 긴급돌봄 지원기준 마련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관련 규정 개정
[가정내 양육가구] 주양육자 부재 시 (양육 공백 이외 일시보육 제외)	일시보육 지원요건 정교화 가정내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시간제보육서비스 긴급돌봄 우선지원 규정 개정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규정 마련

2. 긴급돌봄 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법적 근거 마련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부처에서 관할하는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의 강화는 물론이고 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시화되어야 하며,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유관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단위에서 서비스 기관이 포함된 돌봄협의체 활성화가 요구된다.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긴급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아동안전 등에 일관된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운영기준이 요구된다.

가. 유관 서비스의 긴급돌봄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침 보완

현재 긴급돌봄을 전담하는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며, 앞서 다룬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의 경우 관련 사업 지침에서 긴급한 돌봄에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에 특화된 서비스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더불어 긴급돌봄 수요에도 대응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의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긴급돌봄에 특화된 관련 서비스 기관(가칭: 긴급돌봄 아동센터)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유관 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1) 유관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부처에서 관할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이들 기관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여 협력사항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하여 명문화가 요구된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서비스 연계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일원화된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침에 따라 지역내 해당 부서에서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기관 공문 발송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부처의 돌봄사업 및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관할부처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므로 이들 서비스를 총괄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해당 법률에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유관 사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 정

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관한 법률은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부처간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에는 긴급돌봄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부처에서 추진 중인 양육지원 전반의 조정 및 총괄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의 역할로서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 단위 돌봄협의체 활성화

앞서 언급한 중앙부처의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기존의 돌봄공동체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연계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초등자녀의 일상적인 방과후돌봄에 한정된다. 따라서 영유아 및 초등자녀의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기구는 이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시·도에 광역돌봄협의체, 시·군·구에 기초협의회를 설치하여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및 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서비스에서는 연계 규정이 미비하므로 사업별 지침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긴급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치구 단위에서 인근 지역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기관과 운영시간 등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기관별로 긴급돌봄이 가능한 아동의 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석식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의 이용 및 신청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별도의 이용 및 신청 절차를 갖춘 서비스의 홈페이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긴급돌봄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긴급한 상황이나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 서비스에 관하여 부모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자녀 출산에 따른 현금성 급여(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신청 시 또는 해당 신청 사이트(임신·육아 포털 사이트)에 긴급한 돌봄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지역별 서비스 기관 등 상세 정보는 자치구 단위에서 오프라인(책자 우편 배송 등)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에게는 입학 설명회,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 부모참여 행사에 맞추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 등을 공지한다. 특히 감염의 우려로 인해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와 지역내 질병감염 지원 거점 어린이집을 소개하여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초등방과후 포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긴급돌봄에 관한 사항을 부각하여 이용 절차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공지한다. 이들 정보는 지역내 초등학교에도 공유하여 초등학교 입학 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상담 등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밖에도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도 긴급한 경우 이용하는 방식을 부각하여 공지한다.

마. 긴급돌봄 아동의 안전관리 기준의 일원화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므로 아동의 출결 등 안전관리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돌봄 아동과 긴급돌봄 아동의 출결은 구분하여 관리되고, 등원과 하원 시각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안전한 귀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긴급돌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신청하고, 함께 귀가하는 것으로 하되, 다른 기관으로 아동이 이동하는 경우 등 아동의 현재 위치 등이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하므로 출결관리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등 이외 서비스 기관에서는 수기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야간 등 거점기관의 지정 시에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도입 시와 유사하게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긴급돌봄 유형 및 대상별 서비스 지원 방안

앞서 제1절에서 제기한 긴급돌봄 지원의 방향성 및 전략을 토대로 아동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돌봄 유형별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아픈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은 앞서 부모 수요 조사에서 그 시급성이 확인된 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재원 및 운영 주체, 지원내용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지원한다.

1)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병감염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하며, 해당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의 하나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가정내돌봄 이외에도 기관돌봄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돌봄서비스 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질병아동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내용 및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명문화가 요구된다.

앞서 다룬 일본 사례에서는 질병아동 보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시설 기반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아동연령과 지원 사유, 사업 운영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아동복지법」에 ‘질병아동 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아동의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VI-3-1〉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5호

현행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질병아동의 안전한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_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 (2023. 10. 3. 인출)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의 5호를 <표 VI-3-1>에서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제5항에 의거하면,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 유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근로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보육이 어려운 초등학교로 질병에 걸린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가정내에서 돌보는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질병아동 긴급돌봄의 지원방식 및 내용

앞서 살펴본 일본 및 지방정부 사례와 부모 수요를 종합하면 질병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기관돌봄 방식을 추가로 고안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아픈 상황이나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에 ‘이용 중인 기관내의 돌봄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3.66점(5점 척도)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인프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질병아동의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가정파견형 전문인력과 의료시설내 돌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만하다. 특히 가정파견형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영아 자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양성교육에 영아 발달 및 상호작용에 관한 교과목을 필히 포함하도록 한다. 단 해당 사업은 현행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자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의료시설내 돌봄시설에서는 입원아동을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 요건과 아동안전 등을 위한 설비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위급 상황이나 비교적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질병아동에 대한 돌봄은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긴급돌봄과는 구분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수준에 부합하는 중증도가 낮은 아동, 즉,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단순 감기 등 일반적인 보호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원아동 돌봄은 현재와 같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중증도를 반영하여 지원 방식을 세분화 하는 접근은 일본의 사례에도 부합한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전문인력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회복기 아동,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전염성 우려가 있는 아동 등을 구분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

한편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질병아동 긴급돌봄 수요는 초등자녀에 비해 영유아 자녀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아동수가 많아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3) 재원 및 역할 분담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긴급돌봄의 개념 및 범위와 사업 운영 주체를 규정하고, 해당 지원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재원 분담 포함)을 부여한다. 또한 이후에 제시하는 서비스 운영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실행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격 또는 절차 등 세부사항은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례로 규정한다.

재원 분담은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예산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되, 지역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국가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4) 질병아동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운영기준(안) 마련

질병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용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운영기준을 차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병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육실을

구비하여 일정 교육을 이수한 3급 이상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이들의 재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 한다.

후자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내 긴급돌봄 지원의 자격을 명시하고(입원 등 중증도 기준 등), 질병아동 전용 보육실의 설치 요건과 간호사 등 전담인력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기관이용 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긴급한 근로 상황’ 등

맞벌이 가구의 갑작스러운 야간 근로 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는 일차적으로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충족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거점기관을 이용하거나 일시연계 방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1) 영유아 자녀 대상 긴급돌봄 지원

가) 어린이집 이용가구 대상 긴급돌봄 지원 강화

영유아를 둔 가구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이용 중인 기관의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현행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 포괄되므로 기본보육 등록 아동이 긴급한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 연장보육을 추가로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에 한하여 적용되는 연장보육 필요 사유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이상의 취업 관련 사유 이외에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구직 및 취업준비,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부모, 임신 등이 포함되어 앞서 규정한 긴급돌봄 지원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장보육반의 경우는 연령별로 탄력정원 기준을 두고 있어서 해당 범위 내에서 긴급돌봄 아동을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탄력편성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영아반에 한하여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경우는 유아가구에서 긴급돌봄을 요청할 경우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반 구성이 가능한 경우는 인근지역의 여유 정원이 없거나 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에 따른 경우는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 시·군·구의 승인 이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e: 67)고 규정하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연장보육 반별 탄력정원 편성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연장보육시간에 영유아 혼합반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반의 편성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인력의 배치 기준과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긴급돌봄을 위한 담당인력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오후 당직 담임교사, 오후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나) 유치원 이용아동 대상 긴급돌봄 지원 강화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운영 비율이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게다가 향후 모든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는 시간대의 긴급돌봄 수요는 원활하게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방과후과정 이후 시간대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병설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보원 관리상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여서 인근의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초등자녀 대상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졸업생이 초등 저학년 시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개반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면 단위 지역에도 최소한 한 개원이 공급된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인프라에서 초등 저학년 아동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 야간·휴일 긴급돌봄: 거점어린이집/거점유치원의 지정 및 요건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후 시간대의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등 정규 운영시간 이외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3~10%선에 그치며, 이들 기관의 공급 수준도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으로 이들 시간대에 발생하는 긴급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그 밖의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온종일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야간긴급돌봄의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원 중인 기관의 운영시간을 벗어나서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돌봄의 공백을 예방한다. 이들 거점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야간 등에 단독 근무로 인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와 같이 보육 도우미 등 보조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야간 거점 기관에서는 부모의 자부담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휴일보육 거점 기관은 공휴일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지원 강화: 유아 및 초등자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공통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가구 등 우선돌봄 아동에 배정해야 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정원의 일부를 일시돌봄 아동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고려하여 양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대응력 제고

(1) 긴급돌봄 정원 별도 관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10~20%선에서 긴급돌봄을 위한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은 기존대로 우선돌봄 아동을 전원의 50% 이상 배정하되, 일반아동의 정원에 긴급돌봄을 고려한 별도

정원을 배정한다.

(2) 신청 및 등록 절차의 간소화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을 정원의 50% 이상 배정해야 하므로 그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신청 이후 등록에 이르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긴급돌봄 아동은 전체 정원에 포함하지 말고 곧바로 센터에서 등록을 승인하는 별개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

나) 미취학 아동 대상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전담인력 배치 등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만 12세까지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달리 이용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까지이므로 이들과 미취학 아동이 함께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유아를 위한 돌봄 공간을 취학 아동과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하되, 유아에 부합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도 요구된다.

다) 필수운영시간 확대

초등자녀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돌봄교실의 종료시각이 16시 39분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이른 시각여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비율이 75.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희망하는 종료시각은 최대 20시 18분으로 조사되어 현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20시까지 운영되면 초등돌봄교실 이용가구에서 희망하는 종료시각인 18시 55분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상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는 필수 운영시간을 14~17시로 당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긴급돌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이 19시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78)

라) 긴급돌봄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필수운영시간의 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야간에 운영하거나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급작스러운 야간근로 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후 8시 이후 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의 인건비 100%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긴급돌봄 특화 기관(가칭: 긴급돌봄 아동센터) 설치·운영

아동수가 적어서 지역아동센터는 물론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도 미흡한 지역에서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이 경우는 보육실 등의 구비를 위한 개보수비, 전문인력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 100%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돌봄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전담인력 1인은 8시간, 나머지 1인은 4~6시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최소 8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이들 긴급돌봄 전담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시돌봄 비중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돌봄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4)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가)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기관 연계체계 구축

일시연계를 위한 공공 아이돌보미가 부족하거나 신속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연계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등록기관을 연계하여 부모가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필요할 때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므로(여성가족부, 2023c: 11) 등록기관에 한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 타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위한 신속한 아이돌보미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는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내 유관 서비스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사례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지침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모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등 인근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내용을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가정내양육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주양육자 부재’ 등

가정내 양육가구의 경우에도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경우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시간제보육을 위주로 긴급돌봄 대응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시연계 방식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가정내 양육가구도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앞서 제기한 개선과제로 가름할 수 있어서 정보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1) 시간제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세분화

시간제보육은 이용대상인 6개월~35개월 아동을 한 명의 교사가 최대 3명 까지 돌보게 되므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아동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월령을 세분화하여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6~18개월 아동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로 하향 조정하고, 19~35개월 아동을 현행과 같이 1:3으로 개선한다. 또한 36개월 이상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기관의 확대 추세를 감안 하여 해당 연령반을 추가로 구성하고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시간제보육의 우선지원 대상 및 이용기간 제한 규정 마련

시간제보육의 이용자격은 현재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여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긴급돌봄 지원 사유는 보다 정교화 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시간제보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비용 지원은 한 달 기준으로 최대 2회 까지 총 1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에서 일시보육은 최대 7일 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시간제보육은 현재 6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3개월 이후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격이 3개월 아동부터 이고,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보다 이른 생후 57일 경과한 다음부터 일시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긴급하게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 아동 연령을 3개월로 하향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하면 이하 <표 VI-3-2>와 같다.

<표 VI-3-2>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단, 제28조의2 제2호의 긴급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3. 10. 3. 인출)

3) 시간제보육의 보조인력 지원기준 마련

현행 시간제보육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감안하면 보조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반이 한 개 반인 경우는 시간제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힘들고 시간 단위의 부모 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 안전 등의 측면에서도 보조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시간제보육의 운영 주체별 역할 및 기능 분화

시간제보육의 운영 주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향후 어린이집을 통한 확충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긴급돌봄의 역할 및 기능을 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은 입소대기 중이거나 어린이집 적응기간, 재원아의 동생의 일시보육 등 어린이집 입소 관련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의 관리와 서비스 연계, 일시적 긴급보육을 위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이 긴급돌봄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증빙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제보육의 이용대상은 가정내 양육가구이므로 앞서 다룬 긴급돌봄의 유형에서와 같이 주양육자의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본다.

5) 야간·주말 거점 시간제보육반 지정

현재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주말과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가정내양육 가구에서 운영시간대를 벗어나는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야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은 거점기관으로 지

정하여 야간이나 주말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간제보육교사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어려우므로 평일 기준으로 4시간, 주말 기준으로 6~8시간 동안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해당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가정내 양육가구의 경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용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신청을 받을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등을 신청할 시에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복지포털(<https://www.bokjiro.go.kr>)과 정부 24(<https://www.gov.kr>),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도 해당 정보를 탑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1). 2021 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매뉴얼.
-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 교육부(2022).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교육부(2023a).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23b). 늘봄학교 추진 방안.
- 관계부처합동(2023a).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2023b).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민순홍(2023). 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한 산업인력정책 과제.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149호.
- 보건복지부(2019). 보도자료(2020. 9. 1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인출일자: 2023. 5. 30).
- 보건복지부(2022a). 보도참고자료(2022. 6. 16):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인출일자: 2023. 2. 28).
- 보건복지부(2022b).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
- 보건복지부(2022c).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menuNo=2001400> (인출일자: 2023. 4. 12).
- 보건복지부(2023a). 2022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23b). 2023 다함께돌봄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c).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d).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2023e).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 서울특별시(2022). 보도자료(2022. 9. 15):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365 열린어린이집’ 9개소로 확대.
- 서울특별시(2023). 보도자료(2023. 1. 12):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본격 시행.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2023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보도자료(2018. 3. 16):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한다(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계획).
- 여성가족부(2020). 보도자료(2020. 3. 25): 공동육아나눔터 찾아 긴급돌봄 현황 점검.
- 여성가족부(2023a). 2023년 가족사업안내 2권.
- 여성가족부(2023b). 2023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3c).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2023d).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3e).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23f). 보도자료(2023. 1. 18):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통계청(2022). 보도자료(2022. 10. 25.):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한국보육진흥원(2023). 내부자료.

[참고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_정책자료_여성(모성보호 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자: 2023. 3. 2).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임신출산육아기 지원_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인출일자:
2023. 6. 8).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_임신출산육아기 지원_근로시간단축 등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인출일자:
2023. 6. 8).
- 공공데이터포털_교육부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2022. 8. 31. 등록)
<https://www.data.go.kr/data/15106335/fileData.do> (인출일자: 2023.
4. 13).
- 교육부 홈페이지_정책_초·중·고 교육_2022학년도 2학기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2022. 12. 23. 등록)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481>
(인출일자: 2023. 4. 13).
- 교육부 홈페이지_정책_초·중·고 교육_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2023. 1. 13. 등록)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3653>
(인출일자: 2023. 4. 13).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_다함께돌봄센터 현황.
<https://dadol.or.kr/board/center> (인출일자: 2023.5.6.)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_아이돌봄 사업소개_사업 현황(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인출일자: 2023. 4. 12).
-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_어린이집_시간제보육사업,
<https://www.childcare.go.kr/?menuno=200r> (인출일자: 2023. 6.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인출일자: 2023. 10. 4).

- 여성가족부_정책정보_공동육아나눔터 운영,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인출일자: 2023. 4. 1).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_사업소개,
<https://www.youth.go.kr/yaca/about/about.do> (인출일자: 2023. 3. 3).
-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인출일자: 2023. 6. 1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_가족서비스 지원_돌봄서비스 지역기반
강화_공동육아나눔터,
<https://www.kihf.or.kr/web/lay1/S1T88C158/contents.do>
(인출일자: 2023. 6. 7).
- 행정안전부_정책자료_통계_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index.jsp> (인출일자: 2023. 2. 21).

【Ⅲ장 1절 일본사례 참고자료_일반】

- 내각부(2021). “패밀리 서포트 센터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일부 개정.
- 문부과학성(2022). 학교기본조사.
- 오오에마유코(大江 まゆ子)(2019). 야간보육의 역사적 고찰 및 야간보육을 둘러
싼 환경 고찰(夜間保育の歴史的変遷と夜間保育を取りまく環境の考察)
人間環境学研究 第 17 卷 2 号.
- 유해미·조숙인·장경희·박은영(2016). 저출산 대응정책의 진단 및 방향 연구. 교
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09).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10).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14).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15).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17).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문제연구소(2022).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총무성(2023). 노동력 조사(기본집계) 2022년(令和4년) 평균결과의 요약.

- 후생노동성(2018). 야간보육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연구. 미즈호정보총연주식회사.
- 후생노동성(2020). “질병아동보육사업 실시에 관하여” 일부개정.
- 후생노동성(2021a). 인가와 보육시설 현황 認可外保育施設の現況取りまとめ.
- 후생노동성(2021b).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 후생노동성(2022). 2022년 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방과후 아동클럽)실시상황
(令和4年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放課後児童クラブ)の実施状況).

【III장 1절 일본사례 참고자료_참고 웹사이트】

- 나카노구 홈페이지_휴일보육,
<https://www.city.tokyo-nakano.lg.jp/dept/244000/d026663.html>
(인출일 자: 2023. 5. 17).
- 나가사키시 홈페이지_패밀리 서포트 센터 지원사업,
<https://www.pref.nagasaki.jp/bunrui/hukushi-hoken/kosodateshien-shoshikataisaku/kodomo-shisetsu/famisapo> (인출일자: 2023. 5. 24)
- 내각부 홈페이지_유아교육보육·무상화에 대하여,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usyouka/about/index.html> (인출일자: 2023. 6. 2.)
- 동경도 홈페이지_일시보육사업,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hoiku/ichijiazukari_teikiriyohoiku.html (인출일자: 2023. 5. 23).
- 메구로구 홈페이지_방문형 질병아동 보육,
<https://www.city.meguro.tokyo.jp/smph/kurashi/kosodate/josei/byouji-joseikin.html> (인출일자: 2023. 5. 2).
- 미야자키시 홈페이지_질병아동 보육,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1/8/8/6/9/_/718869.pdf (인출일자: 2023. 5. 13).
- 미토시 홈페이지, <https://www.city.mito.lg.jp/site/kosodate/5571.html>. (인출일자: 2023. 6. 1.)
- 사이타마시 홈페이지_패밀리 서포트 센터 지원사업,
<https://www.pref.saitama.lg.jp/a0607/famisapo.html> (인출일자:

2023. 5. 24).

시나가와구 홈페이지_질병아동 보육,

<https://www.city.shinagawa.tokyo.jp/PC/kodomo/kodomo-hoyou/kodomo-hoyou-ichizi/hpg000033509.html> (인출일자: 2023. 5. 13)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4AC00000000065>
(인출일자: 2023. 6. 3).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시행규칙,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6M60000002044_20230916_505M60000002067 (인출일자: 2023. 11. 7.).

아동복지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0164>,
(인출일자: 2032. 6. 3).

아동·영유아양육지원플랜

<https://www.mhlw.go.jp/bunya/kodomo/jisedai22/pdf/data.pdf>,
(인출일자: 2023. 11. 7).

아동·자녀양육신제도 실시에 대하여(2022).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令和4年7月).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outline/pdf/setsumeip2.pdf> (인출일자: 2023. 4. 25).

야간보육소 “드림” 홈페이지, <http://www.aiikukai.or.jp/dream/one-day-nurseries> (인출일자: 2023. 5. 24.)

야간보육소의 설치인가 등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9201&dataType=1&pageNo=1 (인출일자: 2023. 5. 2).

오사카시 홈페이지_패밀리 서포트 센터 지원사업,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70655.html>
(인출일자: 2023. 5. 24).

요코하마시 홈페이지_휴일보육/휴일일시 보육 안내,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odate-kyoiku/hoiku-yoji/shisetsu/hoikuseido/ichiji/kyuujitsu.html> (인출일자: 2023. 5. 24)

요코하마시 홈페이지_영유아 일시보육,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odate-kyoiku/kosod>

ateshien/nyuyoji-ichiji/nyuyoji-ichiji.files/0022_20230407.pdf
(인출일자: 2023. 5. 23).

중앙구 홈페이지_연장보육,
<https://www.city.chuo.lg.jp/a0021/kosodate/kosodate/hoikuen/hoiku/ninkahoiku/entyouhoiku.html> (인출일자: 2023. 5. 23).

코베시 홈페이지_질병아동 보육,
<https://www.city.kobe.lg.jp/a65174/kosodate/shien/support/byouji.html> (인출일자: 2023. 5. 13).

토시마구 홈페이지_방문형 질병아동 보육,
<https://www.city.toshima.lg.jp/452/kosodate/kosodate/houmongata/1605241336.html> (인출일자: 2023. 5. 2).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www1/topics/syousika/tp0816-3_18.html
(2023. 11. 17. 인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_향후 자녀양육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基本的方向について, <https://www.mhlw.go.jp/bunya/kodomo/angelplan.html> (인출일자: 2023. 11. 7).

【Ⅲ장 2절 지방정부 사업 참고자료_일반】

경기도(2023). 내부자료.

경향신문(2022a). 광진구, 입원아동·퇴원 1인 가구·청년간병인 돌봄 서비스,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1111011021#c2b>
(인출일자: 2023. 5. 30).

경향신문(2022b).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맞벌이 부부의 기댔던 언덕 되다”.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2171636001#c2b>
(인출일자: 2023. 5. 24)

광주N광주(2023). 광주시, 7일부터 광역지자체 최초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실시,
<http://www.gjngi.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 (인출일자: 2023. 4. 19).

노원구(2022). 내부자료.

- 뉴스1 코리아(2023).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맞벌이 부모 대신 병원 진료
동행, <https://www.news1.kr/articles/?4960293> (인출일자: 2023. 5. 29)
- 당진시대(2022). 긴급틈새돌봄 서비스 당진에는 수혜자 없어,
<http://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28>
(인출일자: 2023. 5. 30).
- 대한경제(2023). 경북도,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안동·예천으로 확대,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2231452219560505 (인출일자: 2023. 5. 29).
- 서울Pn(2020). 의왕시, '아픈아이 홈케어' 무료 사업 추진,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2500079>
(인출일자: 2023. 5. 29).
- 서울경제(2018). 오산시, 아픈 아이 무상 돌봄 지원 시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7J1JFUA> (인출일자: 2023. 5. 29).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2015).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2022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2022-2026)”.
- 서울특별시(2022b).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2023a). 보도자료(2023.1.12.):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본격 시행.
- 서울특별시(2023b). 보도자료(2023.3.28.): 서울시, 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 서초구(2020). 기획- 서초 119 아이돌보미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서초소식지
2020년 1월호. 서초구청.
- 아시아경제(2021).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주민 호응 큰 이유?,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2716550229822> (인출일자:
2023. 5. 24)
- 양천구(2023). [돌봄]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이용해 보세요!. 양천구
소식 2023년 4월호. 양천구청.
- 오산시(2020). 오산시 아픈 아이119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홍보 리플렛).
- 장은미·안현미·김현정(2022). 아이키우기 좋은 송파구 만들기 연구. 송파구의회

송파생활연구회·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원시(2022). 보도자료(2022.2.24.): 창원시, 입원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양육부담 덜어.

창원시(2023). 보도자료(2023.2.16.): 창원특례시,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운영.

파이낸셜뉴스(2022). "150시간 턱없이 부족"...광주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실효성 논란, <https://www.fnnews.com/news/202207040715291940> (인출일자: 2023. 5. 30).

행정안전부 카드뉴스(2022). 걱정마세요! 직장맘 SOS서비스가 있잖아요!. https://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5331 (인출일자: 2023. 5. 29).

행정안전부(2021). 보도자료(2021.11.4.): 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행안부,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Ⅲ장 2절 지방정부 사업 참고자료_참고 웹사이트】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_가정양육지원_아픈아이병원진료서비스,
https://gyeongbuk.childcare.go.kr/lgyeongbuk/d17_20000/d17_20056.jsp (인출일자: 2023. 5. 29).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홈페이지_긴급아이돌봄_이용절차 및 방법,
http://gjicare.or.kr/page/child_care/intro (인출일자: 2023. 5. 24).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_입원아동돌봄,
<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hChild> (인출일자: 2023. 4. 19).

광진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생애주기별복지_저소득주민_돌봄SOS센터,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548> (인출일자: 2023. 5. 30).

노원복지샘 홈페이지_노원복지소식_아픈아이돌봄센터,
<https://www.nowonbokjisaem.co.kr/-%ec%95%84%ed%94%88%ec%95%84%ec%9d%b4-%eb%b3%91%ec%9b%90%eb%8f%99%ed%96%89-%ec%84%9c%eb%b9%84%ec%8a%a4-%ec%82%ac%ec%97%85/>
(인출일자: 2023. 5. 24)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인출일자: 2023. 5. 29).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가족복지_아동_온마을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614> (인출일자: 2023. 5. 10).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영유아복지_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지원,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인출일자: 2023. 5. 24).

양천구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영유아복지_양천형밤샘긴급돌봄,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5/10503021201002023042509.jsp> (인출일자: 2023. 5. 29).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인출일자: 2023. 5. 10).

포항시청 홈페이지_분야별정보_복지_여성_직장맘지원센터,
<https://www.pohang.go.kr/pohang/6951/subview.do> (인출일자: 2023. 5. 30).



Abstract

A study on analyzing the demand for emergency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primary school children and measures of institutionalization

Haemi Yoo, Mugyeong Moon, Moonjeong Kim, Kyoung Hee Chang , Song Yi Kim

The gap in care that occurs because there is no place to leave children in emergency situations is pointed out as a representative difficulty in raising children. However, because emergency care cannot be predicted, its scale is unknown, and it is required temporarily, there are aspect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policy. Emergency care demand is distinct from routine and regularly occurring niche care, so separate institutionaliza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565 households with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der the age of 8 to identify care needs in urgent situations, and i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3 people. I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1 service operators of 6 types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in providing emergency care support to service organizations.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emergency care support systems and projects in Japan and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details of support.

Based on the analysis, the conceptualization and support principles of emergency care, and service support measures for each emergency reason and target were proposed. Reasons for emergency care can be categorized as 1) a sick child, 2) urgent work situation in a dual-income household using an institution, 3) absence of the primary caregiver in an in-home care household. In detail, first,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Emergency Care Support Project for Sick Children'. Second, for

households using institutions such as those in urgent work situations, strengthen emergency care support for households using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trengthen emergency care support for local children's centers and care centers, strengthen Idolbom service linkage, and provide emergency care center is required. Emergency care for in-home care households proposed priority support targets and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use of temporary child car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n temporary Idolbom service, and differentiation of the functions of temporary child care.

Keyword: Emergency Care Services, Emergency Care Demand, Vacancy in Childcare, Linkage of Child Care Service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부모용)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 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응답자 확인 사항〉

※ 다음은 귀댁의 자녀와 가구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할당] 귀댁은 영유아(만 0~5세) 또는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막내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만 6세 아동인 경우 **②번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영아 자녀[만 0~2세: 2020년 이후 출생]가 있음 | ☞ 문SQ2번으로 |
| ② 유아 자녀[만 3~5세: 2017~2019년 출생]가 있음 | ☞ 문SQ2번으로 |
| ③ 초등학교 자녀(초등 1~3학년)가 있음 | ☞ 문SQ2번으로 |
| ④ 영유아 자녀(미취학)와 초등학교 자녀(1~3학년) 모두 없음 | ☞ 조사 중단 |

SQ2. 귀댁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긴급한 사유로 인해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긴급한 사유란 일상적인 돌봄의 틈새(이른 하원 등)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새벽 출근 또는 야근, 부모 등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등 "**갑작스럽고 시급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 | |
|---------|------------|
| ① 경험 있음 | ☞ 문 SQ3번으로 |
| ② 경험 없음 | ☞ 조사 중단 |

SQ3. 귀댁의 가구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① 양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아님) | ☞ 문 DQ1번으로 |
| ② 한부모 가족 | ☞ 조사 중단 |
| ③ 조손가족(조부모+손자녀) | ☞ 조사 중단 |

〈응답가구의 아동 및 가구 특성〉

DQ1. [할당] 귀하의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대도시 지역(서울 및 광역시 거주)
- ② 중소도시 지역
- ③ 읍면 지역(군 지역 거주)

DQ2. [할당] 귀댁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맞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 | |
|-----------|------------|
| ① 맞벌이 가구임 | ☞ 문 DQ2-1번 |
| ② 홀벌이 가구임 | ☞ 문 DQ2-4번 |
| ③ 근로 안함 | ☞ 문 DQ3번 |

DQ2-1. 귀댁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근로 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전일제 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 ① 둘다 전일제근로
- ② 전일제근로 + 시간제근로
- ③ 둘다 시간제근로

DQ2-2.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재택근무 중이거나, 필요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근로 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DQ2-3. 귀책에서는 다음의 근로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부모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근로 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아버지	어머니
1	주말(토요일/일요일)근로		
2	휴일(추석, 설, 공휴일 등)근로		
3	야간 근로 (오후 8시 ~ 밤 12시)		
4	새벽 근로 (밤 12시 ~ 오전 7시)		
5	교대제 근로		

- ① 매주 일함
- ② 격주(2주에 1회 정도)로 일함
- ③ 한 달에 1회 정도 일함
- ④ 두 달에 1회 정도 일함
- ⑤ 연간 1~2회 정도 일함
- ⑥ 연간 3~4회 정도 일함(3개월에 1회 정도)
- ⑦ 연간 5회 이상 일함
- ⑧ 해당 사항 없음(해당 시간대에 일한 경험이 없음)

[로직] DQ2-3의 '휴일(추석, 설, 공휴일 등) 근로' 선택 시 ⑤,⑥,⑦만 제시
그 외 문항 선택 시 ①,②,③,④,⑥,⑧만 제시 (⑤ 제외)

DQ2-4. 귀책의 고용상 지위를 부모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의 근로 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계약직)
- ③ 일용근로자
-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
- ⑧ 해당 사항 없음

[로직] DQ2='②홀벌이 가구'만, DQ2-4의 아버지, 어머니 중 한 명만 ⑧ 선택 가능

DQ3. 귀댁 부부의 동거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주말부부(주1~3일 동거) ② 주말부부 아님(주4~7일 동거)

DQ4. 귀댁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십니까? 항목별로 평소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1	상시로 자녀 돌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혈연인력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있음(조부모 동거 포함)		
2	상시로 자녀 돌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혈연인력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 등)이 있음		

I. 자녀양육 실태 전반

※ 다음 질문에 **막내 자녀인 000**(SQ1 선택 보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위 문구는 항목과 별도 페이지로 뜨도록 구성

[로직] 분기 : SQ1='①영아 자녀, ②유아 자녀'는 문1로,

SQ1='③초등학생 자녀'는 문5로 이동

[로직] '000'에 SQ1 선택 보기 뜨도록

1. 귀 자녀는 평일 낮 시간(아침~점심)에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 이용 ☞ 문 1-1번으로
 ② 유치원 이용(영어유치원 제외) ☞ 문 1-1번으로
 ③ 어린이집/유치원 이외 반일제 기관(영어유치원/학원 포함) ☞ 문 8번으로
 ④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민간 육아도우미) ☞ 문 8번으로
 ⑤ 혈연인력(조부모 또는 친인척) ☞ 문 8번으로
 ⑥ 부모가 직접 돌봄 ☞ 문 8번으로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 8번으로

[로직] 확인창 : SQ1='①영아 자녀'가 문1='②유치원 이용' 응답 시

1-1.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민간어린이집
 ③ 가정어린이집 ④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 ⑥ 협동어린이집
 ⑦ 국공립유치원 ⑧ 사립유치원

[로직] 문1='①어린이집 이용'은 ①~⑥만 제시

[로직] 문1='②유치원 이용'은 ⑦~⑧만 제시

2. 귀댁의 자녀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이내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이용	② 미이용
1	어린이집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		
2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오후 7시 30분~밤 12시)		
3	어린이집 휴일보육(일요일/공휴일)		
4	어린이집 야간 12시간보육(오후 7시 30분~다음날 오전 7시 30분)		
5	어린이집 24시간보육(오전 7시 30분~다음날 오전 7시 30분)		
6	유치원 방과후과정(오후 2시 이후~)		

[로직] 문1='①어린이집 이용'은 문2-1~문2-5만 제시

[로직] 문1='②유치원 이용'은 문2-6만 제시

3.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등원 시각은 언제입니까?
※ 등원 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4.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평일(월~금요일) 기준 하원** 시각은 언제입니까?
※ 하원 시각은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로직] ※시간 기입 문항 공통

: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 3-1. 귀댁 자녀의 등원 시각은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 4-1. 귀댁 자녀의 하원 시각은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구분	3~4. 현재 이용시간 ※ 등원시각(예시): 09시 20분 ※ 하원시각(예시): 16시 30분	3-1~4-1. 돌봄 수요 충족 여부	
		① 필요한 시각에 맞게 이용함	
		②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함	
		☞ 문 3-2, 4-2번으로	
3. 등원 시각	()시 ()분	3-1.	()
4. 하원 시각	()시 ()분	4-1.	()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 3-2. (문3-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등원** 시각은 언제입니까?
※ 등원 시각은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 4-2. (문4-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언제입니까?
※ 하원 시각은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구분	희망하는 등하원 시각 ※ 등원시각(예시): 07시 20분 ※ 하원시각(예시): 20시 30분
3-2. 등원 시각	()시 () 분
4-2. 하원 시각	()시 () 분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5. 귀댁의 자녀가 평일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이나 돌봄지원 인력이 있습니까?
※ 평일 기준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터 포함) | ☞ 문 6번으로 |
| ② 지역아동센터 | ☞ 문 6번으로 |
| ③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 | ☞ 문 6번으로 |
| ④ (사설)학원 | ☞ 문 6번으로 |
| ⑤ 혈연인력(조부모/친인척 등) | ☞ 문 6번으로 |
| ⑥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민간 육아도우미 등) | ☞ 문 6번으로 |
| ⑦ 기타(구체적으로:) | ☞ 문 8번으로 |
| ⑧ 이용하는 기관이나 돌봄지원 인력 없음 | ☞ 문 8번으로 |
6. 문 5번에서 응답하신 자원인력이나 기관의 평일(월~금요일) 기준 이용 시작 시각은 언제 입니까?
※ 매주 또는 요일별로 이용하는 시각이 다른 경우는 평일의 평균적인 시각을 응답해 주세요.
7. 문 5번에서 응답하신 자원인력이나 기관의 평일(월~금요일) 기준 이용 종료 시각은 언제 입니까?
※ 매주 또는 요일별로 이용하는 시각이 다른 경우는 평일의 평균적인 시각을 응답해 주세요.
- [로직] 문5=④~⑥이면 문7까지 응답 후 문8로 이동
- 6-1. [로직] 문5번에서 ①, ②, ③번에 응답한 경우
이용 시작 시각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 7-1. [로직] 문5번에서 ①, ②, ③번에 응답한 경우
이용 종료 시각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구분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6. 시작 시각 [로직]시작시간 응답 14시부터 가능	7. 종료 시각 [로직]종료시각 응답 22시까지 가능	6-1~7-1. 돌봄 수요 충족 여부
				① 필요한 시각에 맞게 이용함 ②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함 문 6-2~7-2번으로
1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포함) [문5의 ①]	()시 ()분	()시 ()분	
2	지역아동센터 [문5의 ②]	()시 ()분	()시 ()분	
3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문5의 ③]	()시 ()분	()시 ()분	
4	(시설)학원 [문5의 ④]	()시 ()분	()시 ()분	
5	혈연인력 (조부모/친인척) [문5의 ⑤]	()시 ()분	()시 ()분	
6	비혈연인력 (아이돌보미/민간 육아도우미/이웃 등) [문5의 ⑥]	()시 ()분	()시 ()분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6-2. (문 6-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시작 시각**은 언제입니까?

7-2. (문 7-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종료 시각**은 언제입니까?

구분		6-2. 희망하는 시작 시각	7-2. 희망하는 종료 시각
1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포함)	()시 ()분	()시 ()분
2	지역아동센터	()시 ()분	()시 ()분
3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시 ()분	()시 ()분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8. [로직] DQ2번에서 ③번(근로 안함) 응답한 경우는 문8 Skip
귀댁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음의 제도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필요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맞벌이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제도별로 사용이 쉬운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용 가능 여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3	재택근무	
4	가족돌봄휴가	

- ① 현재 이용 중임
- ② 필요시 이용할 수 있음
- ③ 제도가 있으나, 실제 사용하기 어려움
- ④ 제도 도입 안 됨
- ⑤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해당 사항 없음 : 개인사업자, 임시직 등)
- ⑥ 제도를 잘 모름

II. 긴급돌봄 사유와 발생 빈도

※ 이후 문항도 막내 자녀인 000(SQ1 선택 보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000'에 SQ1 선택 보기 뜨도록

9. 귀댁에서 다음의 상황으로 인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이전 상황이나 복귀한 상황을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⑥ 해당 사항 없음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2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3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야간근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5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6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해외 출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9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10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⑧
11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시설보수 등)(※ 방학 기간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⑧

10. [로직] 문9=④,⑤ 응답한 항목만 문10에서 제시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상황별로 **최근 1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자녀돌봄의 공백 발생 빈도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3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야간근로 등)	
4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6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7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8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시설보수 등) (※ 방학 기간 제외)	

- | | |
|--------------|-------------|
| ① 1주일에 한 번 | ☞ 문 10-1번으로 |
| ② 한 달에 2~3회 | ☞ 문 10-1번으로 |
| ③ 한 달에 1회 정도 | ☞ 문 10-1번으로 |
| ④ 두 달에 1회 정도 | ☞ 문 10-1번으로 |
| ⑤ 연간 3~4회 정도 | ☞ 문 12번으로 |
| ⑥ 연간 1~2회 이하 | ☞ 문 12번으로 |

- 10-1. [로직] 문10에서 ①~④번에 응답한 항목만 순서대로 출력되도록 함
귀댁은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 상황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긴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과 종료 시각
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0-1-1. 시작 시각 ※ 08시 30분	10-1-2. 종료 시각 ※ 20시 00분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시 ()분	()시 ()분
2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시 ()분	()시 ()분
3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야간근로 등)	()시 ()분	()시 ()분

4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시 ()분	()시 ()분
5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시 ()분	()시 ()분
6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시 ()분	()시 ()분
7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시 ()분	()시 ()분
8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시설보수 등) (※ 방학기간 제외)	()시 ()분	()시 ()분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각각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분은 10분 단위

11. [로직] 문 10번에서 ①~④번에 응답한 항목만 순서대로 출력되도록 함
 귀댁에서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막내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은 누구입니까?
 ※ 상황마다 자녀를 돌본 사람(또는 서비스)이 다르면, 최근 1년 동안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이나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긴급돌봄 자원인력 또는 기관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3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야간근로 등)	
4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6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7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8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시설보수 등) (※ 방학기간 제외)	

[로직] 문11-8(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출력 시 제외 보기 : ⑥,⑦,⑧

- ① 부모(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돌봄(연차/휴가/재택근무 등 포함)
- ② 혈연인력(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 ③ (공공) 아이돌보미(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포함)
- ④ 민간 육아도우미
- ⑤ 이웃 또는 지인
- ⑥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등)
 [로직] 보기 문 1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 ⑦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방과후과정 등)
 [로직] 보기 문 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 ⑧ 현재 이용 중인 초등학교(초등돌봄교실 등)
 [로직] SQ1번에서 문 1번에서 ③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⑨ 지역아동센터
 ⑩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 포함)
 ⑪ 기타(구체적으로:)
 ⑫ 해당 사항 없음

[로직] 문11의 1~8에서 ①,②,④,⑤,⑪,⑫ 응답만 있으면, 문12로 이동
 그 외는 문11-1로 이동

- 11-1. [로직] 문11의 1~8에서 응답 나온 항목만 제시
 귀하는 자녀를 돌봐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긴급돌봄
 인력이나 서비스 기관으로 응답한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공공) 아이돌보미(정부지원) [=문11의 ③]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등) [=문11의 ⑥]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문11의 ⑦]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이용 중인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등) [=문11의 ⑧]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아동센터 [=문11의 ⑨]	①	②	③	④	⑤
6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 포함) [=문11의 ⑩]	①	②	③	④	⑤

[로직] 문11-1의 1~6에서 ③~⑤응답만 있으면, 문12로 이동
 그 외는 문11-2로 이동

- 11-2. 귀하가 이용한 긴급돌봄 인력이나 기관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불만족 이유
1	(공공) 아이돌보미(정부지원)	
2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등)	
3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방과후과정 등)	
4	현재 이용 중인 초등학교(초등돌봄교실 등)	
5	지역아동센터	
6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등 포함)	

- 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 ② 서비스 이용비용
- ③ 이용시간
- ④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 ⑤ 프로그램 등 활동내용
- ⑥ 돌봄 환경(안전, 청결, 위생 등)
- ⑦ 이용거리(지리적 접근성)
- ⑧ 기타()

[로직] 문11-1에서 보기① 또는 ② 응답 항목만 제시

12. 귀댁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긴급하게 돌봄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입니까?
 〈보기〉 중에서 긴급돌봄 지원의 필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 긴급돌봄 지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로 인해 부모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
 기 힘든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 ① 자녀가 아파서 등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이용기관)/등교하지 못한 경우
- ②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 ③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야간근로 등)
- ④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 ⑤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 ⑥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해외 출장 등)
- ⑦ 자녀를 출산한 경우(산후조리 등)
- ⑧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⑨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 ⑩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 ⑪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시설보수 등)(※ 방학기간 제외)
- ⑫ 기타 1 ()
- ⑬ 기타 2 ()

[로직] 문항별 1순위만 응답 가능

13. 귀댁에서는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 사항을 경험하였거나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일상적인 돌봄의 틈새(이른 하원 등)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새벽 출근 또는 야근, 부모
 등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등 **“갑작스럽고
 시급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미취업부모 등으로 상황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분이 경험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면 ‘경험 있음’에 응
 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⑧ 해당 사항 없음
1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또는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2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3	긴급돌봄의 어려움으로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4	긴급돌봄이 쉽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정규직 근로 → 계약직/임시직 근로 변경)	①	②	⑧
5	긴급돌봄이 쉽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 변경)	①	②	⑧
6	긴급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7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8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9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조부모 거주지 인근 또는 선호하는 돌봄기관 인근 지역 등)	①	②	⑧

14. 귀댁에는 긴급한 상황에 주양육자(귀하 또는 배우자 등)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급하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1	긴급할 때 자녀 돌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인력(혈연/비혈연)이 있다		
2	긴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다		

[로직] DQ4-1과 DQ4-2 모두 ① 예 응답 시,
문14 = ①로 자동 응답 처리 후 해당 문항 skip

Ⅲ. 긴급돌봄 지원 요구

15. 귀댁에서 다음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호하는 돌봄 인력이나 기관은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방식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1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2	급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야간근로 등)		
3	긴급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4	이른 시각에 출근 또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경우		

5	직장에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해외 출장 등)		
6	자녀를 출산한 경우		
7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8	임시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게 된 경우		
9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 ① 부모가 직접 돌봄(연차/휴가/재택근무 등 포함)
- ② 혈연인력(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
- ③ 정부지원 (공공) 아이돌보미(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포함)
- ④ 민간 육아도우미
- ⑤ 이웃 또는 지인
- ⑥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등)
- ⑦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방과후과정 등)
- ⑧ 현재 이용 중인 초등학교(초등돌봄교실 등)
- ⑨ 지역내 시간제 이용 돌봄서비스 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⑩ 기타(구체적으로:)
- ⑪ 해당 사항 없음

[로직] 문항별 1순위만 응답 가능

16. 귀하는 **자녀가 아픈 상황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긴급돌봄 지원방식으로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점수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낮음 ①	← ②	③	→ ④	높음 ⑤
1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내 부설 돌봄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의료기관 내 부설 돌봄시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에 파견되는 아픈 아동 전문 돌봄인력	①	②	③	④	⑤
4	인근의 아픈 아동 전문 돌봄시설	①	②	③	④	⑤

- 16-1. 문 16번의 항목 이외에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하는 긴급돌봄 방식이나 이외 요구가 있다면,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구체적인 내용
1	돌봄지원 방식(돌봄 인력이나 기관 등)	
2	이외 지원 요구(서비스 이용 절차 등 개선사항)	

[로직] 한 글자 이상 작성

※ 다음은 본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7. 귀하는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의 긴급돌봄 지원 원칙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점수가 클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낮음 ①	← ②	③	→ ④	높음 ⑤
1	이용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긴급돌봄(야간보육 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맞벌이 가구를 먼저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부모 가구를 먼저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자녀 가구를 먼저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린 아동을 먼저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긴급돌봄은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한 모든 가구를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일수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을 더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서 긴급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아동의 연령은 최대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가 클수록 필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연령대별로 긴급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요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낮음 ①	← ②	③	→ ④	높음 ⑤
1	영아 자녀(0~12개월)	①	②	③	④	⑤
2	영아 자녀(13~35개월)	①	②	③	④	⑤
3	유아 자녀(만 3~5세)	①	②	③	④	⑤
4	초등 1~3학년	①	②	③	④	⑤
5	초등 4~6학년	①	②	③	④	⑤

IV. 응답자 특성

※ 다음은 귀하 및 귀댁에 관한 문항입니다.

- DQ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로직] 범위: 20~70세

확인창: 60≤DQ5의 응답값

응답값은 자동 변수 설정: 연령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DQ6.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DQ7. 귀댁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DQ7-1. 귀하 자녀의 연령대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출생 순위	자녀 연령
첫째	
둘째	
...	
일곱째	

① 영아 자녀[만 0~2세: 2020년 이후 출생]

② 유아 자녀[만 3~5세: 2017~2019년 출생]

③ 초등학교생 자녀(초등 1~3학년)

④ 초등학교생 자녀(초등 4~6학년)

⑤ 중·고등학교생 자녀가 있음

⑥ 성인 자녀가 있음

[로직] 자녀 연령은 최대 7명까지 응답 가능하도록

[로직] SQ1 응답값은 DQ7-1에서도 자동 응답 처리되도록 설정

SQ1 = ① 응답자, DQ7-1 = ①

SQ1 = ② 응답자, DQ7-1 = ②

SQ1 = ③ 응답자, DQ7-1 = ③

DQ8.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이하

② 201만원~300만원

③ 301만원~400만원

④ 401만원~500만원

⑤ 501만원~600만원

⑥ 601만원~700만원

⑦ 701만원~800만원

⑧ 801만원 이상

DQ9. 귀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십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

③ 해당하지 않음

④ 모름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1(부모용)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부모용) -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심층면담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심층면담 이전에 작성하는 사전설문지로, 본 설문에 응답하신 자녀 돌봄 내용을 기반으로 2차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심층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육아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1. 해당 그룹 및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 서비스 해당란에 √ 표기 해주세요. (컨택 시 해당된다고 하신 그룹에 체크해주세요)

조사대상 그룹		세부 기준	해당란 √ 표기
1	어린이집 이용 가구	어린이집 '기본보육(09시~16시)' 신청자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16시 이후 '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최근 1년(22년 7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2	유치원 이용 가구	유치원 '정규과정(14시 이전 하원)' 신청자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방과후 과정(정규과정 이후) 시간대에 유치원 추가 이용 경험이, 최근 1년(22년 7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3	초등방과후 돌봄 이용가구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은 아니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올해(23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경험이, 최근 1년(22년 7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조사대상 그룹		세부 기준	해당란 √ 표기
4	시간제보육시설 이용 가구 ※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월~금(9~18시)	지정 어린이집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5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야간이나 주말 등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앱 (또는 PC)을 통해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6	질병감염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법정)감염병(수족구병 등)이나 유행성 질병(감기 등)으로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해 가정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22년 9월 이후 3회(일) 이상 있는 가구	

2. 귀하와 귀하의 가구 및 자녀 특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항		보기			
2-1. 연령	만 ()세				
2-2. 성별	① 남		② 여		
2-3. 본인 직업	① 사무직 ③ 전문직 ⑤ 전업주부 ⑦ 기타		② 생산직 ④ 서비스 및 판매직 ⑥ 무직		
2-4. 맞벌이 가구 여부 ※ 전일제 근로 기준	① 맞벌이 가구 ☞ 2-4-1번으로 ② 홀벌이 가구 ☞ 2-5번으로 ③ 근로 안함 ☞ 2-5번으로				
2-4-1 근무 형태 ※ 해당 란에 모두 √표기 하주세요.	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②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 ③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사업자) ④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자) 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 근로자 ⑥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농임업업인				
2-5. 자녀 특성 ※ 모든 자녀별로 써주시고, 7명 이상이라면, 일곱째까지만 적어주세요.	자녀 구분	생년월	기관 이용 및 재학 상태	'문1' 응답 자녀 여부 (위 문1에서 체크한 서비스를 이용한 자녀 란에 해당 번호를 써주세요)	
			① 미이용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초등학교 ⑤ 중학생	① 어린이집 긴급돌봄 ② 유치원 긴급돌봄 ③ 초등방과후 돌봄 ④ 시간제보육 ⑤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답변란]	
상시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 [기관]	상시로 이용하는 돌봄 [인력]

2) 귀댁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란]
-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 없다)
[답변란]
- ['있다' 선택한 경우만 응답]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써주세요
※ 상황 예시: 갑작스러운 야간 근로, (본인)병원 진료

4.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개선 수요

1) 귀댁에서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문1번에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체크한 서비스를 응답해주시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사유·절차 및 시간을 작성 해주십시오.

* 매 상황마다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 가장 주된 경험을 위주로 작성해주세요.

* 이용 시간은 하루를 기준으로, ○○시 ~ ○○시로 작성해주세요.

서비스 유형		3회 이상 이용 여부	이용 사유 ※ 예시 : (본인)병원 진료	신청·이용 방법, 절차 ※ 예시 : 전화 신청	이용 시간
1. 어린이집 긴급돌봄 (오후 4시 이후)		☐			
2. 유치원의 긴급돌봄 (오후 2시 이후)		☐			
3.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	3-1. 지역아동센터	☐			
	3-2. 다함께돌봄센터	☐			
4. 시간제보육(6개월~35개월)		☐			
5.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			
6.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2) 위에서 작성한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거나 이용 시 불편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없었다면 '없다'라고 써주세요.

서비스 유형	불만족한 내용 또는 불편사항
1. 어린이집 긴급돌봄 (오후 4시 이후)	
2. 유치원의 긴급돌봄 (오후 2시 이후)	
3. 초등방과후 마을돌봄	3-1. 지역아동센터
	3-2. 다함께돌봄센터
4. 시간제보육(6개월~35개월)	
5. 일시연계 아이돌봄서비스	
6.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3.1) 위에서 응답하신 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구분별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요. 개선할 점이 없다면 '없
다'라고 써주세요.

* 위에서 응답하신 서비스가 2개인 경우, 각각 차례로 3.1)과 3.2)에 작성해주세요.
(1개만 응답하신 경우, 3.1)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분	개선 요구사항 또는 개선과제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2. 서비스 이용비용	
3. 서비스 이용시간	
4. 돌봄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5. 돌봄 환경(안전, 청결, 위생 등)	
6. 집과의 거리(지리적 접근성)	
7. 기타	

3.2) 위에서 응답하신 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구분별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요. 개선할 점이 없다면 '없
다'라고 써주세요.

* 위에서 응답하신 서비스가 2개인 경우, 각각 차례로 3.1)과 3.2)에 작성해주세요.(1개만 응답하신
경우, 3.1)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분	개선 요구사항 또는 개선과제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2. 서비스 이용비용	
3. 서비스 이용시간	
4. 돌봄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5. 돌봄 환경(안전, 청결, 위생 등)	
6. 집과의 거리(지리적 접근성)	
7. 기타	

- 4) 위에서 응답하신 이용 경험이 3회 이상인 서비스 이외에,
긴급 돌봄을 위해 이용한 적 있는 다른 돌봄 인력이나 기관(개별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작성해주시
시오. 없다면 '없다'라고 써주세요.

* 서비스·기관·인력 예시 : 초등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조부모, 민간 육아도우미 등

이외 긴급돌봄 이용 경험이 있는 서비스		
서비스명 / 기관명 / 인력	서비스 내용(당시 긴급 상황, 이용 시간, 이용 비용 등)	
1		
2		
3		

5. 긴급돌봄 지원 관련 개선 수요

- 1) 귀하는 자녀의 연령별로 필요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경우) 자녀 연령별로 선호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은 무엇입니까?

* 긴급돌봄 :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으로 주양육자(본인 또는 배우자 등)가 자녀를 돌보기 힘들 경우
필요한 긴급한 돌봄(기관 및 인력) 지원

※ 작성 예시: 12개월 이하 자녀는 아이돌보미, 12개월 이후 자녀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

[답변란]
- 연령별로 필요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동일하다 / 다르다)
- ['다르다' 선택한 경우만] 연령별로 선호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 :

- 2) 귀하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 연령으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통합 연령 운영 서비스 : 특정 연령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도록 한 서비스

2-1) 이용 의향 (체크해주세요)		2-2) 세부 답변란
① 이용 의향이 있다	☐	- 현재 막내 자녀 연령 : 만 ()세 - 함께 돌봄서비스 이용해도 무방한 아동 최대 연령 : 만 ()세
② 이용 의향이 없다	☐	-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귀하는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래에 있는 [보기]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의 번호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해주시요.

* 귀하의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서, 의향을 답해주세요.

3-1) 이용 의향 (번호) (1~9 중 보기 번호를 써 주세요)		3-2) 이용 의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보기] 긴급돌봄 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보기 번호]	제도·사업명	지원내용
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3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4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6개월~36개월 미만) 일시돌봄(월~금 9:00~18:00 지원) ※ 시간 당 이용료 1,000원(부모 부담금)
5	공동육아나눔터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에게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자녀 돌봄 공간, 양육경험 및 정보 교류,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18세 미만 자녀(맞벌이 가구 여부 상관없이 이용 가능) 평일 10시~18시(일부 지역: 평일 야간/주말 운영)
6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초등학생 및 중학교 재학중 아동), 저소득층가구 이외 긴급한 돌봄을 위한 특례 적용(보호자의 질병으로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 가정 등) 평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방학 중: 12시~17시 까지 반드시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중복 이용 불가

[보기 번호]	제도·사업명	자원내용
7	다함께돌봄센터	초등자녀(만 6~12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위주이나, 미취학 아동도 이용 가능(등하원서비스 등) 일시돌봄(보호자의 질병, 수술, 출산 등) / 정기돌봄 학기중: 14~20시 / 방학중: 오전 9시~오후 6시
8	초등돌봄교실	1~2학년: 오후 돌봄 3~6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방과후~17시) 저녁돌봄: 17시~22시
9	학교돌봄터	초등 정규수업 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돌봄시설(돌봄교사 1인당 아동 20명) 학기중: 14:00~20:00 / 방학중: 09:00~18:00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2(현장전문가용)

그룹명	연구진 입력	연번	연구진 입력
-----	--------	----	--------

**영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과제 좌담회**
- 사전 질문지(현장전문가용) -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좌담회는 귀 기관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을 지원할 시의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좌담회 전에 작성하는 사전설문지로, 본 설문에 응답하신 긴급돌봄 지원 현황 및 어려움 등을 기반으로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좌담회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육아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문의처:

1. 이하 중에서 귀 기관에 속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사항에 √ 표기하고 이용 아동 수를 작성해주세요.

조사대상 그룹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운영 실태	운영시 해당란 √ 표기	이용 아동수 ※ 서비스별 중복가능
1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이돌봄서비스 제 공기관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3	어린이집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17:30~24:00)		

조사대상 그룹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운영 실태	운영시 해당란 √ 표기	이용 아동수 ※ 서비스별 중복가능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7시:30)		
		24시간보육(7:30~익일 7:30)		
4	유치원	아침돌봄		
		방과후과정(13:00~)		
		저녁돌봄		
5	지역아동센터	영유아 등록 및 이용 가구 있음		
		영유아 등록 및 가구 없음		
6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포함)	영유아 등록 및 이용가구 있음		
		영유아 등록 및 이용가구 없음		

2. 귀하 및 기관의 특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항	보기	
2-1. 본인 연령	만 ()세	
2-2. 성별	① 남	② 여
2-3. 현 기관의 근무기간	()년 ()개월	
2-4. 총 경력 ※ 유관 분야 포함	()년 ()개월	
2-5 등록/이용아동수/현원	총 ()명 ※ 어린이집/유치원/시간제보육시설: 현원 기준 작성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월 기준 전체 이용 가구수 작성	
2-6 교사/교원/돌봄인력	총 ()명 ※ 자원봉사 인력 등 포함	상근 ()명
		비상근 ()명
2-7. 기관 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2-8 기관명		

※ 이하 질문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귀 기관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작성해주세요.

3.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현황

1) 귀 기관에서는 영유아 또는 초등(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또는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긴급돌봄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대상과 주된 사유를 작성해주시시오.

※ 상황 예시: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간 근로, 주말근로, (본인)병원 진료 등

※ 이하 [답변]란에 필요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주시시오.

[참고사항1: 긴급돌봄 희망가구 기준]

- (어린이집) 기본보육 신청가구가 연장보육 등 긴급하게 추가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 (유치원) 방과후과정 미신청가구에서 긴급하게 추가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일시연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한 가구이나 긴급하게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답변란] 긴급돌봄 지원대상 및 사유	
1	
2	
3	
4	
5	

2)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이하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시오.

* 문 3번의 [참고사항1]을 참고하여 긴급돌봄에 한하여 작성해주세요.

구분	세부 운영사항
1. 서비스 제공시간(운영시간)	
2. 서비스 이용비용의 산정 방식 및 지원내용(중복지원 금지 기준 포함)	
3.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4. 담당 돌봄인력 (상시인력 유무 및 규모/자격/재교육 등)	
5. 서비스 내용(활동내용)	
6. 운영관리 사항 (아동안전, 아동인계 등)	
7. 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방법	
8. 기타 운영사항	

4.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 1) 귀 기관에서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는 영유아 또는 초등자녀를 둔 부모(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문 3번의 [참고사항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필요시 항목을 구분하여 애로사항 또는 어려움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답변란] 긴급돌봄 지원의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	
1	
2	
3	
4	
5	

- 2) 귀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개선할 점이 없는 항목에는 '없다'라고 써주세요.

구분	개선 과제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2. 서비스 이용비용 산정 및 지급체계(중복지원금지 기준 포함)	
3.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4. 돌봄인력의 충분성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배치시간대 및 자질)	
5. 돌봄인력의 자질(재교육 등 포함)	
6. 지리적 접근성 제고(집과의 거리 및 하원 지도 등)	
7. 긴급돌봄 이용 관련 부모 대상 정보 제공	
8. 기타	

5. 타 서비스 연계 관련

- 1) 귀 기관에서는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의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까? 연계하는 경우가 없다면 '없다'라고 써주세요.

구분	실태 및 현황
1.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 여부	
2. 서비스 연계 절차 및 방식	
3. 서비스 연계 기관	
4. 기타 운영 사항	

- 2) (5-1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작성해주세요) 귀 기관에서 긴급돌봄이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보완 사항 및 개선과제
1		
2		
3		
4		

6.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

귀 기관에서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맡길 데가 없는 영유아 또는 초등자녀를 둔 부모(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유롭게 모두 작성해주시요.

* 문 3번의 [참고사항1]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답변란]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또는 지원요구	
1	
2	
3	
4	
5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